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김동훈·최효미·홍근석·김태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저 가 김동훈, 최효미, 홍근석, 김태우

구 지 연구책임자 **김 동 훈** (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효미(육아정책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홍 근 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 구조 개선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93-7 93330



•• • 머리말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에서 질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심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양육지원에 대한 재정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양육지원 재정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경제적 요인, 보육·유아교육 관련 변화 등 다양한 양육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재정확보방안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영유아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아수당 도입, 아동수당 확대, 보육료 및 누리과정비 인상의 요구 등으로 향후 현재보다 5조 9,587억 원에서 18 조 6,540억 원까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리과정을 제외한 양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비 매칭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전환노력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생 심화, 출발선 평등 등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의미를 살리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부처간, 지자체간,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갈등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추계와 함께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5
4. 연구범위	17
5. 선행연구	17
Ⅲ. 양육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25
1. 양육지원정책 재정지원 사업	27
2.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35
3. 양육지원정책 재정 현황	46
4. 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사례	
5. 소결 ·····	
Ⅲ. 양육지원정책 재정 추계	79
1. 재정추계 기본설계	81
2. 영유아수 장래인구추계	
3.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4. 3-5세 누리과정비	
5. 양육수당 추계	
6. 아동수당 추계	
7. 소결 ·····	
Ⅳ.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115
1. 보육재정 분담 구조 및 문제점	117

2.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129
3. 소결 ·····	139
V. 정책제언	141
1.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주요 논의	143
2. 보육재정 분담 개선	144
3.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개선	145
4. 유·보간 협력체제 강화 및 적정규모 산출 ······	149
5. 유보통합 및 학제개편 논의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	163

•• •• 표 목차

〈표 I-3-1〉 전문가 회의 주요 내용 ···································	16
〈표 Ⅰ-5-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지원 관련 개념 및 범주	18
〈표 I-5-2〉 주요 정책에 기반한 육아정책 범주화	······ 19
〈표 I-5-3〉최근 육아정책 분야 재정연구 대상사업	22
〈표 Ⅱ-1-1〉 양육수당 지원사업 대상	28
〈표 II-1-2〉 양육수당 지원사업 내용 ······	28
〈표 Ⅱ-1-3〉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	29
〈표 Ⅱ-1-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내용	30
〈표 Ⅱ-1-5〉 유아학비 지원 내용	30
〈표 Ⅱ-1-6〉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31
〈표 Ⅱ-1-7〉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내용	32
〈표 Ⅱ-1-8〉시간제보육 지원사업 내용	32
〈표 ॥-1-9〉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지원사업 내용	33
〈표 Ⅱ-1-10〉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지원 단가(일반가정)	33
〈표 ॥-1-11〉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지원 단가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34
〈표 Ⅱ-1-12〉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사업 내용	34
〈표 Ⅱ-1-13〉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단가(일반가정)	34
〈표 Ⅱ-1-14〉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단가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34
〈표 Ⅱ-2-1〉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추이	37
〈표 Ⅱ-2-2〉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아 추이	37
〈표 Ⅱ-2-3〉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 ······	39
〈표 Ⅱ-2-4〉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	39
〈표 Ⅱ-2-5〉 0-5세 영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추이	41
〈표 Ⅱ-2-6〉 연령별·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15-2020년	∄) ∵42
〈표 Ⅱ-2-7〉양육수당 수급자 수	43
〈표 Ⅱ-2-8〉 개월별 양육수당 수급자 수	44
〈표 Ⅱ-2-9〉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45

〈표 II-2-10〉 연도별 아이돌보미 수 ··················45
〈표 Ⅱ-3-1〉국가재정 16대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46
〈표 Ⅱ-3-2〉열린재정을 통해 본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예산47
〈표 Ⅱ-3-3〉 보육사업 국비 예산(2015-2021)49
〈표 ॥-3-4〉특수보육시책 사업 분류체계
〈표 ॥-3-5〉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규모
〈표 ॥-3-6〉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 사업 분야52
〈표 ॥-3-7〉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표: 지원 방법53
〈표 ॥-3-8〉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재정 규모: 2020년 54
〈표 Ⅱ-3-9〉 지방교육재정 중 유아교육 관련 세부사업 세출 추이55
〈표 II-3-10〉 유아교육재정 주요국 국제비교(2017년) ······56
〈표 Ⅱ-4-1〉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비율63
〈표 ॥-4-2〉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 재원분담 현황64
〈표 II-4-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아동 보육 관련 세입·세출 예산
(2021년 기준)65
〈표 II-4-4〉아동이 있는 가구의 구성 형태 및 평균 아동 수 추이66
〈표 II-4-5〉 보육원 이용 아동 현황······67
〈표 II-4-6〉 소비세 증가분 및 '사회보장의 충실'중 아동·육아 지원 예산
(2021년 기준)69
〈표 II-4-7〉아동·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재원분담 비율 ······70
〈표 II-4-8〉일본의 아동수당 지급액······71
〈표 ॥-4-9〉일본의 아동수당 재원분담 비율71
〈표 II-4-10〉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분담 현황······72
〈표 ॥-4-11〉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의 재원분담 비율72
〈표 Ⅲ-3-1〉0-2세 어린이집 이용아수 및 비율(2015-2020년)85
〈표 Ⅲ-3-2〉0-2세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및 비율
(2015-2020년)85
〈표 Ⅲ-3-3〉0-2세 어린이집 대상아수 추정(2021-2026년)86
〈표 Ⅲ-3-4〉0-2세 기관보육료 대상아수 추정(2021-2026년)86
〈표 Ⅲ-3-5〉0-2세 보육료 재정추계(현수준 유지)87
〈표 IV-3-6〉0-2세 보육료 재정추계(시나리오1) ······88
〈표 Ⅲ-4-1〉3-5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아수 및 비율(2015-2020년)90
〈표 Ⅲ-4-2〉3-5세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아수 추정90

⟨⊞ Ⅲ-4-3⟩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이용률91
⟨⊞ -4-4⟩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현수준 유지)92
⟨⊞ -4-5⟩	누리과정 재정추계 시나리오193
⟨⊞ -4-6⟩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시나리오1)93
⟨⊞ -4-7⟩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시나리오2)94
⟨⊞ -4-8⟩	공립유치원 설치비용 산출기준96
⟨⊞ -4-9⟩	추가 설립이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수(국공립 이용률 50% 확대) … 96
⟨⊞ -4-10))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추계97
⟨표 Ⅲ-4-11	〉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 및 학급운영비 비용추계98
⟨⊞ -4-12	♡ 무상보육·교육 재정추계 ······100
⟨⊞ Ⅲ-5-1⟩	양육수당 수혜아동수 및 비율(2015-2020년)101
⟨∄ Ⅲ-5-2⟩	양육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 102
⟨표 Ⅲ-5-3⟩	양육수당 재정추계(현수준 유지)103
⟨∄ Ⅲ-5-4⟩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1)104
⟨∄ Ⅲ-5-4⟩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105
⟨표 Ⅲ-5-5⟩	출생순위별 출생아수106
⟨표 Ⅲ-5-6⟩	출생순위별 양육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107
⟨표 Ⅲ-5-7⟩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3)107
⟨⊞ Ⅲ-6-1⟩	아동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 109
⟨⊞ Ⅲ-6-2⟩	아동수당 재정추계(현수준 유지)109
⟨표 Ⅲ-6-3⟩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1)
⟨⊞ Ⅲ-6-4⟩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a, 정액 인상) ······111
⟨표 Ⅲ-6-5⟩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b, 임금상승률) ······112
⟨∄ Ⅲ-6-6⟩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3)113
⟨표 Ⅲ-7-1⟩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종합(현행)114
⟨표 Ⅲ-7-2⟩	양육지원정책 4개 시업 재정추계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 $\cdot\cdot$ 114
⟨⊞ ∨−1−1⟩	육아지원분야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 120
⟨⊞ V-1-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중 육아지원정책 관련 분야 관련 항목 … 122
⟨⊞ V-1-3⟩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123
⟨⊞ ∨−1−4⟩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124
⟨표 Ⅳ-1-5⟩	아동·보육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2021년) ······124
⟨± IV-1-6⟩	아동·보육 부문 세부사업 예산 현황(2020년) ······125
⟨⊞ ∨−1−7⟩	아동·보육 부문 국고보조금 추이127

〈丑	IV-1-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현황(2019년 기준) · 128
纽〉	IV-2-1>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추이(2016-2021)130
纽〉	IV−2−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현황(2017-2021)136
纽〉	IV-2-3>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현황 ······136
田〉	IV-2-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현황(2017-2021)138

•• •• 그림 목차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3
[그림	-4-1]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출 내역(FY2018)58
[그림	-4-2]	OECD 보육종사자 1인당 아동 수(2017년 기준) ······6
[그림	-4-3]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개요 ······68
[그림	-4-4]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전개 ······68
[그림	Ⅲ -1-1]	재정추계 기본설계8
[그림	Ⅲ −2−1]	연도별 영유아수 추계 추이(2000-2026)8%
[그림	Ⅲ -5-1]	0~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104
[그림	III−5−2]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추이100
[그림	IV-2-11	지방교육재정 세인재워 구조(2021년도 본예산 기준)13

•• ••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양육지원정책의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설정 및 시나리오에 따라 중장기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 양육지원정책 재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현황을 고찰함.
- □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모형을 설정하여 추계함.
 -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모형 및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중장기 소요재정을 추계함
 - 재정추계 범위로는 만 0-2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비 지원(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재정추계하고, 기관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지원, 인건비 등은 재정추계에서 제외함.
- □ 양육지원정책의 재정분담구조 및 현황을 고찰함.
 - 양육지원정책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재정구조와 현황을 파악함.
 - 누리과정 지원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관련 구조와 현황을 파악함.
 - 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 제도와 분담구조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
- □ 양육지원정책 재정규모 추계에 따른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양육지원정책 관련 개념,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고찰함.
- 국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통계, 정책개요, 재정조달, 지 원 현황 등을 수집함.
- □ 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
 - 양육지원 정책 대상 및 범위를 설정, 재정추계모형 설정과 시나리오 구성, 재정분담 개선방안 도출
 -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과 관련하여서 비용, 재정 등을 연구한 선행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 재정분담 관련 전문가 등 대상 의견수렴
- □ 공동학술대회 개최
 - 유아교육재정 재정추계 결과 및 재정분담 학술대회 공동 개최
-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2. 양육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가. 양육지원 정책 재정지원 사업

- □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모 등 수혜자를 우선으로 하는 양육지원정책으로 현금 급여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재정사업으로 구분함.
 - 현금급여지원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서비스지원 사업으로는 만 0-5세 보육료지원 사업,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고, 시간지원 재정 사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대표적임.

나.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 □ 출생아 수 감소로 영유아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공급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다소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정원충족률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유치원은 출생아 감소와 함께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이라는 일련의 사 태로 인해 유치원 수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영유아에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의 국공립 어린이집 과 유치원의 확충 기조로 인해 국공립 기관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 출생이후 초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만 2세부터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함.
- □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세 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아가 더 많고, 만 4,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더 높아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육기능이 강한 유치원이용률의 증가가 더 두드러짐.

다. 양육지원정책 재정 현황

- □ 양육지원정책 관련 재정은 16대 국가재정 분야 중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포함되며,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재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됨
 -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예산에 대비하여 본 연구의 재정추계 대상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2.8%, 아동수당은 14.8%, 일·가정양립지원은 12.6%,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5.1%로 전체 예산중 80.8%를 차지하였음.
- □ 영유아수의 감소와 함께 보육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보육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분담비율만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음.
- □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어 편 성되는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사업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라. 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사례

□ 미국 텍사주의 보육관련 재정은 대부분 연방기금으로 보육예산의 82% 수준이 었고, 지방과 민간 부담이 18% 정도를 차지함.

- □ 독일의 경우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위임 사무 연방교부금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생후 12개월 영아를 보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 인 부모교부금은 연방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생계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생계교부금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60%를 부담하고 있음.
- □ 일본의 경우는 인정어린이집 등 시설형 급부의 경우 사립은 중앙과 지자체가 50% 씩 부담하고, 지자체 중 도도부현과 시정촌도 각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장보육이나 방과후아동클럽 등 지역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앙, 도도부 현, 시정촌이 각각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 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3. 양육지원정책 재정 추계

가. 재정추계 기본설계

- □ 재정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우선 추정한 뒤.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수혜대상자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영유아 인구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며 통계 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이용함.
 - 양육지원 재정사업별 대상아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각 사업별 이용 및 수 급자 수를 기초로 이용률과 수혜율을 산출하여 현재기준 급여단가를 기준으로 재정을 추계함.
 - 추계대상은 0-5세를 기본으로, 추계기간은 2021-2026년으로 함.

나. 재정추계 결과

- □ 기본모형으로 4개 사업에 대한 재정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모형은 추정된 지원대상아 수에 현재의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5년간 4개 사업의 총 소요재정은 58조 2.137억원으로 추계됨.
 -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3-5세 누리과정비, 아동수당, 양육수당 순으로 나타남

- 0-2세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2023년부터 증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곧바로 양육지원정책 사업 대상자로서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종합(현행)

단위: 억원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2세 보육료	47,348	45,710	45,198	46,193	47,919	232,368
3-5세 누리과정비	37,181	33,786	31,326	29,590	28,487	160,370
양육수당	11,042	11,119	11,402	11,757	12,136	57,456
아동수당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계	123,816	117,300	113,733	113,078	114,210	582,137

- □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현 수준 유지 가정하에서의 추계된 누적 재정규모와의 차이는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으로 나타남.

〈표 2〉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

단위: 억원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2세 보육료	시나리오1	49,227	49,440	50,806	54,018	58,291	261,782
3-5세 누리과정비	시나리오1	39,343	37,716	36,084	35,150	34,948	183,241
	시나리오1	17,166	19,944	23,269	29,701	30,742	120,822
양육수당 추계	시나리오2	11,484	12,009	12,804	13,729	14,732	64,758
	시나리오3	13,567	13,662	14,009	14,445	14,911	70,594
	시나리오1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시니니エ	33,516	37,057	40,732	44,545	48,495	204,345
	시나리오2a	28,245	32,022	30,969	30,646	38,501	160,383
아동수당 추계		33,516	44,468	48,879	53,454	72,743	253,060
4 <u>9</u> 19	시나리오2b	29,375	28,819	28,904	29,624	31,058	147,780
		34,857	40,021	45,620	51,672	58,679	230,849
	시나리오3	34,703	32,786	31,708	31,377	31,536	162,110
	시나디오3	41,179	45,529	50,045	54,730	59,583	251,066
차이(최저-현행)		4,483	8,550	11,768	15,357	19,429	59,587
차이(최고-현행)		11,837	27,986	36,045	43,989	66,683	186,540

4.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가. 보육재정 분담 구조 및 문제점

- □ 양육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이전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가 기준보조율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
- □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의 지방비 절대 부담금 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임.
 - 지방재정의 자주 세입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나 증가율이 커지는 경우 지방재정은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음.
- □ 아동·보육부문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17.54% 수준이며, 아동·보육 부문 세부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아동·보육 부문 국고보조금의 40.5%를 차지하였고,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4.5%,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7.0%로 그 비중이 상당함.
 - 아동수당 지급 사업도 각각 3.0%, 4.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은 각각 2.2%, 3.3% 규모를 보임.
- □ 보육재정 분담과 관련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산정의 적절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나.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 □ 유아교육 재원은 2008년을 기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누리 과정 도입과 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하였음.
- □ 이후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을 통합한 만 5 세아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시·도교육정이 부담하게 되면서 유아교육재정의 부담이 크게 가중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정분 담 갈등이 봉합된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제언

가. 재정추계

- □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영유아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아수당 도입, 아동수당 확대, 보육료 및 누리과정비 인상의 요구 등으로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추계를 한 결과, 재정소 요액이 현행보다 최저 5조 9,587억원에서 최고 18조 6,5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누리과정을 재외한 제외한 양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비 매 칭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상당한 압박으 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임.

나. 보육재정 분담 개선

- □ 보육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
 -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수당 등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거나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이나 양육지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량권 행사가 어려움.
 - 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준보조율을 보육재정에만 한정하여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저출산 심화 속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과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필요
 -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전환노력이 필요함.

- 내년에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의 확대가 추진되면서 현행 대비 중앙과 지방의 부담규모가 더 커지면서 지방의 재정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지원이나 각종 돌봄지원과 같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원·운영하도록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음.

다.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개선

- □ 안정적 세입을 위한 누리과정 재워 부담 비율
 - 유아교육지원특별법에서는 세입을 교육세와 국고 전입금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향후 재원분담비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국세의 증가와 함께, 학생수, 교원수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세입으로 추가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
 - 3년 연장 방식의 한시적인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명확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저출생 심화, 출발선 평등 등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의미를 살리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부처간, 지자체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현실적으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2022년 을 끝으로 폐지된다면 누리과정의 관리·운영을 이원화하도 논의해 볼 수 있음.
 - 현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원 화시 관리책임의 강화와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와의 재원갈등도 없어질 것임.

- 다만,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한 비용부담의 증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어린이집의 투명성 강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보통합의 부정과 함께 3-5세 동일 연령, 동일 교육과정의 중복성과 관리부처의 이원화 구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에서 질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산의심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양육지원에 대한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양육지원 재정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구구조와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별 장기 재정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19a: 2020, 김윤희, 2017,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2020), 또한 「국가재정법」제정(2006년)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존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는 달리 5년 단위의 총수입 전망, 총지출 계획,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연도별·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재정전망들은 각기따로 추진되고 대상 또한 포괄적이어서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 지출규모 파악 및전체 재정 전망에는 어려움이 있다.

육아정책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과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신화연 외, 2015).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격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는 인구변화, 각종 제도변화, 해외국의 사례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개발이나 관련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을 비롯한 양육지원 전반에 대한 재정추계는 일 회성의 연구, 산발적 연구에 그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양육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아교육재정, 보육재정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사회보장재정 등에서 중복되어 포함되기도 하고, 육아관련 정책 이라 하더라도 연령폭이 다양해 양육지원 관련 재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육아정책 관련 재정추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연구로는 박진아, 박창현, 엄지원 (2015), 국회예산정책처(2019b)의 연구가 있으며, 박진아 외(2015)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반영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재정 지출을 추계하였으며, 재정지출 전망은 크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재정, 양육수당, 교사인건비,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기관이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재정추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재정지원 분석, 재정확보·조달 방안 제시, 재정지원 효과 등의 연구 속에서 일부 재정추이나 소요재정추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채정, 2017; 김근진, 문무경, 조혜주, 2018; 김나영, 김근진, 김희수, 2018).

또한 재정추계와 함께 영유아 등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양질의 보육·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아수 감소, 국가의 책임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노후시설 개선, 아동학대 및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교사의 전문성 요구 증대, 교육과정 개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재원의 확보와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경제적 요인, 보육·유아교육 관련 변화 등다양한 양육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양육지원정책의 재정추계를 위한 모형설정 및 시나리오에 따라 중장기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를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지원정책 재정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현황을 고찰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등 문헌으로 양육지원의 개념과 범위, 대상 등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의 양육지원정책 재정범위를 설정한다. 관련하여 관련 지원제도, 지원대상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모형을 설정하여 추계하였다.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중장기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재정추계는 만 0-2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비 지원(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재정추계하고, 기관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지원, 인건비 등은 재정추계에서 제외한다. 재정추계 시나리오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영아수당 등 현재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셋째, 양육지원정책의 재정분담구조 및 현황을 고찰하였다. 양육지원정책 대부 분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재정구조 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유아교육재정의 경우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어 전 액 지원되고 있어 관련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 제도와 분담구조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넷째, 양육지원정책 재정규모 추계에 따른 재정분담 구조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자료 분석

양육지원정책 관련 개념,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 국

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지원 관련 법·제도, 통계, 정책개요, 재정조달, 지원 현황 등을 수집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재정추계와 재정조달·분담 관련 제도와 그동안의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나. 전문가 회의

양육지원 정책 대상 및 범위를 설정, 재정추계모형 설정과 시나리오 구성, 재정 분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교수, 선행연구자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먼저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범위에 대한 전문가회의에서는 양육지원 정책을 비롯 해, 재정추계범위에 포함할 주된 영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재정추계모형 설정을 위해서는 인구, 경제, 보육·유아교육 부문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양육지원정책 재정사업의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추계 모형설정 및 근거 타당성, 정책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였다. 재정구조 분담과 관련하여서는 큰 틀에서의 복지재정 분담구조,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사무 성격, 해외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皿	T -2-1	〉저무가	히이	ᄌᄋ	내요
' TT	1 -3-1) ^! /[외의	~ ×	ᄪᆇ

일자	전문가	주요 내용
3.25.	A교수(경제학)	재정추계모형 설정 논의
h')/	B교수(교육학) C교수(교육학)	재정추계시 고려사항 및 누리과정 재정관련 쟁점 논의
5.28.	D박사(사회복지)	복지재정 분담구조, 양육지원정책 지방분권 방향성 논의
6. 9.	E교수(교육학)	누리과정 재정추계 방법 및 분담구조 논의
6.23.	G박사(경제학), H박사(정책학)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결과 검토 및 분담개선 의견 논의
7. 6.	F박사(행정학)	양육지원정책 중앙/지방 사무 성격 및 해외사례 논의
10.28.	G박사(경제학), H박사(정책학)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안 검토

다. 공동학술대회 개최

재정추계 결과 및 재정분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의 공 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교육재정경제학회 30년, 과거를 회고하고 향후 10년을 조망한다」는 대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결과 중, 특히 누리과정 재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향후의 재정추계 전망과 분담구조의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양육지원정책 관계 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부처의 정책요구를 수렴하였다.

4. 연구범위

선행연구들을 보면 육아지원 또는 양육지원 정책을 다루면서 대부분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등 무엇이 제공되는지를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수혜 여부에 따라 육아지원은 크게 이용자 지원사업과 공급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은 현금성으로 지원 되는 이용자 지원사업이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은 서비스 공급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지원정책은 무엇이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모 등 수혜자를 우선으로 한 대상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추계를 하고자 하였다. 이외어린이집 관리나 지원,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이나 시설비 지원, 인건비성 지원 사업은 재정추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 선행연구

가. 양육지원정책 개념 및 범위

육아(育兒)는 "어린아이를 기름",1) 양육(養育)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2)

¹⁾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0f4bf42ec59459fbffdd50b872b3408 에서 2021. 3. 17. 인출.

²⁾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c1b1b022446482c866a0d3048599eb 6 에서 2021. 3. 17. 인출.

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양육을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서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입양된 경우 양부모에게서, 또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양육이 되기도 함"3)으로 본다면, 주로 기관보다는 부모등 사람에 의한 돌봄을 통해 자라게 하는 것으로 좁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의 연구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육아와 양육은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시간 지원 정책들과 어울려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፲-5-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지원 관련 개념 및 범주

구분	연구	개념 및 범주
육아지원	백은주 외(2011)	•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관점에서, 자녀양육의 주체를 기 준으로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어머니, 부모 외 대리양육으로 구분함.
육아	서문희 외(2014)	•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모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도권의 보육 및 유아 교육기관, 영유아가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학원, 선교원 등 유사 보육 교육기관, 혈연비혈연에 의한 비공식부분의 보육서비스, 그리고 특기 나 보습을 위한 학원, 개인교습과 같은 사교육 영역도 모두 포함
육아지원	유해미 외(2015)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용,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시장 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도 어린자녀를 둔 경우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지원을 의미
시간정책	김나영 외(2016)	•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본적 인 양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양육지원정책	이채정(2017)	• 기관중심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 사업으로 구분
육아서비스	이정원 외(2018)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로 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정부 지원 정책 일체
육아정책분야	최효미 외(2019)	 육아정책분야 범주 설정을 위해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을 기본으로 일·가정양립 지원과 육아지원정책, 넓게는 저출산관련정책까지를 포괄할 수 있다고 봄. 육아정책 재정투입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아동·보육과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유아교육예산, 일·가정양립지원 예산으로 고용보험 예산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함.

자료: 1)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 2) 서문희. 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 3)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 4) 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5) 이채정(201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 6) 이정원 외(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 7) 최효미 외(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³⁾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dic&query=%EC%9 6%91%EC%9C%A1&ie=utf8&sm=tab nmr 에서 2021. 3. 17. 인출.

최윤경, 김나영, 이혜민(2019)은 육아정책 범주를 저출산 정책, 유아교육·보육· 돌봄 정책, 아동 정책 3개로 범주화 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 의 육아정책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Ⅰ-5-2〉 주요 정책에 기반한 육아정책 범주화

구분	육아정책 범주	
저출산 정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 • 출산·양육 세제 개선 • 의료비 제로화 • 기타지원: 난임, 다자녀지원 등 • 포용적 가족: 한부모양육 지원, 출생등록제 등 • 초등교육 혁신 • 양육지원체계 개편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개편 •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연장보육)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자격) 및 처우 개선 •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 •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등 다양한서비스 • 학교-지자체 협력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	
아동 정책	•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편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아동권리보장(4영역: 보호, 참여, 건강, 놀이)	

자료: 최윤경, 김나영, 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p. 65.

선행연구들이 육아지원 또는 양육지원 정책을 다루면서 대부분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등 무엇이 제공되는지를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수혜여부에 따라 육아지원은 크게 이용자 지원사업과 공급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은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이용자 지원사업이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은 서비스 공급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지원정책은 무엇이 제공되는지가 아니라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모 등 수혜자를 우선으로 한 대상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육아 지원정책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추계를 하고자 한다. 이외 어린이집 관리나 지원,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이나 시설비지원, 인건비성 지원 사업은 재정추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나. 재정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제시에 앞서 양육지원체계 재정추계와 관련 있는 재정추계로는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기본을 둔 제5조 제4항 및 시행령제2조에 의해 2013년에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고, 사회보장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나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제도 방향 모색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신화연 외, 2015). 또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재정추계과정 전반에 대한공론화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추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계범주 및 기간, 추계모형, 가정 등을 설정하고 있다(신화연 외, 2015).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격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는 인구변화, 각종 제도 변화, 해외국의 사례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개발이나 관련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을 비롯한 양육지원 전반에 대해서는 재정추계는 일회성의 연구, 산발적 연구에 그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양육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 육아정책 분야 재정관련 선행연구

육아정책 관련 재정추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연구로는 박진아 외(2015), 국회예산정책처(2019b)의 연구가 있으며, 이외의 재정지원 분석, 재정확보·조달 방안 제시, 재정지원 효과 등의 연구 속에서 일부 재정추이나 소요재정 추계한 경우가 있다(이채정, 2017; 김근진 외, 2018; 김나영 외, 2018).

먼저 박진아 외(2015)은 인구변동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반영하

여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세부적인 정책변 인을 고려하여 재정지출을 추계하였다. 재정지출 전망은 크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재정, 양육수당, 교사인건비,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기관이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추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9b)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이용 확대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이채정(2017)은 우리나라의 영유아양육지원정책 크게 기관중심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확대·보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017년 양육지원정책 예산은 9조 5,227억원으로 이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시설보육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비중은 86.2%, 가정양육지원의 비중은 13.8%로, 2010년 2조 7,200억원에 비해 3.5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2011년 대비 2015년의 가구별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감소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이채정, 2017). 또한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교사자격 및 보수체계 정비 등 보육·유아교육정책의 운영·관리체계와 재원조달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이채정, 2017).

김근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소요재정을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 국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설 소요재정을 중심으로 추계하였다. 재정추계는 현행유지, 인상 등의 지원단가의 변화와 원아수, 교원수 등 대상인원의 변화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추계결과 관련 정책 중에서 누리과정 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김근진 외, 2018).

김나영 외(2018)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와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보육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영유아 보육·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관리의 필요와 재정자료의 취합, 분석,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김나영외, 2018).

육아정책 분야 재정현황이나 재정추계를 다룬 이들 연구에서 다룬 육아정책 재 정범위나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Ⅰ-5-3〉 최근 육아정책 분야 재정연구 대상사업

구분	분석 대상사업
박진아 외(2015)	•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교사인건비, 기관운영비
이채정(2017)	•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김근진 외(2018)	• 누리과정 단가,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증설
김나영 외(2018)	 유아교육재정: 인적자원운영(정규/비정규직 인건비),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비 지원(누리과정, 급식 지원), 학교재정관리(학교운영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보육재정: 영유아보육 지원,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지자체형 어린이집 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타운영지원, 기정양육수당
국회예산정책처(2019b)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자료: 1) 박진아 외(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 2) 이채정(201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 3) 김근진 외(2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 4) 김나영 외(2018).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5) 국회예산정책처(2019b),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2) 육아정책 분야 비용 분담 선행연구

비용분담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영유아 무상보육·교육 이전 시기의 소득계층이나 형평성 차원에서의 비용분담 방안을 제안한 연구(서문희, 나정, 최혜선, 2004), 유·보체계 이원화에 따른 분담을 논의한 연구(김은설, 최윤경, 조아라, 2013; 김근진 외, 2018), 정부와 부모간 분담을 논의한 연구(서문희, 이혜민, 2014; 박진아, 최효미, 최윤경, 2020)가 있었다.

먼저 서문희 외(2004)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기본계획과 새싹플랜에 따라 사회적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2010년까지의 중장기 육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육아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소득계층별 차이

를 완화하는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육아지원재정으로는 중앙정부 보육사업예산,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유아교육예산, 농어민 양육 비 지원 예산을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정부 등 비용분담과 시설유형별·지역별 격 차를 파악하였다. 부모와 시설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계층별 격차 완화, 비용 과부 담 가정의 지원 강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서비스 수준의 상향 조정이라는 기본원 칙 하에서 차등지원비율 조정,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육아비용 지원대상 확대, 취 업모 추가 지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서문희 외, 2004).

김은설 외(2013)은 누리과정 도입 등 무상 보육·교육 정책으로의 변화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제에서 국가 재정규모를 파악·비교하였다. 유치원은 학비 지원 교직원인건비지원, 교육활동 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분석하고, 어린이집은 보육료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분석하였다(김은설 외, 2013). 이를 통해 인건비 지급방식, 수당, 급·간식비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방과후과정 비용 지원 등 양적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비용지원에차이가 있어, 향후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양적·질적 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를 강조하였다(김은설 외, 2013).

서문희, 이혜민(2014)은 영유아 지원정책의 합목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재정투자 현황,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2014년 유아교육과 양육비용 등 육아지원 재정규모는 GDP의 1% 수준이었으며, 정부의 보육료 등의 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돌봄부담 완화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서문희, 이혜민, 2014). 또한 비용지원 확대는 가계의 총 보육·교육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추가 출산의사에 영향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증액소요분은 소득을 반영하거나 부모와 국가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서문희, 이혜민, 2014).

김근진 외(2018)은 육아정책 분야에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아동수당 도입, 보육지원체계 개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대,

유보격차 해소 등 지속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예산투입이 늘어나는 정책환경 하에서 안정적 재정조달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단기방안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시 기관보조금의 확대, 종료시 지방비 매칭을 통한 기존 국고보조금 전환을 제안하였고, 중기방안으로는 지방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준칙 제정, 유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였다(김근진 외, 2018). 장기방안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 및 재정책임 재배분에 대한 논의 필요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세의 가격기능 부여를 제안하였다(김근진 외, 2018).

박진아 외(2020)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시행 등 정책변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어린이집 비용의 지원방식과 분담체계 개편안을 제안하였다. 비용지원은 적정수준의 보육활동을 가정하였고 분담체계는 국가와 사회, 이용자에 초점을 두어, 특히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요구나 이용시간에 따른 부모 자부담 도입과 함께 서비스 질 제고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추가지원 방안함께 제안하였다(박진아 외. 2020).

양육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 01 양육지원정책 재정지원 사업
- 02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 03 양육지원정책 재정 현황
- 04 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사례
- 05 소결

Ⅱ. 양육지원정책 사업 및 재정 현황

1. 양육지원정책 재정지원 사업

가. 현금급여 재정사업

1)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도입되었다(김동훈, 양미선, 김문정, 2020: 49). 지원 대상은 도입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이었던 것에서 2019년 1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2019년 9월에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로 연령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이다(김동훈 외, 2020: 49-50).

2)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 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로 초등학교 미취학인 86개월 미만 아동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김동훈 외, 2020). 지급액은 월령에 따라 10~2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김동훈 외, 2020: 50). 또한 장애아동과 농어촌의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인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3

개월은 월 177,000원, 24~35개월은 월 156,000원, 36~47개월은 월 129,000원, 48~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김동후 외, 2020).

〈표 Ⅱ-1-1〉 양육수당 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장애아동: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농어촌: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자료: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에서 2021. 5. 31. 인출.

〈표 Ⅱ-1-2〉 양육수당 지원사업 내용

단위: 월 천원

구분	지원금액					
↑世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	200				
24개월 미만	150	177	200			
36개월 미만	100	156				
48개월 미만	100	129	1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	100	100			

자료: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에서 2021. 5. 31. 인출.

나. 서비스지원 재정사업

1)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⁴⁾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사업이다. 보육료는 크게 0-2

⁴⁾ 복지로,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WelInfoDetail.do?se ar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292&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 =&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3&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 에서 2021. 6. 2. 인출.

세반 보육료와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로 구분되며, 지원대상은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아(0-2세반)와 유아(3-5세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b).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다르며, 기본보육(09:00-16:00) 기준으로 영유아당 0세반 484,000원, 1세반 426,000원, 2세반 353,000원, 3~5세반 26만원5)을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연장보육 사유로는 부와 모 모두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중에 해당될 경우, 부와 모 중 한쪽이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일 경우,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인 경우가 있다(보건복지부, 2021b: 350).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연령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며, 시간당 단가는 0세반 3,000원, 1~2세 영아반 2,000원, 3~5세 유아반 1,000원, 장애아는 3,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b: 357).

〈표 Ⅱ-1-3〉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지원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9.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9.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nfoS/retrieveWellnfoDetail.do?searchIntClld=&searchCnDivCd =&wellnfSno=292&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ld=&pageGb=3&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 에서 2021. 5. 31. 인출.

^{5) 2021}년 2월까지는 240,000원, 3월부터 260,000원이 지원된다.

〈표 Ⅱ-1-4〉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내용

단위: 원

78	TIOITUAL	지원단가				
구분	지원대상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020. 1. 1. 이후 출생	484	726,000			
만1세반	2019. 1. 1. ~ 2019. 12. 31.	426	639,000			
만2세반	2018. 1. 1. ~ 2018. 12. 31.	353	529,500			
만3세반	2017. 1. 1. ~ 2017. 12. 31.	200	000	000 000		
만4세반	2016. 1. 1. ~ 2016. 12. 31.	260,000 (240.000)		390,000 (360,000)		
만5세반	2015. 1. 1. ~ 2015. 12. 31.	(240)	(000,000)			

주: 1) 만5세반에는 취학유예를 포함하며 출생연도는 2014. 1. 1. ~ 2014. 12. 31.임.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nfoS/retrieveWellnfoDetail.do?searchIntClld=&searchCnDivCd =&wellnfSno=292&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ld=&pageGb=3&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 에서 2021. 5. 31. 인출.

2)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은 8만원, 사립유치원은 26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만3-5세에 대해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은 원아당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아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Ⅱ-1-5〉 유아학비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8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포함 - 취학대상 아동(2014. 1. 1. ~ 2014.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알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지원내용	- 만3~5세 교육비: 국공립 80,000원, 사립 260,000원 - 만3~5세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어린이집 70,000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nfo/retrieveWellnfoDetail.do?searchIntClld=&searchCnDivCd= &wellnfSno=329&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ld=&pa 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 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l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29&stsfCn=에서 2021. 5. 31. 인출.

²⁾ 지원단가는 2021년 1월~12월 지원단가이며, 괄호는 2021년 2월까지 지원 단가를 의미함.

3) 연장형 보육료 지원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보육, 야간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간 연장보육은 평일 19:30~24:00까지로 월 60시간까지 지원되면, 일반아동은 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은 시간당 4,200원을 지원한다.

야간12시간 보육은 19:30~익일 7:30까지로, 주간에 어린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만0세는 484,000원, 만1세는 426,000원, 만2세는 353,000원, 만3세 이상은 260,000원이다.

24시간 보육은 7:30~익일 7:30까지로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만0세는 726,000원, 만1세는 639,000원, 만2세는 529,500원, 만3세 이상은 390,000원이다. 휴일보육은 토요일은 제외한 일요일, 공휴일 07:30~19:30이며, 지원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다.

〈표 Ⅱ-1-6〉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nfo/retrieveGvmtWellnfo.do?searchIntClld=01&wellnfSno=296 에서 2021, 5, 31, 인축.

〈표 Ⅱ-1-7〉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 내용

구분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단가: 일반아동 3,200원(시간당), 장애아동 4,200원(시간당) 기준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지원한도: 월 60시간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0~5세 보육료 지원단가(〈표 II-1-4〉) 참고 기준시간: 19:30~익일 7:30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0~5세 보육료 지원단가(〈표 II-1-4〉) 참고 기준시간: 7:30~ 익일 7:30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 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이동
휴일 보육료 (토요일 제외)	지원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7:30~19:30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nfo/retrieveGvmtWellnfo.do?searchIntClld=01&wellnfSno=296 에서 2021. 5. 31. 인출.

4)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야가 대상이며,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시간제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단가는 시간당 4,000원으로 총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본인 부담은 1,000원이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4천원 전액을 본인 부담한다(김동훈 외, 2020).

〈표 Ⅱ-1-8〉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내용

구분	내용
1 -	-110
지원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간	- 월 80시간
지원내용	-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3,000원 지원(본인부담은 시간당 1,000원)

자료: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서 2021. 5. 31. 인출.

5)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8: 이정원, 이정림, 권미경, 이윤진, 이혜민, 2018: 46 재인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다(김동훈 외, 2020: 56). 0~5세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김동훈 외, 2020: 56).

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표 Ⅱ-1-9〉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지원사업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지원내용	- 기본형: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지원시간	- 연 840시간 이하(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표 Ⅱ-1-10〉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지원 단가(일반가정)

단위: 원

유형	소득 기준	기본형				종합형			
	(기준 중위소득)	A형		B형		A형		B형	
	(기군 중귀오국)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	1,506	7,530	2,510	8,534	4,516	7,530	5,520
나형	120% 이하	6,024	4,016	2,008	8,032	6,024	7,026	2,008	11,042
다형	150% 이하	1,506	8,534	1,506	8,534	1,506	11,544	1,506	11,544
라형	150% 초과	_	10,040	_	10,040	-	13,050	_	13,050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표 Ⅱ-1-11〉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지원 단가(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단위: 원

유형	소득 기준	기본형				종합형			
	· · · · · · · · · · · · · · · · · · ·	— ∣ Δaa ∣		B형		A형		B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	1,004	8,032	2,008	9,036	4,014	8,032	5,018
나형	120% 이하	6,024	4,016	2,008	8,032	6,024	7,026	2,008	11,042
다형	150% 이하	1,506	8,534	1,506	8,534	1,506	11,544	1,506	11,544
라형	150% 초과	_	10,040	_	10,040	_	13,050	_	13,050

주: 일반가정과 가형에서만 지원금액이 다르며, 나머지(나형~라형)은 일반가정과 동일함.

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표 Ⅱ-1-12〉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사업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생후 3~36개월 영아의 가정
지원내용	-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지원시간	- 월 60~200시간 이내(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원칙)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표 Ⅱ-1-13〉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단가(일반가정)

단위: 원

O#4	소득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	1,506			
나형	120% 이하	6,024	4,016			
다형	150% 이하	1,506	8,534			
라형	150% 초과	-	10,040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표 Ⅱ-1-14〉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단가(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단위: 원

O#4	소득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036	1,004			
나형	120% 이하	6,024	4,016			
다형	150% 이하	1,506	8,534			
라형	150% 초과	_	10,040			

주: 일반가정과 가형에서만 지원금액이 다르며, 나머지(나형~라형)은 일반가정과 동일함.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다. 시간지원 재정사업

1) 육아휴직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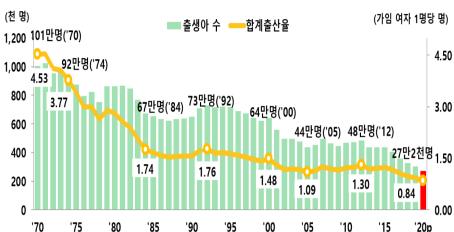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두 번째 사용자의 경우는 급여액을 상향하여 지급한다(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한편 2020년 3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한부모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로 상향조정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 3. 24.).

2.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가. 출산율과 0~5세 영유아수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 4백 명으로 전년대비 3만 3백 명이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대비 0.08명이 감소하여 저출산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489호) 제19조, 동법 시행령(제30509호) 제10조,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모성보호 육아 지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에서 2021. 6. 2. 인출).



[그림 Ⅱ-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새소식,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 q=&aSeq=3882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 &sTxt=%EC%B6%9C%EC%83%9D 에서 2021. 3. 17. 인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0~5세 연령구간 인구수는 2,121,390명으로 총 인구수 51,829,023명의 4.1% 수준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7.4%로 이들 인구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가 3.5%로 가장 낮았다. 총 인구대비 연령대별 인구비율은 0세 0.5%, 1세 0.6%, 2세 0.6%, 3세 0.7%, 4세 0.8%, 5세 0.9%로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영유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7)

나.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현황

어린이집수는 2020년 기준 35,352개소이다. 2013년 3-5세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수가 늘어난 후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출생아수 감소와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한 불신 등과 함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가 감소하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⁷⁾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 3. 16. 인출.

〈표 Ⅱ-2-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추이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사회 복 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87	3,844	-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204	6,473	-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263	11,346	42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401	19,367	74
2015	42,517	2,629	1,414	834	14,626	785	22,074	155
2016	41,084	2,859	1,402	804	14,316	948	20,598	157
2017	40,238	3,157	1,392	771	14,045	1,053	19,656	164
2018	39,171	3,602	1,377	748	13,518	1,111	18,651	164
2019	37,371	4,324	1,343	707	12,568	1,153	17,117	159
2020	35,352	4,958	1,316	671	11,510	1,216	15,529	152
(비율)	100.0	8.3	4.0	2.3	36.1	2.2	46.8	0.3

주: 1) 2005년 이전에는 에는 협동이 분류되어 있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p.2. 2)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2.

2020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수는 1,244,396명이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수는 253,251명으로 20.4%로 나타나, 2010년 10.8%에서 매년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아동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수 대비 연령별보육아동비율은 0세 9.2%, 1세 21.6%, 2세 27.5%, 3세 17.6%, 4세 12.7%, 5세 10.9%, 6세 이상 0.4%로 1세와 2세 보육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8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하면 영유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당분간 기관이용 영유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2-2〉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아 추이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 복 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2,388	42,116	_

⁸⁾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²⁾ 비율은 2020년 계를 기준으로 유형별 비중을 구한 값임.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협동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7,807	67,960	_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85	129,007	933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1,901	281,436	1,898
2015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44,765	344,007	4,127
2016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52,302	328,594	4,240
2017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58,454	321,608	4,508
2018	1,415,742	200,783	92,787	41,298	711,209	62,631	302,674	4,360
2019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66,023	273,399	4,121
2020	1,244,396	253,251	78,322	34,066	578,196	66,401	230,444	3,716
(비율)	100.0	14.1	8.2	3.9	50.2	3.4	20.0	0.2

주: 1) 2005년 이전에는 에는 협동이 분류되어 있지 않음.

영향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1)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p.3. 2)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3.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정원충족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6.4%로 전년대비 4.5%p가 감소하여 여느 때보다 큰 감소율을 보였다. 최근의 급격한 출생아수의 감소와 함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인한 가정양육이나 돌봄의 증가

다. 유치원 공급 및 이용현황

유치원 수는 2020년 8,705개원이었고, 이 중 국공립유치원은 4,967개원, 사립 유치원은 3,729개원으로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양적 공급격차는 매해 커지고 있다. 2013년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이후 사립유치원 증가하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하였고, 특히 2019년 이후 감소폭이 컸다. 출생아수와 함께 2018년 유치원 회계부정,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일련의 사태와 정책도입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감소가 두드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²⁾ 해당 통계는 만6세 이상이 포함된 자료임.

³⁾ 비율은 2020년 계를 기준으로 유형별 비중을 구한 값임.

〈표 Ⅱ-2-3〉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

단위: 개원, %

					211 112,				
구분	계		국공립		사립				
TŒ	/11	소계	국립	공립	소계	법인	사인		
1995	8,960	4,417	1	4,416	4,543	_	4,543		
2000	8,494	4,176	3	4,173	4,318	_	4,318		
2005	8,275	4,412	3	4,409	3,863	516	3,347		
2010	8,388	4,501	3	4,498	3,887	498	3,389		
2015	8,930	4,678	3	4,675	4,252	500	3,752		
2016	8,987	4,696	3	4,693	4,291	506	3,785		
2017	9,029	4,747	3	4,744	4,282	515	3,767		
2018	9,021	4,801	3	4,798	4,220	545	3,675		
2019	8,837	4,859	3	4,856	3,978	548	3,430		
2020	8,705	4,976	3	4,973	3,729	508	3,221		
(비율)	100.0	57.2	0.0	57.1	42.8	5.8	37.0		

주: 비율은 2020년 계를 기준으로 유형별 비중을 구한 값임.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중등통계, 설립별유치원수.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1. 3. 16. 인출.

2020년 유치원 원아수는 612,538명이었고,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는 178,901 명(29.2%), 사립 유치원 원아수는 433,637명(70.8%)으로 사립 유치원 원아수가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보다 훨씬 많았다.

〈표 Ⅱ-2-4〉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수 추이

단위: 명, %

78	ᅰ		국공립		1151	
구분	계	소계	국립	공립	사립	
1995	529,265	114,380	80	114,300	414,885	
2000	545,263	122,208	272	121,936	423,055	
2005	541,603	124,283	253	124,030	417,320	
2010	538,587	126,577	236	126,341	412,010	
2015	682,553	161,339	256	161,083	521,214	
2016	704,138	170,349	258	170,091	533,789	
2017	694,631	172,521	249	172,272	522,110	
2018	675,998	172,370	249	172,121	503,628	
2019	633,913	177,330	275	177,055	456,583	
2020	612,538	178,901	273	178,628	433,637	

구분	궤		국공립		사립	
下正	/1	소계	국립	공립	시급	
(비율)	100.0	29.2	0.0	29.2	70.8	

주: 사립은 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중등통계, 연령별원이수.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1. 3. 16. 인출.

〈표 II-2-5〉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만 0세 영유아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아비율은 20.4%였고, 만 1세는 79.3%, 만 2세는 88.4%로 나타났다. 출생이후 초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나, 만 1세가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체 취원율은 90% 이상으로, 누리과정 도입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만 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유치원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만 4,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육기능이 강한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가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6〉은 2015-2020년 기간 중의 연령별·설립유형별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로 만 0-2세 영아 1,264,594명 중 55.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 만 3-5세 유아 1,297,506명 중 88.7%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의 경우 전체 유치원 이용아 대비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비율이 2015년 23.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9.2%로 5.6% 상승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11.4%에서 20.4%로 9.0% 상승하여,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체 49.5%로 나타났다.

〈표 II-2-5〉0-5세 영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추이

%

百0 .. 함

	콲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민등록 인구수	3,689,612	3,208,694	3,187,718	3,153,489	3,044,577	2,904,953	2,726,967	2,562,100
전제	유치원 이용률	14.6	16.8	21.4	22.3	22.8	23.3	23.2	23.9
	어린이집 이용률	25.5	39.2	45.3	45.8	47.4	48.5	49.9	48.4
	주민등록 인구수	884,946	892,479	862,557	835,394	755,600	679,310	626,102	569,738
₩ 8	유치원 이용률	ı	ı	1	1	ı	ı	ı	1
	어린이집 이용률	3.8	14.0	15.9	16.9	18.5	18.7	20.2	20.4
	주민등록 인구수	491,757	465,564	439,989	439,207	442,943	411,225	362,900	331,606
<u>¥</u>	유치원 이용률	ı	1	1	1	1	ı	ı	1
	어린이집 이용률	18.2	49.3	70.1	72.5	74.7	77.6	81.1	79.3
	주민등록 인구수	493,820	493,452	488,716	440,530	439,700	443,586	412,018	363,250
24	유치원 이용률	ı	ı	1	ı	ı	ı	ı	ı
	어린이집 이용률	36.3	67.2	82.8	87.8	89.1	89.7	91.3	88.4
	주민등록 인구수	559,076	448,200	475,519	489,140	440,872	440,123	444,102	412,429
34	유치원 이용률	13.4	24.9	36.2	35.8	36.6	37.2	35.9	36.4
	어린이집 이용률	40.0	54.3	53.3	53.9	53.7	53.0	54.1	52.1
	주민등록 인구수	639,478	435,281	473,120	475,817	489,401	441,105	440,483	444,367
4세	유치원 이용률	27.7	41.7	52.7	53.2	52.4	52.6	51.0	49.7
	어린이집 이용률	34.4	41.5	38.1	37.9	38.5	38.4	39.4	39.2
	수나의 돌음마소	620,535	473,718	447,817	473,401	476,061	489,604	441,362	440,710
2세	유치원 01용률	46.3	51.6	58.2	58.2	28.0	57.2	56.5	54.8
	어린이집 이용률	31.5	31.5	32.9	32.5	32.8	33.4	33.7	33.9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이동에서 만6세 이상은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06). 보육상세통계. Κŀ

3)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94. 6)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100. 2)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p.69. 5)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99. 8)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103. 4)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98.

7)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100.

9)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중등통계, 연령별원이수,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1. 3. 16. 인출. 10)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B04006&conn_path=13 에서 2021. 4. 28. 인출.

(표 II-2-6) 연령별·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2015-2020년)

%			l	l		1	l	l		1				1		l
단위: 명, %	₻	국공립 이용률	49.5	16.9	11.8	17.2	18.6	54.0	45.5	53.0	61.1	44.9	39.6	37.6	36.3	35.0
	전체	전체 이용률	72.3	55.4	20.4	2.67	88.4	88.7	9.88	6'88	9.88	73.1	71.8	70.2	68.1	66.7
		국공립 이용률	20.4	16.9	11.8	17.2	18.6	24.8	23.6	25.2	26.0	17.0	14.1	12.8	12.1	11.4
	찐	국공립 이외	987,126	582,201	102,673	217,875	261,653	404,925	164,177	130,367	110,381	,128,575	,210,345	,258,122	,269,458	,281,076
	아린이집	도 명원	252,212	118,689	13,795	45,253	59,641	133,523	50,676	44,027	38,820	230,900 1,128,575	199,335 1,210,345	185,413 1,258,122	174,326 1,269,458	164,341 1,281,076
		판	1,239,338	700,890	116,468	263,128	321,294	538,448	214,853	174,394	149,201	1,359,475	1,409,680	1,443,535	1,443,784	1,445,417
		국공립 088룔	29.2	ı	ı	-	ı	29.2	21.9	27.7	35.1	28.0	25.5	24.8	24.2	23.6
	떙	사립	433,495	ı	1	1	1	433,495	117,287	159,447	156,761	456,380	503,434	521,731	533,422	520,814
	유치원	국윤립	178,758	ı	1	1	1	178,758	32,912	61,211	84,635	177,140	172,125	172,099	170,084	161,041
		퓻	612,253	ı	1	ı	1	612,253	150,199	220,658	241,396	633,520	675,559	693,830	703,506	681,855
	II.	사임 임수	2,562,100	1,264,594	569,738	331,606	363,250	1,297,506	412,429	444,367	440,710	2,726,967	2,904,953	3,044,577	3,153,489	3,187,718
	<u>m</u> o		전체	소계(0-2세)	DMI	1세	2세	소계(3-5세)	3세	4AI	<u>K</u>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쮨						2020년					20	20	20	20	20

. 편

주: 1) 유치원 이용아동은 만3세에 만3세 이하를 포함함.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아동에서 만6세 이삼은 포함하지 않았음.
13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99.
4)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00.
5)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p.100.
7)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증등통계, 연령발원이수.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1. 3. 16. 인출.
8) KOSIS 국가통계포텔, 행정구역(시군구)별기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i/stathtmi.do?orgld=101&tblld=DT_1B04006&conn_path=13 에서 2021. 4. 28. 인출.

라.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09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9년 7월 도입 당시에는 만 0~1세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0만워을 지급하였다(신유정 외. 2009). 2011년 1월부터는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 대하였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12개월 미 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또한 소득인정액도 상 향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조정되었다(보건복지부 보 도자료, 2010. 12. 30.). 2012년에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였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 1. 18.) 2013년 3월에는 양육수당 지워 정책이 전 계층 전 연령 대상 지원으로 확대 되었다(이정원, 이혜민, 2014).

〈표 Ⅱ-2-7〉 양육수당 수급자 수

단위: 명. 건

구분	Л	가정양육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2010	51,838	_	-	_
2011	89,756	_	_	_
2012	102,653	92,818	2,258	7,577
2013	1,060,484	1,053,071	2,112	5,301
2014	1,012,336	1,006,825	2,032	3,479
2015	1,009,346	1,004,154	2,169	3,023
2016	933,153	927,821	2,171	3,161
2017	836,290	830,635	2,274	3,381
2018	745,677	740,163	2,221	3,293
2019	658,450	653,497	1,779	3,174
2020	642,095	637,476	1,599	3,020

주: 1) 2010년은 양육수당 지급 대상 현황자료이며, 차상위 계층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가구에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자료: 1)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p.188.

- 3)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pp.247-249.
- 5)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pp.242-244.
- 7)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p.273-276.
- 9)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p.276-279.
- 11)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p.293-296.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 4)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pp.237-240.
 - 6)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p.250-253,
 - 8)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p.274-277.
 - 10)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p.296-299.

^{2) 2010}년과 2015년은 단위가 명이며, 2016년 이후는 단위가 건임.

가정양육수당 수급건수는 2009년 도입 이래 보편 지원과 함께 2013년 1,060,48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 642,095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보편지원의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출생이수의 급격한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표 II-2-7 참조).

개월(연령)별 양육수당 수급자 수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0-11개월 수급자수는 243,132명, 12-23개월 187,316명, 24-35개월 64,249명, 36-47개월 34,313명, 48-59개월 32,688명, 60-71개월 37,356명, 72개월-취학전 43,041 명으로 나타나, 0-23개월 수급자가 전체 67%를 차지하였다.

〈표 Ⅱ-2-8〉 개월별 양육수당 수급자 수

단위: 명, 건

구분	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취학전
2015년	1,009,346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2016년	933,153	363,178	305,911	117,302	47,840	34,711	30,609	33,602
2017년	836,290	317,981	274,578	106,954	43,300	29,134	32,163	32,180
2018년	745,677	291,106	236,328	88,440	39,719	28,089	28,401	33,594
2019년	658,450	269,362	203,769	66,223	31,442	27,913	29,534	30,207
2020년	642,095	243,132	187,316	64,249	34,313	32,688	37,356	43,041

주: 2015년은 단위가 명이며, 2016년 이후는 단위가 건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250.

-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273.
- 3)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274,
- 4)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276.
- 5)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296.
- 6)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293.

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수는 2011년에 39,138가구에서 2016년 61,221가구, 2019년 70,485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 후 2020년 59,663가구로 감소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자로, 이용자수는 2011년 37,934명에서 2020년 56,525명으로 증가하였고, 종일제 이용자수는 2011년 1,204명에서 2020년 3,138명으로 증가하였다.

아이돌보미수의 경우 201년 10,758명에서 202년 24,4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⁹⁾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표 Ⅱ-2-9〉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이용가구	39,138	43,947	51,393	54,362	57,687	61,221	63,546	64,591	70,485	59,663
이용형태별										
시간제 이용	37,934	41,599	47,700	49,989	52,354	55,958	58,489	60,053	66,783	56,525
종일제 이용	1,204	2,348	3,693	4,373	5,333	5,263	5,057	4,538	3,702	3,138

자료: 1)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2)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소개, 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lnfo. 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 NT 에서 2021. 3. 17. 인출.

〈표 Ⅱ-2-10〉 연도별 아이돌보미 수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아이돌보미 수	10,758	11,589	16,393	17,208	17,553	19,377	20,878	23,675	24,677	24,469

자료: 1)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2)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소개, 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lnfo. 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 NT 에서 2021. 3. 17. 인출.

바. 일·가정양립 지원

국회예산정책처(2019b)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추이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감소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남성친화적인 제도(육아휴직 특례, 아빠의 달 등)나 제도 이용기간 확대, 지급액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와 사회인식의 변화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2009년 35,400명에서 2018년 99,205명으로 연평균 12.1% 늘었고, 급여지출 규모도 2009년 1,397억원에서 2018년 8,39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9b).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2009년에 남성 비중이 1.4%였으나 2018년에는 17.8%에 이르게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b).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급여가 처음 지급된 2011년 사용자가 3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3.820명으로 연평균 92.5% 증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9b).

3. 양육지원정책 재정 현황

가. 국가재정

양육지원정책 재정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재정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크게 16대 분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양육지원정책과 관련 성이 높은 보육, 돌봄은 사회복지 분야, 유아교육은 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은 2021년도 총지출 558.0조원 중 185.0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교육분야 총지출은 71.2조원으로 3번째로 규모가 크다. 2016~2021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7.6%이며,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10.4%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분야는 6.0%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았다.

〈표 Ⅱ-3-1〉 국가재정 16대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1. 일반·지방행정	59.5	63.3	69.0	76.6	79.0	84.7	7.3
2. 공공 질서 및 안전	17.5	18.1	19.1	20.1	20.8	22.3	5.0
3. 통일·외교	4.7	4.6	4.7	5.1	5.5	5.7	3.9
4. 국방	37.8	39.0	41.8	45.3	48.7	51.4	6.3
5. 교육	53.2	57.4	64.2	70.6	72.6	71.2	6.0
6. 문화 및 관광	6.6	6.9	6.5	7.2	8.0	8.5	5.2
7. 환경	6.9	6.9	6.9	7.4	9.0	10.6	9.0
8. 사회복지	112.9	119.1	133.8	148.9	167.0	185.0	10.4
9. 보건	10.5	10.4	10.9	12.1	13.5	14.7	7.0
10. 농림수산	19.4	19.6	19.7	20.0	21.5	22.7	3.2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3	16.0	16.3	18.8	23.7	28.6	11.9
12. 교통 및 물류	19.8	18.6	15.3	15.7	19.2	21.4	1.6
13. 통신	7.5	7.0	7.0	7.3	7.9	8.4	2.3
14. 국토 및 지역개발	3.9	3.5	3.7	4.1	4.0	5.1	5.5
15. 과학기술	6.8	7.0	7.1	7.3	8.2	9.0	5.8
16. 예비비	3.2	3.0	3.0	3.0	3.4	8.6	21.9
총지출	386.4	400.5	428.8	469.6	512.3	558.0	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재정.

열린재정 재정정보시스템의 2021년 세부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부문으로,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구분된다. 세출 상 프로그램은 7개, 단위사업은 17개, 세부사업은 37개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총 14조 9672억원 규모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이 26.2%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 아동수당 14.8%, 일·가정양립지원 12.6%, 어린이집 지원 11.2%, 가정양육수당 지원 5.1% 순이었다. 이들 6개 단위사업 예산이 13조 8,740억원으로 92.7%를 차지하였다.

〈표 Ⅱ-3-2〉 열린재정을 통해 본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	2021년 예산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시간제보육료지원	일반회계	3,416,809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 • 국공립 신축/임차, 장애아전문 등	일반회계	67,747
사회복지 / 아동·보 육	보육지원 강화	어린이집 관리	보육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보육실태조사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보육진흥원 운영지원(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 사지원	일반회계	39,621
		•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지원 - 교직원인건비, 보조/대체교사 인건비, 수당, 차량 등		일반회계	1,674,747
		가정양육수 당 지원	• 취학전 가정양육 수당 지원	일반회계	760,779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	2021년 예산
	아동보호 및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 가정위탁 지원·운영 •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	일반회계	2,846
	복지강화	방과후 <u>돌</u> 봄 지원	• 다함께 돌봄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회계	228,677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원	일반회계	2,219,455
	저출산대 응 및 인구정책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반회계	18,338
사회복지 / 여성·가족	지원	모자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민건강 증진기금	42,775
·청소년		아이돌봄지원	• 아이돌봄지원	일반회계	251,453
	가족정책	가족정책 기반구축	• 가족역량강화 지원 •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일반회게	10,164
	및 돌봄지원	가족서비스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양성평등 기금	92,526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양성평등 기금	318,059
교육 /	지방교육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 지원특별 회계	3,916,771
유아및초 중등교육	정책 지원	초등돌봄교 실 시설 확충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일반회계	21,000
사회복지 / 고용	고용평등 증진	일·가정양 립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 •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이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고용보험 기금	1,885,408
2711/4711	7개	17개	377#	5개	14,967,175

주: 교육분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특수시책사업, 일부 기금사업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²⁾ 열린재정, 재정통계, 상세재정통계DB,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https://www.openfiscaldata. 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jsessionid=b9G2Wo1VVUMKPkKprTkCau2gBbEXJA9n6WomyBULBd6e1sWyJb07VjQcYWByHVJY.IFPBWAS2_servlet_engine1?mld=B002 에서 2021. 3. 16. 인출.

나. 보육재정

1) 보육사업 국비 예산

2021년도 보육재정은 국가재정 중 사회복지 분야 아동·보육 부문에 5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예산은 5조 9,597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비중이 각각 57.3%, 28.1%, 12.8%로 전체보육예산의 98.2%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수의 감소와 함께 보육예산에서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육사업은 크게 이용자 지원사업과 공급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지원사업이고, 보육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은 어린이집이나 지원시설 품질관리 등 보육서비스 공급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보육사업 예산은 국가재정으로 보건복지부 일반화계 예산에 편성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 조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으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다.

〈표 Ⅱ-3-3〉 보육사업 국비 예산(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51,861	52,708	53,735	55,052	56,697	58,728	59,597
□ 영유아보육료지원	31,452	31,185	31,380	32,672	34,163	34,328	34,168
•영유아보육료 지원	31,377	31,066	31,292	32,575	34,053	34,162	33,952
·시간제 보육지원	75	120	88	97	10	166	216
□ 어린이집 기능보강	675	367	288	742	794	946	677
·어린이집 기능보강	340	64	64	58	105	198	69
· 어린이집 확충	334	302	224	684	688	748	609
□ 어린이집 관리	266	309	248	260	320	425	396
◦보육사업관리	14	78	33	40	38	40	4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49	113	95	89	118	165	117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0	27	27	28	28	25	25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보육실태조사	8	-	1	7	-	1	7
-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	1	1	-	170	18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3	12	12	11	9	13	1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2	2	2	2	2	2	1
· 어린이집 평가인증	98	77	79	82	118	0	0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	-	-	-	-	7	11	11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62	-	-	-	-	-	-
☐ 어린이집 지원	7,354	8,655	9,577	10,487	12,497	14,871	16,747
· 공공형어린이집	441	487	558	610	629	630	606
·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6,913	8,168	9,019	9,877	11,868	14,242	16,141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115	12,192	12,242	10,891	8,923	8,157	7,608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255.

-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277.
- 3)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278.
- 4)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280.
- 5)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300.
- 6)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297.

2)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이외에 지방정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보육예산 이외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주민의 보육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 예산으로 다양한 특수보육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선 외(2018)에서 정리한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3-4〉와 같다. 부모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를 포함하는 '보육비용',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정액수당, 간헐적 수당을 포함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조리인력, 대체교사, 기타 인력 지원을 구분하는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급간식비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그 밖에 '공인시설 지원', '환경개선비지원', '취약보육 지원', '교육·연수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Ⅱ-3-4〉 특수보육시책 사업 분류체계

구분	세부 내역
보육비용	부모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정액수당, 간헐적 수당
인건비 지원	조리인력, 대체교사, 보조교사·운영도우미, 간호사·영양사, 기타 종사자,

구분	세부 내역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급간식비, 차량운영비, 상해보험료, 평가인증 수수료, 재무회계 및 전기 안전, 건강·안전 관련, 포괄적 지원
공인시설 지원	인건비 지원, 기타 운영비
환경개선비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취약보육 지원	장애아보육 인건비, 장애아보육 운영비, 다문화보육, 시간연장·시간제 인 건비, 시간연장·시간제 운영비, 방과후보육, 기타
교육·연수 등	교육연수, 워크숍 등 행사, 해외연수

자료: 이원선 외(2018), 2018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p.16. 〈표 I-1-1〉.

이원선 외(2018)에 따르면, 2018년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총액은 1조 2,087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은 총 9,182억원이었으며,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은 2,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38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서울 3,130억원, 인천 676억원, 충남 571억원, 경북 549억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세종 116억원, 광주 142억원, 대구 169억원, 전남 178억원, 울산 179억원 순으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5〉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시·도 특수보	육시책 사업 예산	시'판'구 국구포	.육시책 사업 예산	선	!체
전체 918,17	7 (76.0)	290,539	(24.0)	1,208,716	(100.0)
서울 241,492	2 (77.1)	71,527	(22.9)	313,018	(100.0)
부산 25,558	3 (83.6)	5,008	(16.4)	30,566	(100.0)
대구 12,900) (76.3)	4,018	(23.7)	16,918	(100.0)
인천 53,328	3 (78.9)	14,280	(21.1)	67,608	(100.0)
광주 12,567	7 (88.8)	1,587	(11.2)	14,154	(100.0)
대전 29,269	95.9)	1,244	(4.1)	30,513	(100.0)
울산 11,973	3 (66.7)	5,965	(33.3)	17,938	(100.0)
세종 11,59°	(100.0)	. –	_	11,591	(100.0)
경기 353,400	6 (80.5)	85,494	(19.5)	438,901	(100.0)
강원 14,413	3 (64.5)	7,915	(35.4)	22,329	(100.0)
충북 8,687	7 (25.2)	25,803	(74.8)	34,491	(100.0)
충남 41,800) (73.2)	15,340	(26.8)	57,140	(100.0)

구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전체
전북	13,339 (68.8)	6,060 (31.2)	19,400 (100.0)
전남	8,150 (45.8)	9,639 (54.2)	17,789 (100.0)
경북	35,864 (65.3)	19,040 (34.7)	54,905 (100.0)
경남	20,839 (54.2)	17,618 (45.8)	38,457 (100.0)
제주	23,000 (100.0)	. – –	23,000 (100.0)

자료: 이원선 외(2018). 2018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p.58. 〈표 II-2-1〉.

3)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 정리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업별 분류기준은 다음의 〈표 II-3-6〉과 같았다. '결혼(전)'에는 만남, 건강검진, 주택지원 등을 포함하며, '결혼'에는 결혼준비, 결혼식, 신혼여행을 포함하였고, '임신전)'에는 임신 전 또는 임신준비 단계 지원사업, '임신'은 임신전부터 출산 전단계까지 지원사업, '출산'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단계까지 지원사업, '육아'에는 산후조리 종류 이후 자녀양육 관련 지원 사업, '가족'에는 저출산 및 인구교육및 캠페인, 출산 및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홍보 등을 포함하였다.

〈표 Ⅱ-3-6〉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 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사업 분야 (생애주기별)	결혼(전)	결혼 목적의 만남 , 미혼남여 건강검진 , 청년 주택지원 등				
	결혼	결혼준비(예: 예비부부교육, 주택마련 등), 결혼식, 신혼여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임신(전)	임신 전 또는 임신준비 단계에 지원하는 사업 (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한방, 검사비 등), 산전검 사, 신혼부부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등)				
	임신	임신전부터 출산 전 단계 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요가 및 마사지 등)				
	출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단계(출산 후 3개월 되는 시기)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 산후조리원비 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선물,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사진촬영 등)				
	육아	산후조리 종료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는 사업 (단,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제외)				
	가족	저출산 및 인구교육 및 캠페인, 출산 및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홍보 등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62. 〈표 II-2-1〉.

지원 방법에 따라서는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로 분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II-3-7〉에 정리하였다.

〈표 Ⅱ-3-7〉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표: 지원 방법

사업명	내용					
	현금	현금 지원 예: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양육비, 육아 수당, 육아지원금, 신생아양육비 등 출산비용, 임신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입학축하금, 돌축하금, 입양 축하금, 생일축하금, 교복비, 장학금, 의료비, 교재비, 산후조리비, 한 약재비용, 검사비, 교통비, 간식비, 도서비 등 대출이자 지원				
	상품권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현금성	보험료 지원, 이용료 감면 예: 출생아(신생아) 건강보험료, 임산부 공영주차장료 할인 또는 감면, 임 산부 물품구입비 할인혜택(카드), 다자녀할인카드, 상하수도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 검사비 감면 등				
지원 방법	현물	물품 직접 지급 예: 출산축하선물(용품), 영유아 안전키트(안전용품), 영양제(엽산제 및 철 분제 등), 쓰레기종량봉투, 기저귀, 유아의자, 도서(북스타트) 등				
	바우처 (이용권)	- 바우처(예;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 - 쿠폰(예: 초음파 쿠폰,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각종 풍진검사쿠폰, 교환 권, 백일사진촬영권 등)				
	서비스	출산용품(유축기), 카시트,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도우미 지원, 양·한방 시술, 무료검사, 무료 예방접종, 무료 진료, 결혼식장, 아기등록 및 출생증명서 발급, 축하카드 등				
	인프라 구축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등 확충				
	교육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마사지, 육아교실, 임산부교실, 부모교육, 요가교실, 영유아 건강교실, 저출산 및 인구교육 등				
	홍보	책자 배포, 행사, 축제, 캠페인, 토론회, 포럼 등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63. 〈표 II-2-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8,00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출산이 5,36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육아 2,091억원, 임신 200억원, 결혼 163억원, 임신 전 98억원, 가족 47억원, 결혼 전 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법에 따라서는 현금 지원이 4.956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877억원, 바우처(이용권) 635억원, 서비스 601억원, 상품권 537억원, 현물 173억원, 현금성 157억원, 교육홍보 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8〉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재정 규모: 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전체
전체	4,522	16,304	9,845	20,009	536,214	209,056	4,724	800,674
(비중)	(0.6)	(2.0)	(1.2)	(2.5)	(67.0)	(26.1)	(0.6)	(100.0)
현금	4,083	15,905	2,141	3,246	395,168	74,935	164	495,642
(출산지원금)	_	-	_	ı	(379,367)	_	_	(379,367)
상품권	_	50	_	1,500	51,662	484	_	53,696
현금성	_	-	_	1,568	247	13,843	_	15,658
현물	_	-	367	2,753	12,704	1,439	_	17,263
바우처	34	-	1,066	1,935	59,140	1,324	_	63,499
서비스	392	185	6,257	7,708	7,979	37,119	465	60,104
인프라	-	-	_	_	9,253	78,407	_	87,660
교육홍보	13	165	14	1,299	61	1,505	4,095	7,152

주: 현금 지원사업에 포함된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71. 〈표 Ⅲ-1-4〉에서 일부 발췌함.

다. 유아교육재정

유아교육재정에 대한 범위와 규모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으나,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 학생수용시설비, 전출금, 유아학비지원(누리과정지원), 기타 사업비로 구분하거나(송기창, 2017),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지출액과 유아교육진흥사업지출액 전체와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104장표 상 유치원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본 연구(최효미 외, 2019)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종의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나 교육행정일반 등은 제외하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구분할 수 있는 사업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세부적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 있는 유아교육진흥 사업 내 4개 단위사업과 유아교육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에 있는 누리과정지원 사업예산으로 한정하였으며, 2020년 세출결산은 총 4조 6,487억원 규모로 나타났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과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이 다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3-9〉 지방교육재정 중 유아교육 관련 세부사업 세출 추이

단위: 억원

정책사업	세부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수-학습활 동지원	유아교육 진흥	유아교육 지원	213	227	250	416	587	524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745	797	890	1,073	1,382	1,643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81	106	122	127	190	177
		사립유치원 지원	2,223	2,364	2,464	2,887	3,422	4,525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39,333	38,779	38,993	39,421	37,919	39,618
계			42,596	42,273	42,719	43,924	43,500	46,487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교육재정, 결산공시. https://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ClsgPage.do 에서 2021. 12. 1. 인출.

라. 유아교육재정 국제비교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영유아 1인당 연간 평균 공공지출 비용은 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지수(USD PPP)로 환산하면 5,500 달러 EU평균은 5,200달러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가 14,500달러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10,000 달러 이상으로 공공지출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6,900달러로 OECD나 EU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3,600 달러, 2,600달러로 ECEC의 공적 투자수준이 낮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영유아당 보육과 유아교육 지출비용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독일과 벨기에는 보육보다는 유아교육 단위비용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유아교육보다는 0-2세 보육에 대한 영유아당 공공지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ECEC 공교육비 비중은 0.9%로 OECD/EU 평균 0.7% 보다 0.2%p 높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는 GDP 대비 1.0% 이상 ECEC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은 OECD와 EU 평균과 같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Ⅱ-3-10〉 유아교육재정 주요국 국제비교(2017년)

단위: USD PPP. %

	원아당	당 연간 공공지출	GDP 대비 연간 지출 비율			
구분	보육 (0-2세)	유아교육 (3-5세)	전체 (0-5세)	보육 (0-2세)	유아교육 (3-5세)	전체 (0-5세)
한국	8,000	5,900	6,900	0.5	0.4	0.9
룩셈부르크°	-	-	14,500	-	_	0.8
아이슬란드	13,700	12,800	13,200	0.9	0.9	1.8
노르웨이	11,900	12,800	12,300	0.6	0.7	1.4
스웨덴	15,600	7,800	11,700	1.1	0.5	1.6
덴마크°	_	-	11,100	_	_	1.3
프랑스	8,100	8,700	8,400	0.6	0.7	1.3
핀란드	8,800	7,200	8,000	0.6	0.5	1.1
독일	4,400	8,900	6,600	0.2	0.4	0.7
벨기에	2,000	10,000	6,100	0.1	0.7	0.8
일본®	-	-	5,900	-	_	0.7
영국	900	6,200	3,600	0.1	0.5	0.6
미국	700	4,600	2,600	0	0.3	0.3
OECD 평균 ^b	_	_	5,500			0.7
EU평균b	_	_	5,200	_	_	0.7

주: 1) 'a'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으로 구분된 재정자료 없음.

- 자료: 1)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Chart PF3.1.A. 에서 2021. 11. 3. 인출.
 - 2)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Chart PF3.1.B. 에서 2021. 11. 3. 인출.

4. 해외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사례

가. 미국

1) 개요

미국의 아동복지는 민간기관과 몇몇 주정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시작은 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노동의 근절이었다. 미국 이주 초기인 1700년 대부터 고아를 위한 시설들이 설립되었으며, 1854년에는 동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다른 지역의 가정으로 이송하는 고아열차(Orphan train)라는 것이 운영되기도 하였다(홍근석, 2020: 77). 1904년에는 아동노동 근절을 목표로 국가 아동노동위원회(National Child Labor Committee)가 설립되었으며, 1912년에는 태

^{2) &#}x27;b'는 GDP대비 ECEC(0-5세) 전체 비율만 제시됨.

프트 대통령에 의해 아동과 아이를 가진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국(U.S. Children's Bureau)이 설립되었다(홍근석, 2020: 77). 1926년에 아동국이 발표한 자녀가 있는 엄마들을 위한 공공지원(Public Aid to Mothers with Dependent Children)은 아동복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초 연구로, 1935년에 수립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부양아동에 대한 지원부서(the Aid to Dependent Children Section)를 추가하는 기반이 되었다(홍근석, 2020: 78).

1962년에 통과된 공공복지 수정안(Public Welfare Amendments of 1962)은 「사회보장법」의 아동복지 규정(Title V)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홍근석, 2020: 78). 이 법안은 위탁가정 아이들(children in foster care)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에게 대응 교부금(matching grant)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으로써 아동복지와 공공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행정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홍근석, 2020: 78).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추진한 「경제기회법 (Economic Opportunity Act)」은 아동복지 보조금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헤드스타트(headstart)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하였다(홍근석, 2020: 78). 이후 아동국은 아이들의 입양, 학대 및 방임 방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홍근석, 202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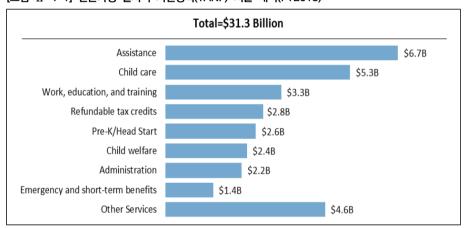
2) 아동 보육 관련 재원분담

가)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기본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부양 자녀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금으로, 기본 포괄보조금(Basic block grant), 경제위기와 연관된 임시 기금(recession-related contigency fund), 그리고 경쟁을 통해 지급되는 결혼장려 및 책임감 있는 부성보조금이라는 3가지 유형의 연방보조금으로 구성된다(홍근석, 2020: 81).

2018년 기준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총 예산은 313억 달러 였으며, 이중 빈곤 가정을 위한 지원에 67억 달러(21%)를 사용하였으며, 양육보조(child

care funding)에 53억 달러 (17%)를 사용하였다(홍근석, 2020: 81).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수혜를 받는 가정을 위한 취업 지원(교육 및 훈련)은 33억 달러(11%)로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저임금 부모를 돕기 위해 소득세환급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제공하는 데 28억 달러(9%)를 지출하였다(홍근석, 2020: 82). 또한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각 주의 어린이집 (pre-kindergarten)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을 지원하고(26억 달러),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와 위탁가정 지원 등 아동복지(Child welfare)사업에 24억 달러를 지출하였다(홍근석, 2020: 82).



[그림 II-4-1]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출 내역(FY2018)

자료: Falk and Landers(2019); 홍근석(2020)에서 재인용.

나) 주정부 사례: 텍사스 주

미국의 아동양육 프로그램 운영은 각 주정부에서 담당하며, 연방정부는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다(김진탁, 2021: 6).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율적으로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텍사스 주의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은 텍사스주 노동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 TWC)에 의해 관리되며, 28개의지역 인력개발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Board)가 기금을 집행한다(김진탁, 2021: 6). 텍사스 주 노동위원회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을 보조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취업 및 직업훈련이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 장기적인 자립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진탁, 2021: 6).

이러한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달하 며, 크게 세 가지 기금 유형(의무, 매칭, 재량 기금)으로 구성된다(김진탁, 2021: 7). 첫째, 재량 기금(Discretionary Funds)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으로 5세 미만 영유아 비율, 급식 지원 수혜자 비율, 그리고 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의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 주에 분배된다(김진탁, 2021: 7). 둘째, 의무기금 (Mandatory Funds)은 연방기금으로 1994회계년도나 1995회계년도, 혹은 FY1992-1994동안 평균적으로 배분된 연방기금을 기준으로 각주에 배분되며,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관련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이다(김진탁, 2021: 7). 셋째, 매칭 펀드(Matching Fund)는 의회가 책정하여 사회보장법에 명시한 금액과 각 주에 분배된 의무기금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기금 이다(김진탁, 2021: 7). 매칭 펀드는 전체 13세 미만 인구 대비 해당 주의 13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분 년도 2년 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며, 매칭 펀드를 수령하기 위해서 각 주는 최소한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주 정부 의무지출액 이상의 非연방 기금을 지출해야 하며, 해당 지출은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of 1990"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김진탁, 2021: 7).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은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CDBG) of 2014"와 "Section 418 of the Social Security Act"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김진탁, 2021: 7). CDBG는 주 정부의 의무, 서비스 제공기관 혹은 시설에 대한 의무사항, 관련 인력의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의 Section 418에서는 보육기금의 책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진탁, 2021: 7).

각 주는 총 CCDF 금액의 7~9 퍼센트를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하며, CCDF의 관리비용은 전 체 기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김진탁, 2021: 8). 그리고 의무기금과 연방 및 주 정부에 할당된 매칭 펀드의 최소 70퍼센트는 연방법에서 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재량기금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사항을 제외한 운영 및 활용의 재량권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다(김진탁, 2021: 8).

텍사스 주의 보육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주로 연방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텍사스주 노동위원회 운영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관련 항목에 대한 전체 예산은 약 9.3억 달러, 이 중 연방기금은 약 7.6억 달러로 전체 보육관련 예산의 약 82%를 차지하였다(김진탁, 2021: 8). 이외 지방정부 출연기금 및 민간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약 1.7억 달러로 전체 보육관련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였다(김진탁, 2021: 8).

텍사스 주는 CCDF와 보육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타 기금들에 대하여 연방 및 주정부의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보육 서비스의 개선 활동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3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장애 아동의 경우19세 이하)가 보육서비스 지원의 수급자격을 가지며, 수혜가구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김진탁, 2021: 8).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 및 수급자격에 대한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인력개발위원회 (Workforce Development Board)마다상이할 수 있다(김진탁, 2021: 9).

나. 독일

1) 개요

독일의 양육지원정책은 정책대상을 ① 만 3세 미만, ②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2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탁아소(Krippe)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Kindergarten)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장인성, 2021: 1).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소와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을 종합하여 아동일일 보육시설(Kindertagesstätte, KiTa)이라고 부르며,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이나 아동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책정된다(장인성, 2021: 1). 예를 들어주 35시간 기준 50,000유로의 소득을 가진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는 123유로에서 280유로이며, 베를린의 경우에는 2018년 8월 1일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장인성, 2021: 1).

다른 OCE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독일의 아동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보육종사자 1인당 아동 수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경우 보육종사자 1인당 아동 수가 5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I Kindergarten und Vorschule

Krippe

15

10

Chille Rodriged Control of Cont

[그림 II-4-2] OECD 보육종사자 1인당 아동 수(2017년 기준)

자료: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65789005/Was-Sie-wissen-sollten-bevor-Sie-ueber-Ihre -Kita-meckern.html, 장인성(2021)에서 재인용.

2) 아동 보육 관련 재원분담 현황

가) 관련 법령

아동 보육과 관련된 독일의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의 연방 사회보 장법(Sozialgesetzbuch) 제8권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Kinder-Jugendhilfe)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 일일보육시설 및 아동 돌봄 촉진에 관한 권리(§ 24 Anspruch auf Förderung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에서는 아동 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장인성, 2021: 2). 먼저 3세 미만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8권의 규정을 바탕으로 1세 이상 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위한 보육 권리 보장 및 정원 확대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일보육확충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은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및 가정 내 보육의 질적인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장인성, 2021: 2). 또한 아동 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KitaFinHG)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장인성, 2021: 2). 이 법에 따라 2008~2013년 21억 5천만 유로, 2013~2014년 5억 8천만 유로, 2015~2018년 5억 5천만 유로, 2017~2020년 11억 2천만 유로, 2020~2021년 10억 유로의 연방정부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연방정부 예산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조건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며, 보육시설의 신설, 확장, 이전 등의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인성, 2021: 2).

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일반적으로 독일의 연방보조금은 ①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②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③ 연방지원금, ④ 연방보충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홍근석, 2020: 90). 이 중에서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헌법」제104a조 제3항에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연방위임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홍근석, 2020: 92). 제104a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부의 연방위임사무는 다양한 법률에 기초하여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사무이다(홍근석, 2020: 92). 이러한 현금급여 사무는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① 연방교육교부금, ② 주거교부금, ③ 부모교부금, ④ 아동생계교부금, ⑤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⑥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여섯 영역이다(홍근석, 2020: 92)

이 중에서 부모교부금은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홍근석, 2020: 93-94). 이 제도는 「부모급여 법률(BEEG10)」」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각 영·유아부모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홍근석, 2020: 94). 부모교부금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생후 12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이며, 한부모의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BEEG」 제4조 제3항). 부모교부금 수혜자의 핵심요건은 ① 주거지, ② 동거, ③ 돌봄, ④ 생업활동, ⑤ 기타등 5가지 사항11이다(「BEEG」 제1조 제1항). 부모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

^{10) &}quot;Bundeselterngeld-und Elternzeitgesetz"의 약칭이다.

¹¹⁾ 영·유아와 부모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와 부모가 동일한 가족 공간에 있어야 한다.

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연방재무성, 2019; 홍근석, 2020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아동생계교부금은 아동의 생계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홍근석, 2020: 94). 이 제도는 「아동생계교부금법(UnterhaltsVG)」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각 아동·청소년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홍근석, 2020: 94). 아동생계교부금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이며, 교부금 수혜자의 핵심요건은 ① 연령, ② 부모혼인관계, ③ 생활비관계, ④ 「연방사회복지법II(SGB II)」상의 규정 등 4가지 사항12)이며, 아동생계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40%, 주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있다(연방재무성, 2019, 홍근석, 2020 재인용).

〈표 Ⅱ-4-1〉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분담 비율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근거 법률
연방교육교부금	100	0	「BAföG」,「SGB I」제68조 제1문
주거교부금	50	50	「WoGG」, 「SGB I」 제68조 제15문
 부모교부금	100	0	「BEEG」,「SGB I」제68조 제15문
아동생계교부금	40	60	「UnterhaltsVG」, 「SGB I」 제68조 제14문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	58.3(최고)	41.7(최저)	「BSHG」,「SGB II」,「SGB XII」,
교부금13)	43.6(최저)	56.4(최고)	「AsylbLG」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	100	0	「SGB XII」제4장

자료: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홍근석(2020)에서 재인용.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총액은 250억 유로이며, 2014년과 비교할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돌봐야 하며, 영·유아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앞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부모교부금의 수혜자가 될 수 이다.

¹²⁾ 첫째, 수급아동의 연령기준은 2가지이다. 교부금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2세까지의 아동이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은 「연방사회복지법II(SGB II)」상의 예외적 경우이다. 둘째, 수급대상 아동은 그의 부모가 편부모, 미혼자(예: 미혼모·부), 이혼, 양친의 장기간 별거 등 4가지의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편부모가 다른 한편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규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아동은 아동생계교부금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넷째, 「연방사회복지법II」에 따른 사회복지교부금을 받지 않거나, 「연방사회복지법II」 제9조에 따라 특별히 도움이 요구되는 등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8세까지 아동생계교부금의 수급대상자가 된다.(홍근석, 2020: 95)

¹³⁾ 회계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때 25.9%가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중에서 연방정부의 재원부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70억 유로(28.0%)이며, 다음으로 부모교부금이 67억 유로(26.8%),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이 59억 유로 (2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4-2〉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 재원분담 현황

단위: 억 유로

구분	'14년	'16년	'17년	'18년	증가율(%) '14년~'18년	비중(%) '18년 기준
합계	193	226	238	250	29.5	100
연방교육교부금 (「BAföG」)	16	24	24	22	37.5	8.8
주거교부금 (「WoGG」)	4	6	6	5	25.0	2.0
부모교부금 (「BEEG」)	57	61	65	67	17.5	26.8
아동생계교부금 (「UnterhaltsVG」)	3	3	4	9	200.0	3.6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 교부금 (「BSHG」등)	42	54	68	70	66.7	28.0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 (「SGB XII」제4장)	54	62	55	59	9.3	23.6
기타	17	17	18	19	11.8	7.6

자료: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홍근석(2020)에서 재인용.

다) 주정부 사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2021년 기준 아동 보육 관련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관련 주정부 세입은 1.5억 유로이며, 이 중 아동 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에 따른 연방교부금이 1.1억 유로로 세입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주정부 법률인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따른 반환금(0.3억 유로)과 연방교부금(0.1억 유로) 등의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아동 보육 관련 세출은 약 39억 유로이며, 이 중에서 주정부의 아동조기교육촉진법¹⁴⁾에 따른 지출이 29.2억 유로로 74.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경우 저소득층

및 이민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특수 보육기관으로 plusKITA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내 문제 해결과 교육 소외계층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주정부는 연간 1.6 억 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 유연화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중 20%는 게마인데 예산을 매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 주정부의 아동 보육 관련 세출 중 연방정부 재원은 2.79% 수준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주정부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아동 보육 관련 세입·세출 예산(2021년 기준)

구분	항목	예산액(유로)	비율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71.1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30,000,000	19.58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30,000,000 연방교부금 10,412,800 준비금 2,234,000 기타 세입 1,500,000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NRW주 환급금 147,000 합계 153,251,00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세출 2,924,588,20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425,132,500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투자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115,000,000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미usKITA 보조금 101,250,000 가정보육 보조금 101,250,000 가정보육 보조금 101,250,000 가장센터 보조금 81,131,400 가장센터 보조금 62,865,90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연화를 위한 10,000,000 게마인데 교부금(*게마인데 예산 20% 매칭) 특수한 경우의 아동보육을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21,000,000 기타 보조금 9,200,000 이동조기교육촉진법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 7,876,400 기타 게마인데 교부금 3,400,000	6.79	
세입	준비금	108,957,200 30,000,000 10,412,800 2,234,000 1,500,000 147,000 153,251,000 2,924,588,200 425,132,500 115,000,000 108,957,200 101,250,000 81,131,400 62,865,900 50,000,000 (10,000,000) 21,000,000 7,876,400 3,400,000	1.46
	기타 세입	1,500,000	0.98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NRW주 환급금	147,000	0.10
	합계	153,251,000	100.0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세출	2,924,588,200	74.79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425,132,500	10.87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투자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115,000,000	2.94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2.79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plusKITA 보조금	101,250,000	2.59
	가정보육 보조금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30,000,000 1 금 10,412,800 2,234,000 2 로법에 따른 NRW주 환급금 147,000 153,251,000 10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세출 2,924,588,200 7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425,132,500 1 시설 및 보육서비스 투자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115,000,000 10명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108,957,200 108,957,2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0,000 108,251 101,251	2.07
세출	가족센터 보조금	62,865,900	1.61
시II =			1.28
	특수한 경우의 아동보육을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21,000,000	0.54
	기타 보조금	9,200,000	0.24
	아동조기교육촉진법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	7,876,400	0.20
	기타 게마인데 교부금	3,400,000	0.09
	합계	3,910,401,600	100.00

자료: 장인성(202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재원분담.

¹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연방 사회보장법의 실행을 위해 아동교육법(Kinderbildungsgesetz NRW)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아동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장인성, 2021: 3).

다. 일본

1) 개요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가구당 평균 아동¹⁵⁾ 수는 1989년 1.81명에서 2019년 1.68명으로 0.13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89년 41.7%에서 2019년 21.7%로 20.0%p 감소하였다.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부부 및미혼 가구의 수는 1989년 10,742천 가구에서 2019년 8,528천 가구로 2,214천 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4〉 아동이 있는 가구의 구성 형태 및 평균 아동 수 추이

구분	아동이 있는 가구	전체 가구 중 비율 (%)	평균 이동 수 (명)	부부 및 미혼 가구	한부모 (편모·편부) 가구	3세대 동거 가구	기타 가구
1989년	16,426	41.7	1.81	10,742 (65.4%)	677 (4.1%)	4,415 (26.9%)	592 (3.6%)
2019년	11,221	21.7	1.68	8,528 (76.0%)	724 (6.5%)	1,488 (13.3%)	480 (4.3%)

주: 1) 단위는 1.000가구임.

자료: 社会保障入門編集委員会(2021)『社会保障入門2021』(p.182)을 참고로 국중호(2021)에서 작성한 내용을 재인용 (원자료는 厚生労働省「2019年国民生活基礎調査」).

일본의 보육원 수는 2005년 22,570개에서 2020년 37,652개로 15,082개 증가 하였으며, 보육원 이용 아동 수는 2005년 1,994천명에서 2020년 2,737천명으로 743천명 증가하였다. 보육원 이용률은 2005년 28.9%에서 2020년 47.7%로 18.8%p 증가한 반면, 보육원 대기 아동 수는 2005년 23천명에서 2020년 12천명으로 11천명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이후 보육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2015년부터 특정지역형 보육사업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형 지방자치단체 인정 어린이동산, 유치원·보육원 연계형 인정 어린이동산 등 다양한 보육시

²⁾ 기타 가구는 '단신 가구'를 포함함.

¹⁵⁾ 일본의 아동수당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18세가 되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본 후생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도 18세 미만의 미혼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국중호, 2021: 10).

설을 확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국중호, 2021: 12). 또한 일본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의 무상화(無償化)를 실시하고 2019년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로부담하였다(국중호, 2021:12-13).

〈표 Ⅱ-4-5〉 보육원 이용 아동 현황

단위: 개소, 천명, %

구분	보육원 수	보육원 이용 아동 수	보육원 대기 아동 수	이용률
2005	22,570	1,994	23	28.9
2015	28,783	2,159	23	37.9
2020	37,652	2,737	12	47.7

주: 이용률은 '보육원 이용 아동수'를 '취학전 아동수'로 나는 값임.

자료: 厚生労働省 (各年度、4月1日)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을 참고로 국중호(2021)에서 작성한 내용을 재인용.

2) 아동 보육 관련 재원분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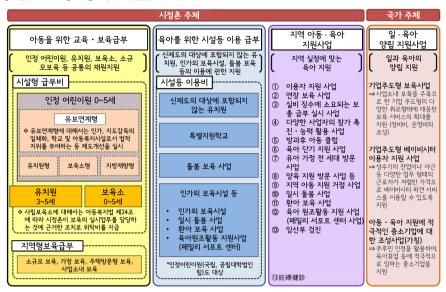
가) 아동·육아 지원신제도

일본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아동 보육과 관련된 3개 법률16에 근거하여 '아동·육아 지원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육아 지원신제도는 아동의 교육과 보육, 지역 육아 지원의 양적·질적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김지윤, 202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정촌은 지역 육아 가정의 현실과 육아 지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여 시정촌 아동·육아 지원 사업 계획(5개년)을 수립하며, 도도부현과 중앙정부는 시정촌의 사업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지현, 2021: 22).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재원은 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1기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김지현, 2021: 22). 그리고 일·육아 양립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업 내 보육 환경 정비와 베이비 시터 파견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김지유, 2021: 22).

¹⁶⁾ 아동·육아 지원법(2012년 법률 제65호),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법률 제66호), 아동·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정비하는 법률(2012년 법률 제67호) 등 3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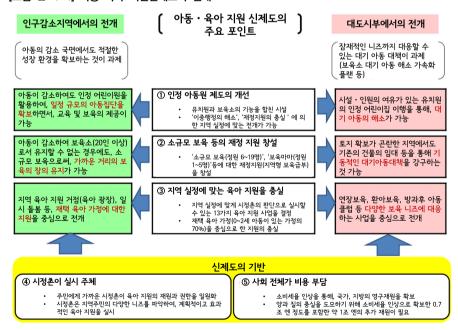
^{17)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2% 증가분 중 매년 7,000억엔 정도가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지현, 2021: 22).

[그림 II-4-3]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개요



자료: 일본 내각부 아동·육아 본부(2021a), 김지윤(2021)에서 재인용.

[그림 II-4-4]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전개



자료: 일본 내각부 아동·육아 본부(2021a), 김지윤(2021)에서 재인용.

2021년 기준으로 소비세 증가분은 총 13.4조엔이며, 이 중 3.89조엔이 사회보장의 충실과 관련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실시에 6,526억엔 지출되고 있으며, 국비가 2,985억엔으로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회적 양육의 충실에 474억엔, 新육아안심플랜의 실시에 223억엔, 육아휴직 중의 경제적 지원의 강화에 17억엔 등을 지출하고 있다.

〈표 II-4-6〉 소비세 증가분 및 '사회보장의 충실' 중 아동·육아 지원 예산(2021년 기준)

	2021년도 소비세 증가분 내역		총 13.4조엔		
■ 기초연금국고 분	H담 비율 1/2			3.4조엔	
- 의료·개호 서년 - 의료·개호 보험	의 무상화 상화 원신제도의 착실한 실시 비스의 제공체제 개혁 범제도의 개혁 반성 특정 질병의 대응	3.89조⁴			
	따른 사회보장 4 경비 증가 보수, 연금, 육아 지원 등에 대한 물가 상승에 따른	€ 0.632			
■ 후대에의 부담 - 고령화에 따른 기존의 사회보	자연증가를 포함한 안정 재원이 확보하기 어려운		5.1조엔		
'사회보장	당의 충실'중 아동·육아 지원 관련 예산	총예산	국비	지방비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의 착실한 실시	6,526억엔	2,985억엔	3,541억엔	
OLE OOL TIO	사회적 양육의 충실	474억엔	237억엔	237억엔	
아동·육아 지원	육아휴직 중의 경제적 지원의 강화	17억엔	10억엔	6억엔	
	新육아안심플랜의 실시	223억엔	111억엔	112억엔	

자료: 일본 내각부 아동·육아 본부(2021b), 김지윤(2021)에서 재인용.

아동·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시설형 급부의 경우 사립과 공립에 대한 재원분담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사립시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도도부현과 시정촌도 지방비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시정촌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형 보육 급부와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의 경우에는 사립과 공립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시설형 급부(사립)와 동일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도도부현과 시정촌도 지방비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아동·육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33.3%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아동·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재원분담 비율

구	분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
시서청 그ㅂ	사립	1/21) 2)	1/41) 2)	1/41) 2)
시설형 급부	공립	_	_	10/10
지역형 보육 급	급부(공사 공통)	1/21)	1/41)	1/41)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		1/2	1/4	1/4
지역 아동・육() 지원 사업 ³⁾	1/3	1/3	1/3

주: 1) 0~2세 아동수당은 사업주 거출금의 충당 비율(2019년도 10.4%)을 공제한 후의 부담 비율.

자료: 내각부 아동·육아 본부(2021), 김지윤(2021)에서 재인용.

나) 아동수당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금전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지급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국중호, 2021: 13). 아동수당법은 아동·육아지원법 제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 및 육아 지원을 위한 법률로,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는 기본적 인식 하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음 사회의 책임을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중호, 2021: 13). 일본의 아동수당은 출생 후부터 중학교 졸업까지(15세 생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일본의 아동수당(자녀양육수당)은 일정 금액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제한하고, 아동 수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국중호, 2021: 14).

^{2) 1}호 급부에 소요되는 국가, 지방의 부담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 있음.

³⁾ 임산부 건강 검진, 연장 보육 사업(공립분)만 시정촌 10/10.

〈표 Ⅱ-4-8〉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액	⟨₩	Π-4-8\	익보이	아동수당	지근앤
------------------------	----	--------	-----	------	-----

구분	아동수당 금액(일인당 월 지급액)
3세 미만	일률 15,000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10,000엔(셋째 이후* 자녀는 15,000엔)
	일률 10,000엔

주: *'셋째 이후 자녀라 함은, 고교 졸업까지(18세의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양육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 세 번째 이후를 말한다.

자료: 內閣府(2020)「児童手当制度のご案内」를 참고로 국중호(2021)에서 작성한 내용을 재인용.

아동수당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도도부현(광역), 시정촌(기초)이 부담하며,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국중호, 2021: 14). 과거에는 3세 미만의 경우 종업원분 아동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70%이고, 나머지 30%는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1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비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국중호, 2021: 15).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세부적인 아동수당 재원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국중호, 2021).

〈표 Ⅱ-4-9〉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분담 비율

구분	3세 미만	3세 이상 중학교 수료 전
피고용자분	사업주 21/45, 중앙정부 16/45, 지방* 8/45	중앙정부 2/3, 지방* 1/3
비(非)피고용자분	중앙정부 2/3, 지방 1/3	중앙정부 2/3, 지방 1/3
 특례급여분	중앙정부 2/3, 지방 1/3	중앙정부 2/3, 지방 1/3
공무원분	소속 관청 전액 부담	소속 관청 전액 부담

주: *지방의 경우는 지방 부담을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시정촌)가 절반씩 부담한다. 자료: 社会保障入門編集委員会(2021)『社会保障入門』中央法規, p.84를 참조하여 국중호(2021)에서 작성한 내용을 재인용.

아동수당은 2008년 11,270억엔에서 2018년 29,250억엔으로 17,980억엔 증가하였다. 일본 아동수당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국비의 부담액 및 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에서 국비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게 된 주된 배경은 민주당 정권이 아동수당 확충을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며 국고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며, 자민당 정권 시기의 아동수당 재원분담 구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 정권 때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국고 부담이 약간 줄어드는 대신 사업주 갹출과 지방비 부담(기타 공비)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다(국중호, 2021: 16).

〈표 Ⅱ-4-10〉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분담 현황

단위: 10억엔

구분	사업주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008	299	242	553	33	1,127
2009	291	247	558	39	1,129
2012	435	1,293	723	42	2,493
2013	438	1,272	742	31	2,483
2018	717	1,242	821	144	2,925

주: * 통계표에서는 기타공비(公費)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비로 '지방비 부담'으로 표기함.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平成20·21年度 社会保障給付費」(제9표), 및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6, 2020) 『社会保障費用統計』「集計表 2 社会保障給付費収支表」를 이용하여 국중호(2021)에서 작성한 내용을 재인용.

다) 도도부현 사례: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을 기준으로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재원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금인 시설형 급부비는 중앙-광 역-기초가 1/2, 1/4, 1/4의 비율로 부담하고, 방과후 아동교실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광역-기초가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근석, 2020: 118). 한편 다 자녀세대 보육료 경감 사업이나 다자녀세대 응원 쿠폰사업 등과 같은 특수한 사업 은 광역과 기초가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근석, 2020: 118).

〈표 Ⅱ-4-11〉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의 재원분담 비율

					분담	비율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소자 정책과	인가 외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비 보조금 (아동을 위한 교육, 보육급부비 보조금, 보육대책종합지원	아동·육아 지원의 새로운 제도에 따라, 인가보육소 등을 목표로 하는 인가 외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에 필요 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17,839	1/2	1/4	1/4	
학사과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유치원의 입학료·보육료를 감면하는 사 업(취원장려비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1/3		2/3	
소자 정책과	시설형 급부비 (유치원 등 보조금)	시정촌이 교육표준시간 인정을 받은 아동을 시설형 급부비 를 받은 유치원등에 입학시키는 경우, 사립유치원 등에 한 하여 소요 경비를 보조한다.	1,223,687	1/2	1/4	1/4	
소자 정책과	대기아동대책 활용사업비 (유치원보육실촉진사업)	유치원을 11시간 이상 운영하여, 통상 교육시간 전후나, 장기 휴업기간 중 등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돌볼 때에는 운영비를 보조한다(대상시설 수 7개소).	23,232	1/2	1/4	1/4	-

				분담 비율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건강 장수과	자립지원의료 (육성의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방치하면 장애로 남을 것으로 인정된 질환이 있는 아동 중, 확실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자에 대해서 의료급부. 급부는 시정촌이 행해, 현은그 비용의 1/4을 부담한다.	73,509	1/2	1/4	1/4	-	
재무과		시정촌이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아동, 생도의 보호자에 대하여 행하는 취학원조사업(학용품비 등) 중 보호필요 아동, 생도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보 조한다.	-	1/2	-	1/2	-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패밀리서포트 센터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위탁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하는 패밀리서 포트 센터사업 및 환우아동 긴급대응 강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98,210	1/3	1/3	1/3	-	
아동 안전과	보호필요 아동 대책 지원협의회지원사업 (아동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 기능강화사업)	시정촌이 설치하는 보호필요 아동 대상지역협의회의 체제 강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8,184	1/3	1/3	1/3	-	
건강 장수과	유이가정 전세대방문·보육지원 방문사업비보조	유아가 있는 전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정보제공을 행하는 유아가정 전세대방문사업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 여, 육아·가정지원 등을 행하는 보육지원 방문사업을 행하 는 시정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113,059	1/3	1/3	1/3	-	
생애 학습 추진과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보조금	방과 후 등에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 만들기를 추진 함과 동시에, 토요일에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한 학습 등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는 시도, 학력향상을 과제로 안 고 있는 중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 사업, 토요일의 교육지원사업 및 중학생 학력 업 교실사업 을 실시하는 시정촌(정령지정도시 및 중핵시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인재가 확보되 지 않아, 실시일수, 교실수를 확대할 수 없는 시정촌에 대 한 어드바이저 배치에 보조부담비율은 국가 1/3, 현 2/3).	318,085	1/3	1/3	1/3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방과 후 아동 전육성사업비 보조금	취업 노동 등으로 인해 주간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 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클럽의 운영(위탁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 하여 경비를 보조한다.	4,770,656	1/3	1/3 (1/3)	1/3 (1/3)		
소자 정책과	보육사 연수 등 사업 (보 육보조자 고용강화사업)	보육소 등에 있어 보육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사의 고용 관리개선과 노동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보육보조사업자에 대하 여 보육사자격을 갖지 않는 단시간 근무의 보육보조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418,635	3/4	1/8	1/8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아동·육아지원 정비교부금	취업 노동 등으로 인해 주간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 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 클럽 의 신설정비, 기존설비의 개수정비, 필요한 설비의 정비와 동시에 장애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수를 행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379,908	1/3 (2/9)	1/3 (2/9)	1/3 (2/9)	(1/3)	
소자 정책과	보육소 지역육아지원사업비 (아동·육아지원교부금, 피해자건강·생활지 원종합교부금, 보육대상 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육아 지원 및 보육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환우아동 보육사업, 연장보육촉진사업, 일시보육사업, 보 육료경감면제 지원사업, 실비징수 등에 따른 보족급부사 업, 다양한 사업자의 신규참여·능력활용사업 및 의료적 케 어아동보육지원모델사업에 대하여 보조한다.	1,511,587	1/3 10/10 1/2	1/3	1/3 1/4		
재무과	학교시설환경 개선교부금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시설(園舍·校舍·체육관등)의 개축, 보강, 장수명화개량, 대규모 개조, 옥외 교육환경, 나무교	-	1/3~ 2/3		1/3~ 2/3	-	

				분담 비율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육환경, 지역·학교연계시설, 방재기능강화, 태양열발전 등 의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부한다. ※ 기본적인 부담비율은 1/3이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이 1/2, 2/3 ※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						
재무과	피해아동, 생도 취학 등 지원 사업비 보조금	동일본대지진 혹은 그 외의 대규모재해로 인해 취학 등이 곤란해진 유아아동생도의 보호자에 대하여 시정촌이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를 보 조한다.	26,463	2/3~ 10/10		0~1/3	-	
장애인 지원과	재택 중증심신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하여 (respite care 7) 사업 (① 쇼트스테이 촉진사업비, ② 데이서비스 촉진사업비)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중증심신장애아동 등을 자택에서 간호하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아동에게 쇼트스테이 및 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을 지원한다. ① 쇼트스테이 촉진사업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재택의 중 중심신장애아동 등에게 쇼트스테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형 단기입소시설에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데이서비스 촉진사업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재택의 중 중심신장애아동에게 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간호스테이션 등에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2,815		1/2	1/2		
장애인 지원과	데이서비스 제공 촉진사업	방과 후 등 데이서비스 등의 사업소에, 의료적 케어가 필 요한 장애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병상 설치 등의 보조를 행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 다.	7,500		1/2	1/2	-	
소자 정책과	안심·건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 보조금	사립 인가보육소등에 저연령 유아나 장애아동,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의 수용이나, 1세 아동 보육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사를 증원함에 따른 경비를 보조한다(보조율: 현 1/2. 시정촌 1/2).	1,355,275		1/2	1/2	-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편모가정 등 대책비 보조금 (편부모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사업)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편부모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시업(편 부모가정에 가정생활지원 직원을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를 지원한다)에 대해,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180	1/2	1/4	1/4		
소자 정책과	가정보육실 등 운영사업비 보조금	양질의 인가외 보육시설로, 시정촌의 지정을 받은 가정보 육실(기업등이 설치하는 기업 내 보육시설로 종업원의 아 동에 지역아동을 수용하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0~2세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장시간 보육추 진비, 장애아동 보육추진비)를 보조한다(보조율 현 1/2, 시정촌 1/2).	20,220	·	1/2	1/2	-	
소자 정책과	다자녀세대 보육료 경감 사업	다자녀세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육소 등에 입소하는 셋째 이후의 아동(만 3세 미만)의 보육료를 보조한다. ※시정촌이 부담을 하지 않고, 현만으로 사업실시도 가능 하다. 보조율 1/2(시정촌 부담은 필수가 아니다)	1,067,643		1/2	1/2	·	
소자 정책과	다자녀세대 응원 쿠폰사업	시정촌이 셋째 아동 이후를 대상으로 추가 시행하는 상품 권, 축하금, 쿠폰 등의 급부사업에 대하여 조성한다.	35,000		1/2	1/2		
소자 정책과	경도·중급도난청아동 보청기구입 등 조성사업	경도·중급도 난청아동의 언어습득과 교육 등에 있어 건전 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구입 비용 등의 조성을	3,833		1/3	1/3		

				분담 비율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행하는 시정촌(사이타마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특별지원 학교방과후 아동대책사업비 보조금	장애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원학교에 통학하는 아동으로 조직된 특별지원학교 방과 후 아동클럽 의 운영(위탁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한다.	3,948		1/3	2/3	
국보 유아의로비 지급사업		보호자의 경험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보건 향상과 복 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취학 전 유아에 관 한 각종 의료보험의 일부를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해 당 경비의 1/2를 보조한다.		-	1/2	1/2	-
의료과	보조금	재정력지수 1을 넘는 시정촌 (정령시는 보조대상 외)	2,713,044		5/12	7/12	
		재정력지수 1.1 이상의 시정촌 (정령시는 보조대상 외)			1/3	2/3	

자료: 사이타마현(2020), 시정촌에 대한 지원제도; 홍근석(2020)에서 재인용.

5. 소결

첫째, 양육의 주된 주체인 부모 등 수혜자를 우선으로 하는 양육지원정책으로는 현금급여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있고, 서비스지원 사업으로는 만 0-5 세 보육료지원 사업,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고, 시간지원 재정 사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대표적이다.

둘째, 출생아 수 감소로 영유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도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의 공급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다소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정원충족률 또한 감소하고 있다. 유치원은 출생아 감소와함께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이라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유치원 수 감소가두드러졌다. 반면, 영유아에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 기조로 인해 국공립 기관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출생이후 초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부모 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실정이며 만2세부터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아가

더 많고, 만 4,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더 높아 상 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육기능이 강한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가 더 두드러짐을 확 인할 수 있다.

넷째, 양육지원정책 관련 재정은 16대 국가재정 분야 중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포함되며,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재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된다. 또한 육아지원정책 사업 및 예산에 대비하여 본 연구의 재정추계 대상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22.8%, 아동수당은 14.8%, 일·가정양립지원은 12.6%,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5.1%로 전체 예산중 80.8%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영유아수의 감소와 함께 보육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 당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보육사업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분담비율 만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유아교육재정은 경직성 인건비나 교육행정일반 등의 재정자료는 유아교육 분야만 별도로 분리되어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교육재정중 유아교육진흥 사업과 누리과정지원 사업만이 별도로 산출이 가능하며,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어 편성되는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사업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덟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 텍사주의 보육관련 재정은 대부분 연방기금으로 보육예산의 82% 수준이었고, 지방과 민간 부담이 18% 정도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경우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생후 12개월 영아를 보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인 부모교부금은 연방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생계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생계교부금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60%를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인정어린이집 등 시설형 급부의 경우 사립은 중앙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고, 지자체 중 도도부현과 시정촌도 각각 50% 부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이나 방과후아동클럽 등 지역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앙,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 재원부담에 있어 피고용자분으로 고용주(기업)도 분담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양육을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부담 배분 문제만이 아니라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국중호, 2021: 21).

양육지원정책 재정 추계

- 01 재정추계 기본설계
- 02 영유아수 장래인구추계
- 03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 04 3-5세 누리과정비
- 05 양육수당 추계
- 06 아동수당 추계
- 07 소결

Ⅲ. 양육지원정책 재정 추계

1. 재정추계 기본설계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를 위해 양육지원정책 재정규모가 큰 보육료, 누리과정비.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정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우선 추정한 뒤,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한다. 수혜대상자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영유아 인구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양육지원 재정사업별 대상아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각 사업별 이용 및 수급자 수를 기초로 이용률과 수혜율을 산출하여 현재기준 급여단가를 기준으로 재정을 추계한다. 추계대상은 0-5세를 기본으로 하며, 추계기간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2021-2026년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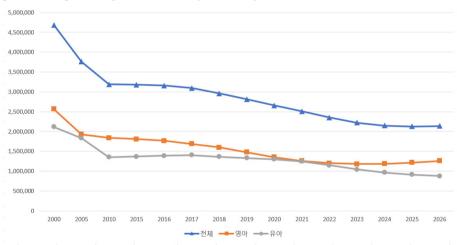
[그림 Ⅲ-1-1] 재정추계 기본설계



2. 영유아수 장래인구추계

가. 영유아수 장래인구추계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위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자료의 0~6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당분간 영유아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까지 0세 영아수가 288,179명까지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0-6세 영유아수는 2000년에 4,685,116명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3백만 명 아래로 감소하여 2026년에는 2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Ⅲ-2-1] 연도별 영유아수 추계 추이(2000-2026)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BPB001&conn_path=13 에서 2021. 6. 1. 인출.

〈표 Ⅲ-2-1〉영유아수 장래추계인구

西0				. ~~			ı		
: 62	2026	2,138,965	333,772	320,738	308,660	297,174	286,331	288,416	303,874
	2025	2,128,175	322,172	309,010	297,318	286,542	288,730	304,212	320,191
	2024	,150,594	310,361	297,627	286,670	288,956	304,560	320,562	341,858
	2023	,223,719	298,899	286,957	289,101	304,818	320,951	342,282	380,711
	2022	2,353,738	288,179	289,409	305,000	321,251	342,737	381,213	425,949
	2021	2,508,606	290,664	305,360	321,478	343,103	381,761	426,515	439,725
	2020	2,653,854	306,708	321,904	343,403	382,221	427,136	440,309	432,173
	2019	2,811,163	323,361	343,929	382,625	427,670	440,956	432,784	459,838
	2018	2,960,918	345,555	383,299	428,164	441,520	433,474	460,501	468,405
	2017	3,096,823	385,224	428,719	441,945	434,079	461,252	469,166	476,438
	2016	3,160,288	429,094	442,414	435,067	462,760	470,775	478,946	441,232
	2015	3,179,803	441,685	434,866	462,829	471,114	479,603	442,001	447,705
	2010	3,189,352	446,515	451,353	483,977	455,576	434,382	442,457	475,092
	2005	3,760,332	449,549	480,720	480,372	515,879	597,768	617,336	618,708
	2000	4,685,116 3,760,332 3,189,352 3,179,803 3,160,288 3,096,823 2,960,918 2,811,163 2,653,854 2,508,606 2,353,738 2,223,719 2,150,594 2,128,175 2,138,965	622,098	626,100	643,767	673,556	694,262	709,396	715,937
	관	极	OMI	1세	2세	34	44	 	W

주: 1) 2000년~2017년까지는 실제인구이며, 이후는 추계인구임. 2) 중위가정(기본추계)으로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이며,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BPB001&conn_path=13 에서 2021. 6. 1. 인출.

3.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가. 0-2세 보육료 추계 기본모형

0-2세 보육료 추계는 해당연도의 연령별 1인당 보육료 지원액에 연령별 보육료 지원대상아수를 곱하여 추계하는 것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추계연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현재의 연령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유지되고, 어린이집 이용률은 연령별 영유아수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로 산출하여, 최근 3개년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0~2세 보육료는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는데, 기관보육료는 인건비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이고,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재정추계시 기관보육료와 부모보육료를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FA_{k \cdot t} = \sum_{a=0}^{2} B_{a \cdot k \cdot t} N_{a \cdot k \cdot t} \cdot 12$$

FC = 0-2세 보육료 재정추계액

 $B_{a,b,t}$ = 연령별, 1인당 보육료 지원액

 N_{a-k+1} = 연령별, 연도별 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k =보육료 유형(기관보육료=1. 부모보육료=2)

a = 보육연령(0-2세)

t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나. 0-2세 어린이집 이용아 수 추정

0-2세 주민등록인구 기준 대비 어린이집 3년평균 이용률은 61.9%였고, 0세는 18.5%, 1세는 78.0%, 2세는 89.1%로 나타나 1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0-2세 어린이집 이용 영아수는 2015년 864,596명에서 2020년 700,890 명으로 18.9% 감소하였다. 동 기간 동안 0세 이용아수는 15.1%, 1세는 14.6%, 2세는 23.4% 감소하였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0-2세 장애아나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수 현황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0-2세의 경우 장애아보육료 대상아 비율이 매우 낮고(2020년의 경우 1.0%)(보건복지부, 2021c), 다문화보육료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여(보건복지부, 2021a: 364),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용 아에 포함하여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표 Ⅲ-3-1〉 0-2세 어린이집 이용아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연령		0-2세 어린이집 이용아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2018-2020)		
0세	137,117	141,013	139,654	126,793	126,216	116,468	18.5		
1세	308,227	318,245	330,868	319,016	294,242	263,128	78.0		
2세	419,252	386,726	391,715	397,955	376,041	321,294	89.1		
계	864,596	845,984	862,237	843,764	796,499	700,890	61.9		

주: 이용륰은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아수 비율인

-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94.
 -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98.
 - 3)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99.
- 4)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 100.
- 5)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100. 6)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 103.
- 7)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ld=DT_1B04006&conn_path=I3 에서 2021. 4. 28. 인출.

기관보육료는 정부지워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보육시설 중 만0~2 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 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21a).

기관보육료 지원대상 수를 보면 0-2세 전체 영아 수 대비 36.0%였고. 0세는 16.6%, 1세는 60.9%, 2세는 66.3%였다. 본 연구에서 직접 분석한 결과 부모보육 료 대상인 어린이집 이용아수 대비 기관보육료 대상아 비율은 2015년 83.7%에서 2019년 77.8%, 2020년 74.6%로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2〉0-2세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연령		0-2세 기관보육료 이용아 수							
긴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2018-2020)		
0세	121,533	124,055	121,810	110,227	106,366	94,395	16.6		
1세	250,672	253,510	257,729	255,090	226,120	193,159	60.9		
2세	324,321	293,588	289,210	304,682	278,475	228,028	66.3		
장애아	215	208	183	151	96	101	0.008		
계	696,741	671,361	668,932	670,150	611,057	515,683	36.0		

주: 이용률은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기관보육료 대상아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0-2세 어린이집 평균이용률이 향후 고정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이용대상아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2024년까지 출생아 수 감소와함께 지속적으로 이용률도 감소한 후 202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6년 614,431명의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부모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3-3〉 0-2세 어린이집 대상아수 추정(2021-2026년)

단위: 명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세	109,294	105,951	107,452	111,492	115,731	119,992
1세	244,543	232,061	219,976	218,100	226,149	234,737
2세	299,958	280,847	266,498	252,627	250,475	259,702
계	653,795	618,860	593,926	582,218	592,354	614,431

기관보육료 대상아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총 522,320명에서 2026년 493,75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3-4〉0-2세 기관보육료 대상아수 추정(2021-2026년)

단위: 명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세	98,906	95,847	97,219	100,892	104,741	108,612
1세	195,663	185,634	175,957	174,477	180,958	187,861
2세	227,647	213,149	202,245	191,721	190,119	197,174
	104	99	97	97	100	104
계	522,320	494,728	475,518	467,187	475,918	493,750

다.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0-2세 어린이집 이용아수 추정 결과와 현재 0-2세 보육료 지급단가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연령별 보육료 재정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보육료를 보면, 2021년도 현재 0세는 484,000원, 1세는 426,000원, 2세는 353,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a: 349).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부모보육료 지출총액은 2021년 3조 1,555억원에서 2026년 2조 9,97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기관보육료 1인당 지원기준단가는 2021년 현재 0세는 월 528,000원, 1세는 287,000원, 2세는 194,000원, 장애아는 587,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a: 416). 기관보육료 재정추계 결과 2021년 1조 8,312억원 수준에서 2024년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26년 1조 7,949억원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0-2세 보육료 재정추계(현수준 유지)

단위: 억원

연형	 경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세	6,348	6,154	6,241	6,475	6,722	6,969
부모보육료	1세	12,501	11,863	11,245	11,149	11,561	12,000
于工工书五	2세	12,706	11,897	11,289	10,701	10,610	11,001
	계	31,555	29,913	28,775	28,326	28,892	29,970
	0세	6,267	6,073	6,160	6,392	6,636	6,882
	1세	6,739	6,393	6,060	6,009	6,232	6,470
기관보육료	2세	5,300	4,962	4,708	4,463	4,426	4,590
	생생	7.2	6.9	6.7	6.8	6.9	7.2
	계	18,312	17,435	16,935	16,872	17,301	17,949
합	합계		47,348	45,710	45,198	46,193	47,919

라. 0-2세 보육료 재정추계 시나리오

1) 시나리오1: 0-2세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0-2세 보육료는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최근 3년 통계청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2017-2019년)을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보았다. 3개년 평균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제외하였다. 기준으로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임금상승률을 설정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임금상 승률을 지원단가 증가율로 반영하였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17-2019년 3개년 소비자물가등락률 평균을 산출한 결과 1.3%,18)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상승률 3개년 평균은 4.0%19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을 통해 시간

¹⁸⁾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J20041&vw_cd=MT_ZTITLE&list_id=P2_6&seqNo=&lang_mode=ko&language=k or&obj var id=&tim id=&conn path=MT ZTITLE 에서 2021. 6. 10. 인출.

당명목임금증감률 3개년 평균을 산출한 결과 5.6%, 경제성장률 3개년 평균은 2.7%로 나타났다.

0-2세 보육료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4조 9,867억원에서 2026년 5조 8,291억원(부모보육료 3조 6,473억원, 기관보육료 2조 1,818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지급단 가를 인상에 따라 2026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누적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2조 9,424억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0-2세 보육료 재정추계(시나리오1)

단위: 억원

연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세	6,348	6,395	6,744	7,278	7,860	8,481	43,106
부모보육료	1세	12,501	12,336	12,169	12,536	13,515	14,591	77,648
于土土书址	2세	12,706	12,369	12,216	12,035	12,414	13,401	75,141
	계	31,555	31,100	31,129	31,850	33,789	36,473	195,896
	0세	6,267	6,314	6,661	7,192	7,768	8,380	42,582
	1세	6,739	6,638	6,546	6,742	7,275	7,845	41,785
기관보육료	2세	5,300	5,167	5,097	5,015	5,179	5,584	31,342
	장애아	7.2	7.1	7.3	7.6	8.1	8.7	46
	계	18,312	18,127	18,311	18,956	20,229	21,818	115,753
	합계		49,227	49,440	50,806	54,018	58,291	311,649
임금상승률 적용 인상 (확대후-현행)			1,879	3,730	5,608	7,825	10,372	29,414

4. 3-5세 누리과정비

가. 3-5세 누리과정비 추계 기본모형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¹⁹⁾ KOSIS 국가통계포털,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5006&conn_path=13 에서 2021. 6. 10. 인출.

²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에서 2021. 6. 10. 인출.

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의 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기본 모형으로 한다. 유아학비/보육료 추계는 해당연도의 연령별 1인당 유아학비/보육 료 지원액에 연령별 지원대상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현재의 연령별 월 유아학비/보육료 단가가 유지되고, 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연령별 영유아수 인구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원아수로 산출하여, 최근 3개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방과후과정비 이용률과 원아수 산출은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기초하여 유아학비/보육료 단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추계연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FA_{t} = \sum_{k=1}^{3} \sum_{n=3}^{5} B_{k \cdot a \cdot t} N_{ak \cdot t} \cdot 12 + \sum_{k=1}^{3} A C B_{k \cdot t} A C N_{k \cdot t} \cdot 12$$

FC = 3-5세 누리과정비 추계액

 $B_{a,t}$ = 연령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

 $N_{a,t} =$ 연령별, 연도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대상아 수

ACB... = 기관유형별 1인당 방과후과정 지원금

ACN... = 기관유형별 방과후과정 지원대상아 수

k =기관유형(국공립유치원=1, 사립유치원=2, 어린이집=3)

a = 9 (만3-5세)

t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나.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아 수 추정

3-5세 주민등록인구 수 대비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3년평균 이용률은 90.8% 였고, 유치원은 48.1%(국공립 13.2%, 사립 34.9%)), 어린이집은 42.7%였다. 연령별로 보면 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지만 4세부터 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아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연령			3-5사	∥ 유치원/어	린이집 이용여	아 수		유치원	전체 유아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시년 이용률 (3년평균)	대비 기관 이용률 (3년 평균)	
		3세	26,550	27,862	27,574	29,163	32,447	32,912	20.0	7.3
	국공립	4세	55,803	57,620	59,043	56,202	59,627	61,211	26.2	13.4
	400	5세	78,688	84,602	85,482	86,760	85,066	84,635	33.4	18.7
유		소계	161,041	170,084	172,099	172,125	177,140	178,758	26.5	13.2
치		3세	145,564	147,045	133,598	134,722	126,785	159,447	80.0	32.6
원		4세	193,394	195,456	197,318	175,642	165,123	117,287	73.8	34.6
	사립	5세	181,856	190,921	190,815	193,070	164,472	156,761	66.6	37.4
		소계	520,814	533,422	521,731	503,434	456,380	433,495	73.5	34.9
	계		681,855	703,506	693,830	675,559	633,520	612,253	100.0	48.1
어	어 3/		253,294	263,652	236,665	233,274	240,429	214,853	_	55.0
린	4,	4	180,249	180,255	188,540	169,328	173,715	174,394	-	39.8
0	5,4	4	147,278	153,893	156,093	163,314	148,832	149,201	-	33.4
집	겨		580,821	597,800	581,298	565,916	562,976	538,448	-	42.7

주: 이용률은 2018-2020년 3개년 평균임.

만3-5세 누리과정 대상이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3년 평균 이용률이 향후에 도 고정된다고 보면, 출생이수 감소에 따라 대상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 년 백만명 아래 떨어지고 2026년에는 789,953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4-2〉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아수 추정

단위: 명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세	27,787	24,943	23,342	22,144	20,980	20,792
	국공립	4세	56,715	50,668	45,478	42,534	40,328	38,208
	구드급	5세	83,157	80,598	72,038	64,719	60,559	57,441
유		소계	167,659	156,208	140,858	129,397	121,868	116,441
치	새립	3세	110,955	99,595	93,203	88,421	83,774	83,024
원		4세	159,997	142,939	128,298	119,991	113,769	107,787
		5세	165,929	160,822	143,743	129,139	120,838	114,616
		소계	436,881	403,356	365,244	337,551	318,381	305,426
	계		604,540	559,565	506,102	466,948	440,249	421,867
	3.	세	202,023	181,557	170,119	161,485	153,155	151,909
어린이	4세		165,647	148,197	133,315	125,101	118,885	112,807
집	5.	세	149,004	144,271	129,007	115,951	108,792	103,369
	7	1	516,674	474,025	432,441	402,537	380,831	368,086
	전체		1,121,214	1,033,590	938,543	869,485	821,080	789,953

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한 것으로 방과후과정 이용률은 유치원은 교육부 2021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서 방과후과정 예산 산출시 사용된 이용자 현황에 기초하여 2018-2020년 3개년 평균을 계산하여, 국공립유치원은 79.3%, 사립유치원은 65.7%, 어린이집은 100.0%로 산출하였다.

〈표 Ⅲ-4-3〉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이용률

단위: %

연	 령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 평균
유치원	국공립	79.2	79.1	79.6	79.3
ㅠ시건	사립	64.6	64.8	67.7	65.7
어린(이집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교육부(2020, 2021).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다. 3-5세 누리과정비 재정추계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학비와 보육료 추계결과,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재 지원단가인 26만원과 공립유치원 지원단가 8만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하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출 총액은 2021년 3조 1,360억원에서 2026년 2조 2,131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유치원 유아학비의 경우 2026년 1조 647억원으로 추계되었고,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118억원, 사립유치원은 9,52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2026년 1조 1,484억원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의 경우 2021년 9,016억원에서 2026년 6,356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은 2026년 699억원, 사립유치원은 2,566억원, 어린이집은 3,092억원 산출되었다.

만3-5세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지원비를 합한 전체 누리과정 재정규모는 현 지원단가를 유지할 경우, 2021년 4조 376억원에서, 2026년 2조 8,487억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Ⅲ-4-4〉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현수준 유지)

단위: 억원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세	267	239	224	213	201	200
		그고리	4세	544	486	437	408	387	367
		국공립	5세	798	774	692	621	581	551
	유		소계	1,610	1,500	1,352	1,242	1,170	1,118
	치		3세	3,462	3,107	2,908	2,759	2,614	2,590
	원	새립	4세	4,992	4,460	4,003	3,744	3,550	3,363
·바헥애		시급	5세	5,177	5,018	4,485	4,029	3,770	3,576
보육료			소계	13,631	12,585	11,396	10,532	9,933	9,529
		7	4	15,240	14,084	12,748	11,774	11,103	10,647
	어 린	3.	세	6,303	5,665	5,308	5,038	4,778	4,740
		4. 5.	세	5,168	4,624	4,159	3,903	3,709	3,520
	0		세	4,649	4,501	4,025	3,618	3,394	3,225
	집	소계		16,120	14,790	13,492	12,559	11,882	11,484
		계		31,360	28,874	26,240	24,333	22,985	22,131
	0=1	국공	응립	1,006	937	845	776	731	699
	유치 원	사	립	3,670	3,388	3,068	2,835	2,674	2,566
방과후과정		소	계	4,676	4,325	3,913	3,612	3,406	3,264
		어린이[<u> </u>	4,340	3,982	3,633	3,381	3,199	3,092
		계		9,016	8,307	7,546	6,993	6,605	6,356
	합 7	계		40,376	37,181	33,786	31,326	29,590	28,487

라.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 시나리오

1) 시나리오1: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2017년 국회 교문위의 예산 부대의견으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단가를 당초 계획대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교육부, 2020). 또한 2021년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간 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교육부, 2021).

이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지원 단가 인상 시나리오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를 2023 년까지 매년 2만원씩 인상하여 3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4년부터는 임금상승률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공립유치원과 방과후과정비는 2021년 지원단가에 2022년부터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Ⅲ-4-5〉 누리과정 재정추계 시나리오1

	누리과정비							
구분	유아학	바기둥기저						
	국공립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지원단가 인상 기준	-기준: 현 기준에 임금상 승률 반영 -적용연도: 2022~2026년	-기준: 정액, 임금상승률 반영 -적용연도: 2022~2023년(정액 2만원), 2024~2026년(임금상승률)	-현 지원단가 유지					
현 기준 (2021년)	8만원	26만원	국공립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를 매년 2만원씩 인상하여 30만원이 되는 2023년의 전체 유아학비/보육료 재정규모는 3조 1,360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이후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매년 12,000~13,000원 수준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할 경우 2026년 2조 8,592억원으로 재정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가 인상시 전체 누리과정 재정규모는 2021년 4조 376억원에서 2026년 3조 4,948억 규모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²¹⁾

〈표 Ⅲ-4-6〉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시나리오1)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세	267	248	241	236	234	242
		국공립	4세	544	505	469	454	450	445
	유 치 원	40日	5세	798	803	743	691	676	669
OOI - hul			소계	1,610	1,556	1,454	1,382	1,360	1,355
유아학비· 보육료			3세	3,462	3,346	3,355	3,310	3,257	3,357
			4세	4,992	4,803	4,619	4,492	4,423	4,359
		새립	5세	5,177	5,404	5,175	4,835	4,698	4,635
			소계	13,631	13,553	13,149	12,638	12,379	12,351

²¹⁾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에 의하면 영유아수 증가에 따라 2027년부터 누리과정 소요예산 또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 2031년에는 4조 6,479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5,240	15,109	14,602	14,020	13,739	13,707
	ОН	3세	6,303	6,100	6,124	6,046	5,955	6,143
	린	4세	5,168	4,979	4,799	4,684	4,622	4,562
	0	5세	4,649	4,848	4,644	4,341	4,230	4,180
	집	소계	16,120	15,927	15,568	15,071	14,807	14,885
		계	31,360	31,036	30,170	29,091	28,545	28,592
	0-1	국공립	1,006	937	845	776	731	699
	유치 원	세립	3,670	3,388	3,068	2,835	2,674	2,566
방과후과정		소계	4,676	4,325	3,913	3,612	3,406	3,264
	어린이집		4,340	3,982	3,633	3,381	3,199	3,092
	계		9,016	8,307	7,546	6,993	6,605	6,356
	합계			39,343	37,716	36,084	35,150	34,948

2) 시나리오2: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50% + 지원단가 인상

시나리오2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50% 달성과 지원단가 인상을 고려한 경우이다.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 비율 40% 목표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5년까지 공보육 50% 확대에 기반하여 2025년 국공립유치원 50%를 가정하였고, 2026년부터는 이용률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외 조건은 시나리오1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시나리오2로 추정한 결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유아학비 소요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유아학비 지원단가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비와 신규 공립교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4-7〉 3-5세 누리과정 재정추계(시나리오2)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공립	1,900	2,097	2,299	2,563	2,555
001=1111	유치원	사립	12,392	10,905	9,423	8,186	8,185
유아학비· 보육료		소계	14,292	13,002	11,722	10,750	10,740
T-4-TT	어린이집		15,927	15,568	15,071	14,807	14,885
		계	30,219	28,570	26,793	25,557	25,625

	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공립	1,145	1,219	1,292	1,378	1,317
	유치원	사립	3,098	2,545	2,114	1,769	1,700
방과후과정		소계	4,243	3,764	3,406	3,147	3,017
	어린이집		3,982	3,633	3,381	3,199	3,092
	계		8,225	7,397	6,787	6,346	6,109
합 계			38,444	35,967	33,580	31,903	31,734

마. 국공립 유치원 설립 및 사립유치원 지원 재정추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려고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때, 이는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과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유발된다. 반대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설립 및 사립유치원 지원 재정을 추계하였다.

1)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

여기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소요예산 추계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목표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2.4%, 38.3%, 44.1%, 50%로 설정하였다. 이 때 연령별 공립유치원 취원률이 달라 최근 3년 연령별 취원률 비중을 고려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매입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 충하는 방식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신규 설립비용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설립비용 추계 시나리오는 2가지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1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 수용은 공립단설과 병설 유치원이 50%씩 수용한다는 가정하였고, 시나리오2는 단기가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이용아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설유치원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공립단설 90%, 공립병설 10%를 가정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설치비용은 2020년 서울, 세종, 경남과 2019년 경기도의 재정투자 심사결과 공개자료와 서울시교육청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였다. 원당 평균 설립비용은 단설 13,253백만원, 평균 3,407백만원, 평균 학급수는 단설 12개, 병설 4개로 설정하였다. 교원당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자료에 기초하여 교원당 인건비를 단설은 연간 60백만원(원장, 원감 고려), 병설은 57백만원으로 하였다.

〈표 Ⅲ-4-8〉 공립유치원 설치비용 산출기준

단위: 백만원, 개, 명

구분	원당 평균 설립비용 ¹⁾	학급수	학급당 평균 설립비용	학급당 인원	교원수	교원당 인건비 ²⁾	원당 운영비 ³⁾
단설	13,253	12	1,122	20	14	60	200
병설	3,407	4	852	20	4	57	110

주: 1) 단설은 서울/세종/경남(2020년), 경기(2019) 교육청 재정투자 심사 공개자료 평균, 병설은 2021~2025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참조.

추가 설립이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수 산출은 2025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서는 2021년 추계 원아수 대비 총 62,038명의 원아가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1에 의하면 추가 유치원 수는 517개(단설 129, 병설 388), 교원 수는 3,360명(단설 1,809명, 병설 1,551명)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2에 의하면 추가 유치원수는 311개(단설 233개, 병설 78개), 교원 수는 3,026명(단설 2,716명, 병설 310명)으로 예상되었다.

〈표 Ⅲ-4-9〉 추가 설립이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수(국공립 이용률 50% 확대)

단위: 명, 개,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국	공립 원아수	167,659	190,762	203,175	215,266	229,698			
	증감	-	23,103	12,413	12,092	14,431	62,038		
시나리오1: 단설 50%, 병설 50% 분담									
	추가 학급수	_	578	310	302	361	1,551		
공립단설	추가 유치원수	_	48	26	25	30	129		
	추가 교원수	-	674	362	353	421	1,809		
	추가 학급수	_	578	310	302	361	1,551		
공립병설	추가 유치원수	_	144	78	76	90	388		
	추가 교원수	-	578	310	302	361	1,551		
시나리오2:	단설 90%, 병설10)%							
	추가 학급수	-	1,040	559	544	649	2,792		
공립단설	추가 유치원수	_	87	47	45	54	233		
	추가 교원수	_	1,213	652	635	216	2,716		
	추가 학급수	-	116	62	60	72	310		
공립병설	추가 유치원수		29	16	15	18	78		
	추가 교원수	_	116	62	60	72	310		

^{2) 2019}년 서울시교육청 원장/원감/교사의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관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예산세에 기초하여 산출함.

^{3) 2017}년 서울시교육청 교부기준임(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 2017).

국공립 유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2조 2,381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시나리오1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추가 설립비용 3조 339억원, 추가 교원인건비는 5,345억원, 추가 운영비는 1,858억원으로, 현상 유지시보다 총 3조 7542억원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2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따른 전체 소요재정은 향후 4년간 총 4조 766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추가 설립비용이 3조 3,474억원, 추가 인건비가 5,798억원, 운영비가 1,493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Ⅲ-4-10〉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추계

단위: 명, 개, 백만원

						<u> </u>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
		ត្	현 수준 유지시			
교원인건	<u></u> Н	946,224	970,190	869,134	915,386	832,341
운영비		1,844,819	1,756,076	1,637,111	1,548,289	1,405,820
계		2,791,043	2,726,265	2,506,245	2,463,675	2,238,161
시나리오1: 단설	50%, 병설	50% 분담				
	공립단설	637,881	342,715	333,857	398,455	1,712,907
추가 설립비용	공립병설	491,947	264,309	257,478	307,297	1,321,031
	계	1,129,828	607,024	591,335	705,751	3,033,937
추가 교원인건		73,385	112,813	151,222	197,062	534,482
추가 운영비		25,509	39,214	52,565	68,500	185,788
 계		1,228,723	759,051	795,122	971,313	3,754,207
시나리오2: 단설	90%, 병설1	0%				
	공립단설	1,148,185	616,886	600,942	717,218	3,083,232
추가 설립비용	공립병설	98,389	52,862	51,496	61,459	264,206
계		1,246,575	669,748	652,438	778,678	3,347,438
추가 교원인건비		79,608	122,379	164,045	213,773	579,805
 추가 운영비		20,504	31,520	42,251	55,059	149,334
		1,346,687	823,647	858,734	1,047,510	4,076,577

2)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 및 학급운영비 비용추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본급 보조 지원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3. 11.). 이에 따라 2019년 월 65만원에서 2020년 월 68만원, 2021년 월 71만원(장기

근속수당 3만원 포함)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를 2020년 42만원에서 2021년 45만원으로 인상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3. 1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사립유치원 학급수는 24,177개, 교원수는 34,542명(원장/원감 4,622명)이었다. 교원(원장/원감 제외)당 원아수는 14.5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사립유치원의 경우 2담임제 운영이 많은 현실과 어린이집 4-5세반 기준을 준용하여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추계하였다.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는 2021년 71만원, 2022년 77만원, 2023년 이후는 83만원으로 설정하였고, 학급당 운영비는 45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나리오1의 경우 유치원 이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계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원수는 2027년까지 감소한 후 2028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사기본급 보조를 위해 2022년 3,290억원, 2025년 2,867억원, 2031년 2,985억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연간 학급당운영비는 2022년 1,224억원, 2025년 995억원, 2031년 1,05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추가소요 비용은 2022년 4,514억원, 2025년 3,862억원, 2031년 4,04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2의 경우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가정이다. 학급수는 2022년 20,942개에서 2025년 13,030개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여기에서 학급수가 크게 감소하더라고 사립유치원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교원수를 추정하였다. 교사 기본급 보조와 학급당 운영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2022년 4,249억원, 2025년 3,034억원, 2031년 3,171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4-11〉 사립유치원 교사 기본급 보조 및 학급운영비 비용추계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1: 현상유지										
학급수	22,670	20,764	19,380	18,421	17,774	17,576	17,883	18,450	19,034	19,609
교원수	33,035	31,129	29,745	28,786	28,139	27,941	28,248	28,815	29,399	29,974
교사 기본급보조	329,029	310,049	296,258	286,712	280,260	278,297	281,346	286,996	292,816	298,545
학급당운영비	122,418	112,128	104,651	99,475	95,977	94,913	96,566	99,629	102,785	105,891
계	451,448	422,177	400,909	386,187	376,237	373,209	377,912	386,626	395,601	404,435

_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세	J리오2: 국 공 립 유	치원 이용률	률 2025년7	까지 50%	달성						
	학급수	20,942	17,649	15,086	13,030	12,622	12,540	12,771	13,151	13,540	13,921
	교원수	31,307	28,014	25,451	23,395	22,987	22,905	23,136	23,516	23,905	24,286
	교사 기본급보조	311,822	279,016	253,495	233,012	228,952	228,131	230,435	234,215	238,091	241,886
	학급당운영비	113,089	95,302	81,466	70,361	68,160	67,714	68,964	71,013	73,114	75,172
계		424,910	374,318	334,962	303,373	297,112	295,845	299,399	305,228	311,205	317,058
	하근다 20명 기2	조 하그스	조가에 [다라 교사	스마 벼도;	하고 위자	/위가 사	리으치위스	느 벼도이	1으02 7	l저하

주: 학급당 20명 기준. 학급수 증감에 따라 교사수만 변동하고 원장/원감, 사립유치원수는 변동없음으로 가정함.

바. 무상 보육・교육을 통한 유보간-내 격차 해소 재정 추계

누리과정을 국가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해당소관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보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내에서 존재하는 공·사립간 격차완화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누리 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으로 산출되는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투입을 무상 교육·보육으로 설정하여 소요 재정을 추계하였다. 2018년 표준보육비용은 3세 1인당 432천원, 4-5세는 1인당 396천원이었고(박진아 외, 2019), 표준유아교육비는 2020년 공립유치원 원아당월 750천원, 사립유치원은 원아당 549천원²²⁾으로 중장기적으로 산출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될 필요가 있어 이를 비용근거로 사용하였다.

우선 무상 보육·교육 재정추계는 2025년 국공립 이용률 50%를 달성한 이후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기존 표준비용에 2017-2019년 3년간 소비자물가등락률 평균인 1.3%를 매년 증가율로 반영하였다.

시나리오1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 산출 비용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공사립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2는 공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원한다는 가정으로, 이는 동일 연령 유아에게 양질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보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이나

²²⁾ 표준유아교육비 관련 수치는 엄문영, 정혜영, 이수지, 한지예(2020)이 수행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박창현 외(2021)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의무교육23) 등을 고려할 때의 최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무상보육·교육비용 추계 결과 시나리오1의 경우에는 국공립 이용율이 50%가된 이듬해은 2026년부터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만큼 지원한다고 했을 때, 5조 4,620억원(유치원 3조 5,277억원, 어린이집 1조 9,34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는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 2026년에 7조 5,836억원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Ⅲ-4-12〉 무상보육·교육 재정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十 世	국공	립 이용 률	률 50% 달	달성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현 수준 유지: 누리	현 수준 유지: 누리과정 재정추계 시나리오1(지원단가만 인상)									
유치원	19,434	18,515	17,632	17,145	16,971	17,258	18,169	19,471	20,840	22,299
어린이집	19,909	19,201	18,452	18,006	17,977	18,524	19,633	21,079	22,589	24,179
계	39,343	37,716	36,084	35,151	34,948	35,782	37,802	40,550	43,429	46,478
시나리오1: 표준비	용 전액 기	[1원								
유치원	42,004	39,239	37,364	36,354	35,277	35,143	36,266	38,105	40,024	41,964
어린이집	23,616	21,844	20,609	19,746	19,343	19,583	20,366	21,418	22,501	23,582
계	65,620	61,083	57,973	56,100	54,620	54,726	56,633	59,522	62,526	65,546
시나리오2: 공립유	치원 표준	유아교육	네 수준으	로 전액 :	지원					
유치원	51,032	46,764	43,706	41,736	40,499	40,370	41,688	43,804	46,011	48,240
어린이집	43,231	39,958	37,678	36,103	35,336	35,725	37,139	39,060	41,040	43,019
계	94,263	86,721	81,384	77,838	75,836	76,095	78,827	82,863	87,052	91,259

5. 양육수당 추계

가. 양육수당 추계 기본모형

양육수당 추계를 위한 기본모형의 기준은 우선 현재 연령별 단가가 유지되고, 최근 3개년 평균 수혜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양육수당 재정소요는 연령별 수혜대상 아동수에 연령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양육수당은 유 아학비나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

²³⁾ 유아의무교육시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가정양육아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의무교육 적용연령, 유치원 설립비용, 교원 및 직원, 지원인력 등의 비용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동이 제외되나 본 모형에서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까지 고려하여 제외하지 못하였다. 또한 양육수당은 일반, 농어촌,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양육수당재정추계 기본모형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추계연도는 2021년 부터 2026년까지이다.

$$FC_t = \sum_{a=0}^{6} B_{a \cdot t} N_{a \cdot t} \cdot 12$$

FC = 양육수당 비용추계액

 B_{a+t} = 개월(연령)별, 1인당 양육수당 지원단가

 N_{ext} = 개월(연령)별, 양육수당 수혜대상 아동수

a = 개월(연령)(만0-6세)

t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나. 양육수당 수혜 아동수

만 0-2세(보육연령 0-1세) 영아들의 양육수당 수혜아동수가 많았고, 해당연령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양육수당 수혜아동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2020년 3년 평균이 만0세 91.5%, 만1세 62.8%, 만2세 19.7%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연령 0세인 경우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높고, 보육연령 1세가 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양육수당 수혜자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3세(보육연령 2세)부터는 기관이용의 증가와 함께 양육수당 대상아 수가 줄어들어 해당연령 영유아수 대비 10% 미만의 수혜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5-1〉 양육수당 수혜아동수 및 비율(2015-2020년)

단위: 명, %

개월(연령)			양육수당 -		양육수당 수혜이동 비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평균
0~11개월 (만0세)	386,361	363,178	317,981	291,106	269,362	243,132	91.6	91.3	91.7	91.5
12~23개월 (만1세)	310,212	305,911	274,578	236,328	203,769	187,316	65.4	61.6	61.5	62.8
24~35개월 (만2세)	132,195	117,302	106,954	88,440	66,223	64,249	21.5	18.2	19.4	19.7

기일(여관)			양육수당 수	수롱이하수			양육수당 수혜아동 비율				
개월(연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평균	
36-47개월 (만3세)	66,546	47,840	43,300	39,719	31,442	34,313	9.0	7.6	9.4	8.7	
48-59개월 (만4세)	40,139	34,711	29,134	28,089	27,913	32,688	6.4	6.3	7.9	6.9	
60-71개월 (만5세)	37,894	30,609	32,163	28,401	29,534	37,356	6.4	6.7	8.4	7.2	
72-83개월 (만6세)	35,999	33,602	32,180	33,594	30,207	43,041	6.9	6.8	9.8	7.8	
계	1,009,346	933,153	836,290	745,677	658,450	642,095	25.7	24.1	25.1	25.0	

주: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와 주민등록현황 자료로 산출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250. 2)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273.

- 3)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274. 4)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p. 276. 5)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296. 6)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p. 293.
- 7)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ld=DT 1B04006&conn path=13 에서 2021, 4, 28, 인출.

다. 양육수당 수혜 대상아수 추정

2018-2020년 3개년의 연령별 인구대비 양육수당 수혜 아동수 평균 비율이 향 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양육수당 대상아 수를 추정하였다.

〈표 Ⅲ-5-2〉 양육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

단위: 명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261,877	259,639	269,297	279,624	290,265	300,716
12~23개월(만1세)	176,348	167,136	165,720	171,882	178,455	185,228
24~35개월(만2세)	59,758	56,695	53,740	53,288	55,267	57,375
36-47개월(민3세)	21,804	20,415	19,371	18,363	18,209	18,885
48-59개월(만4세)	24,260	21,780	20,396	19,354	18,348	18,196
60-71개월(만5세)	27,104	24,226	21,752	20,371	19,332	18,328
72-83개월(만6세)	27,944	27,068	24,194	21,725	20,348	19,311
계	599,095	576,959	574,468	584,606	600,225	618,040

라. 양육수당 재정추계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의 지급단가를 유지한다는 전제하 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보았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다. 양육수당 지출총액은 2021년 1조 1,390억원에서 2026년 1조 2,13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0세~만1세는 인구수가 증가추세 전환됨에 따라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보이고, 만3~6세 양육수당 지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5-3〉 양육수당 재정추계(현수준 유지)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6,231	6,463	6,711	6,966	7,217
12~23개월(만1세)	3,174	3,008	2,983	3,094	3,212	3,334
24~35개월(만2세)	717	680	645	639	663	689
36-47개월(민3세)	262	245	232	220	219	227
48-59개월(만4세)	291	261	245	232	220	218
60-71개월(만5세)	325	291	261	244	232	220
72-83개월(만6세)	335	325	290	261	244	232
계	11,390	11,042	11,119	11,402	11,757	12,136

마. 양육수당 시나리오 추계

시나리오 전망을 향후 발생가능한 몇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2022년부터 시행되는 0-1세 영아수당 도입, 양육수당 지원단가 확대, 출산순위별 양육수당차등지급 등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1) 시나리오1: 영아수당 도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 당을 도입하여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현재 0-1세의 경우 부모의 가정양육이 더 선호되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 초기 영아에게는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기에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돌봄 서비스와 직접돌봄 소요비용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영아수당 도입은 결국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영아수당 하나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양육수당 수급률 61.6%

[그림 Ⅲ-5-1] 0~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

기관 이용률 36.6%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78.

2022년부터 가정에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기존의 15~20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늘어나서 지급되고, 수당의 명칭은 영아수당으로 바뀐다. 영아수당 도입 에 따라 2022년 0-1세는 30만원. 2-5세는 10만원을 시작으로. 0-1세 영아수당 은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올려 추정하였다.

양육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조 1.390억원 규모에서 영아수당 이 도입되는 2022년 1조 7.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영아수당이 2025년까지 점진 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2026년에는 3조, 742억원 규모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행기준 양육수당 기준과 비교하면 2022년은 현행대비 6.124억원 증가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6년에 현행기준 대비 1조 8605억원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표 Ⅲ-5-4〉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1)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9,347	11,310	13,422	17,416	18,043
12~23개월(만1세)	3,174	6,017	6,960	8,250	10,707	11,114
24~35개월(만2세)	717	680	645	639	663	689
36-47개월(민3세)	262	245	232	220	219	227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8-59개월(만4세)	291	261	245	232	220	218
60-71개월(만5세)	325	291	261	244	232	220
72-83개월(만6세)	335	325	290	261	244	232
 계	11,390	17,166	19,944	23,269	29,701	30,742
현행기준 대비 증감액		6,124	8,825	11,867	17,945	18,605

2) 시나리오2: 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현금 급여로, 양육수당 지원수준이 보육료 지원수준에 비해 낮아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지원단가 인상 기준 앞선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임금상 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부터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시나리오2로 기존 양육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조 1,390억원 규모에서 2026년 1조 4,73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부터 출생아수 증가예상에 따른 것으로 우선 볼 수 있는데, 0~23개월 영아의 경우 2023년부터 출생아 수 증가예상에 따라 가정양육 대상아수가 증가하여 양육수당 재정규모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6~83개월 영유아의 경우 기관 이용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가 조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5-4〉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6,481	6,980	7,550	8,151	8,769
12~23개월(만1세)	3,174	3,129	3,222	3,465	3,748	4,045
24~35개월(만2세)	717	708	696	716	769	833
36-47개월(민3세)	262	255	251	247	253	274
48-59개월(만4세)	291	272	264	260	255	264
60-71개월(만5세)	325	302	282	274	269	266
72-83개월(만6세)	335	338	314	292	283	280
 계	11,390	11,484	12,009	12,804	13,729	14,732
현행기준 대비 증감액	-	442	890	1,402	1,972	2,596

3) 시나리오3: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출생순위가 첫째인 비율 경우와 둘째 이후인 출생아수 비율이 역전된 후 2019년까지 출생순위 첫째아인 비율이 계속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부터 출생순위에따른 비율 격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 50.0 40.0 20.0

[그림 Ⅲ-5-2]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추이

-■-첫째 →-둘째 이후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 d=DT 1B81A03&conn path=13 에서 2021. 6. 10. 인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표 Ⅲ-5-5〉 출생순위별 출생아수

0.0

단위: 명, %

7	구분		5 2016 2017		2018	2019
출생순위	첫째	228,637	212,932	187,854	176,850	168,477
	둘째이후	208,562	192,365	168,817	147,910	134,045
	계	437,199	405,297	356,671	324,760	302,522
	첫째	52.3	52.5	52.7	54.5	55.7
비율	둘째이후	47.7	47.5	47.3	45.5	4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출산순위 '미상'인 경우는 제외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 d=DT_1B81A03&conn_path=13 에서 2021. 6. 10. 인출.

2017-2019년 3년 평균비율이 연령별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출생순위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아수를 추정한 후 양육수당을 추계하였다.

〈표 Ⅲ-5-6〉 출생순위별 양육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

단위: 명

출생순위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142,125	140,910	146,152	151,757	157,532	163,204
	12~23개월(만1세)	95,707	90,707	89,939	93,283	96,851	100,527
	24~35개월(만2세)	32,432	30,769	29,165	28,920	29,994	31,139
첫째	36-47개월(만3세)	11,833	11,080	10,513	9,966	9,883	10,249
久MI	48-59개월(만4세)	13,167	11,821	11,069	10,504	9,958	9,875
	60-71개월(만5세)	14,710	13,148	11,805	11,056	10,492	9,947
	72-83개월(만6세)	15,166	14,691	13,130	11,790	11,043	10,480
	계	325,139	313,125	311,774	317,276	325,752	335,421
	0~11개월(만0세)	119,752	118,728	123,145	127,867	132,733	137,512
	12~23개월(만1세)	80,641	76,428	75,781	78,599	81,605	84,702
	24~35개월(만2세)	27,326	25,926	24,574	24,368	25,273	26,237
둘째 이후	36-47개월(만3세)	9,970	9,335	8,858	8,397	8,327	8,636
줄쎄 이우	48-59개월(만4세)	11,094	9,960	9,327	8,850	8,390	8,321
	60-71개월(만5세)	12,394	11,078	9,947	9,315	8,840	8,381
	72-83개월(만6세)	12,778	12,378	11,063	9,934	9,305	8,830
	계	273,956	263,833	262,694	267,330	274,473	282,619

출생순위에 따라 0-6세 영유아 양육수당 재정규모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부터 출생순위가 둘째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현수준 대비 50% 인상하는 경우(0세 30만원, 1세 22.5만원, 2세 이후 15만원), 연도별 양육수당 총 규모는 2022년 1조 3,567억원으로 증가하고 현행기준 대비 2,52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6년에 1조 4,911억원으로 현행기준 대비 2,75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7〉 양육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3)

단위: 억워

개월(연령)	2021년(현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6,285	7,656	7,941	8,245	8,559	8,867
12~23개월(만1세)	3,174	3,696	3,665	3,801	3,947	4,096
24~35개월(만2세)	717	836	792	786	815	846
36-47개월(민3세)	262	301	286	271	268	278
48-59개월(만4세)	291	321	301	285	271	268

개월(연령)	2021년(현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0-71개월(만5세)	325	357	321	300	285	270
72-83개월(만6세)	335	399	357	320	300	285
 계	11,390	13,567	13,662	14,009	14,445	14,911
현행기준 대비 증감액	-	2,525	2,542	2,607	2,688	2,775

6. 아동수당 추계

가. 아동수당 추계 기본모형

아동수당 추계를 위한 기본모형의 기준은 우선 현재 지원연령과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재정을 추계한다. 아동수당 재정소요는 연령별 수혜대상 아동수에 지급단가(현행 100,000원)을 곱하여 추계하며, 추계연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FD_t = \sum_{a=0}^{6} B_{a \cdot t} N_{a \cdot t} \cdot 12$$

FD, = 아동수당 비용추계액

 $B_{a\cdot t}$ = 개월(연령)별, 1인당 아동수당 지원단가

 $N_{a,t}$ = 개월(연령)별, 아동수당 수혜대상 아동수

a = 개월(연령)(만0-6세)

 $t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나. 아동수당 지원 대상아수 추정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현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에 장래추계인구의 결과를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표 Ⅲ-6-1〉 아동수당 대상아수 추계(중위가정)

단위: 명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290,664	288,179	298,899	310,361	322,172	333,772
12~23개월(만1세)	305,360	289,409	286,957	297,627	309,010	320,738
24~35개월(만2세)	321,478	305,000	289,101	286,670	297,318	308,660
36-47개월(민3세)	343,103	321,251	304,818	288,956	286,542	297,174
48-59개월(만4세)	381,761	342,737	320,951	304,560	288,730	286,331
60-71개월(만5세)	426,515	381,213	342,282	320,562	304,212	288,416
72-83개월(만6세)	439,725	425,949	380,711	341,858	320,191	303,874
계	2,508,606	2,353,738	2,223,719	2,150,594	2,128,175	2,138,965

다. 아동수당 재정추계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현재의 지급단가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동수당을 지원한다고 보았을 때, 아동수당 지출총액은 2021년 3조 103억원에서 2026년 2조 5,668억원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0세~만1세는 인구수가 증가추세 전환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보이고, 만3~6세 아동수당 지출규모는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6-2〉 아동수당 재정추계(현수준 유지)²⁴⁾

단위: 억원

개월(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11개월(만0세)	3,488	3,458	3,587	3,724	3,866	4,005
12~23개월(만1세)	3,664	3,473	3,443	3,572	3,708	3,849
24~35개월(만2세)	3,858	3,660	3,469	3,440	3,568	3,704
36-47개월(민3세)	4,117	3,855	3,658	3,467	3,439	3,566
48-59개월(만4세)	4,581	4,113	3,851	3,655	3,465	3,436
60-71개월(만5세)	5,118	4,575	4,107	3,847	3,651	3,461
72-83개월(만6세)	5,277	5,111	4,569	4,102	3,842	3,646
 계	30,103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주: 0-3세는 보육연령으로 0-2세, 4-6세는 보육연령 3-5세를 의미함.

²⁴⁾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 추후 논의함.

라. 아동수당 추계 시나리오

시나리오 전망을 통해 기본모형과 비교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원단가 확대,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영아수당 등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변화로 인해 재정소요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나리오1: 아동수당 연령 확대

현행 아동수당 지급단가를 유지한 채 지급연령을 2022년부터 1세씩 증가하여 2026년 초등6학년 시기인 11세까지로 확대하는 경우로 설정하여 아동수당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1년 0-6세에서 2022년부터 7세로 확대한다면 3조 3,516억원 규모로 추계되어 현행대비 5,27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6년에 아동수당이 11세까지 확대된다는 가정에서는 4조 8,495억원 규모로 현행 대비 2조 2,827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에서는 2026년까지 16조 2,0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고, 매년 1세씩 지급연령을 확대할 경우 2026년까지 누적 아동수당 재정규모는 31조 5,741억원으로 현행 유지 대비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7조 2,40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1)

단위: 억원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6세(현행)	30,103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62,046
0-7세		33,516	31,791	30,371	29,636	29,506	154,819
0-8세		38,691	37,057	35,471	34,195	33,600	179,014
0-9세		44,193	42,227	40,732	39,290	38,153	204,596
0-10세		49,791	47,722	45,896	44,545	43,243	231,197
0-11세		55,484	53,318	51,389	49,707	48,495	258,392
연령확대 (확대후-현행)		5,271	10,372	14,925	19,007	22,827	72,403

2) 시나리오2: 아동수당 지급단가 인상

아동수당 지급단가 인상 시나리오는 정액 인상과 매년 조정률(임금상승률)을 반 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지원단가 정액 인상은 현행 아동수당 지급단가는 매월 10만원에서, 2023년 12만원으로 인상 후 3년 후인 2026년에 15만원으로 확대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액인상의 경우 현행대로 0-6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2021년 3조 103억원 규모에서 2026년 3조 8,501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 단가 유지 대비 향후 5년간 총 2조 8,440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정액인상과 함께 지급연령도 매년 1세씩 확대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액이 매월 12만원으로 확대를 가정하는 2023년에는 4조, 4,468억원의 재정소요가 요구되어 현행대비 5,271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6년에 아동수당을 15만원 늘어나고 지급연령이 11세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7조 2,743억원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4조 7,075억원의 추가적 예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4〉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a, 정액 인상)

단위: 억원

연령	지원단가 10만원		;	지원단가 12만원	지원단가 15만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6세	30,103	28,245	32,022	30,969	30,646	38,501	190,485
0-7세		33,516	38,149	36,445	35,563	44,259	187,932
0-8세		38,691	44,468	42,566	41,034	50,400	217,158
0-9세		44,193	50,672	48,879	47,148	57,230	248,122
0-10세		49,791	57,266	55,076	53,454	64,864	280,451
0-11세		55,484	63,981	61,667	59,648	72,743	313,522
정액인상 (0-6세 유지) (확대후-현행)		_	5,337	5,161	5,108	12,834	28,440
정액인상 +연령확대 (확대후-현행)		5,271	17,783	23,072	27,916	47,075	121,117

다음으로 지원단가 인상 기준을 임금상승률로 설정하여 아동수당 재정규모를 추계하였다. 임금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할 경우 2026년 3조 1,058억원으로, 현행 0-6세 아동수당 재정규모 유지 때보다 향후 5년간 총 1조 5,838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지급연령도 매년 1세씩 확대한다면 2022년에는 3조 4,857억원, 2023년에는 4조 21억원, 2024년은 4조 5,620억원, 2025년은 5조 1,672억원, 2026년은 5조 8,679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산출되었다. 이럴 경우, 0-6세 현행 유지시 재정규모에 비해 향후 5년간 총 9조 8,907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5〉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2b, 임금상승률)

단위: 억원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6세	30,103	29,375	28,819	28,904	29,624	31,058	177,883
0-7세	35,284	34,857	34,334	34,015	34,378	35,702	173,286
0-8세	40,791	40,239	40,021	39,728	39,666	40,656	200,310
0-9세	46,395	45,961	45,605	45,620	45,577	46,166	228,928
0-10세	52,090	51,783	51,540	51,404	51,672	52,324	258,722
0-11세	57,349	57,703	57,583	57,556	57,660	58,679	289,181
임금상승률 인상 (0-6세 유지) (확대후-현행)		1,130	2,135	3,097	4,086	5,390	15,838
임금상승률 인상 +연령확대 (확대후-현행)		6,612	13,337	19,813	26,134	33,011	98,907

3) 시나리오3: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양육수당과 마찬가지고 출생순위에 따라 둘째아에게 현행 아동수당 지급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현재와 같이 0-6세로 할 경우, 2021년 3조 103억원 규모에서 2026년 3조 1,536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 단가 유지 대비 향후 5년간 총 3조 167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아에게 아동수

당 50% 지급과 함께 지급연령도 매년 확대한다면, 2022년은 4조 1179억원, 2023년은 4조 5,529억원, 2024년은 5조 45억원, 2025년은 5조 4,730억원, 2026년은 5조 9,583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추계되었다. 이럴 경우 현 지원기준을 유지할 때 규모보다 향후 5년간 총 11조 9,125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6〉 아동수당 재정추계(시나리오3)

단위: 억원

연령	2021년(현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6세	30,103	34,703	32,786	31,708	31,377	31,536	199,096
0-7세		41,179	39,059	37,315	36,412	36,252	190,217
0-8세		47,538	45,529	43,582	42,013	41,282	219,944
0-9세		54,297	51,882	50,045	48,274	46,877	251,375
0-10세		61,175	58,633	56,390	54,730	53,130	284,059
0-11세		68,169	65,508	63,139	61,072	59,583	317,471
둘째아 인상 (0-6세 유지) (확대후-현행)		6,458	6,101	5,901	5,839	5,869	30,167
둘째아 인상 +연령확대 (확대후-현행)		12,934	18,845	24,238	29,192	33,915	119,125

7. 소결

첫째, 기본모형으로 4개 사업에 대한 재정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은 추정된 지원대상아 수에 현재의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5년간 4개 사업의 총 소요재정은 58조 2,137억원으로 추계되었다.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3-5세 누리과정비, 아동수당, 양육수당 순으로 나타났다. 0-2세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은 감소한 후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2023년부터 증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곧바로 양육지원정책 사업 대상자로서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7-1〉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종합(현행)

단위: 억원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2세 보육료	47,348	45,710	45,198	46,193	47,919	232,368
3-5세 누리과정비	37,181	33,786	31,326	29,590	28,487	160,370
양육수당	11,042	11,119	11,402	11,757	12,136	57,456
아동수당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계	123,816	117,300	113,733	113,078	114,210	582,137

둘째,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현 수준 유지 가정하에서의 추계된 누적 재정규모와의 차이는 최저 5조 9,587억원에 서 최고 18조 6,540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양육지원정책 4개 사업 재정추계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

단위: 억원

연령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0-2세 보육료	시나리오1	49,227	49,440	50,806	54,018	58,291	261,782
3-5세 누리과정비	시나리오1	39,343	37,716	36,084	35,150	34,948	183,241
	시나리오1	17,166	19,944	23,269	29,701	30,742	120,822
양육수당 추계	시나리오2	11,484	12,009	12,804	13,729	14,732	64,758
	시나리오3	13,567	13,662	14,009	14,445	14,911	70,594
	시나리오1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시니니エ	33,516	37,057	40,732	44,545	48,495	204,345
	시나리오2a	28,245	32,022	30,969	30,646	38,501	160,383
이토스다 첫게		33,516	44,468	48,879	53,454	72,743	253,060
아동수당 추계	시나리오2b	29,375	28,819	28,904	29,624	31,058	147,780
	시니니エZD	34,857	40,021	45,620	51,672	58,679	230,849
	시나리오3	34,703	32,786	31,708	31,377	31,536	162,110
	시니니소	41,179	45,529	50,045	54,730	59,583	251,066
차이(최저-	현행)	4,483	8,550	11,768	15,357	19,429	59,587
차이(최고-현행)		11,837	27,986	36,045	43,989	66,683	186,540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 01 보육재정 분담 구조 및 문제점
- 02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 03 소결

Ⅳ. 양육지원정책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양육지원정책의 재정분담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양육지원정책으로는 크게 보육재정과 누리과정 재정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루고,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 보육재정 분담 구조 및 문제점

가. 복지재정과 지방재정

국가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앙재정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소득재분배에 주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방재정은 지역사회의 요구충족, 지역개발, 복지증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있다(정병렬, 2006, 홍근석, 2020). 지방재정의 세입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으로 구분되고,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로,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홍근석, 2020: 36).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로 결정된다(홍근석, 2020: 36).

사회복지재정 혹은 복지재정은 국가, 지방정부, 사회보험기관 등이 실시하는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체제로 구조화되어 있다(홍 근석, 2020: 37). 중앙정부가 정책수립 및 예산 조달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피동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복지재정을 주도하는 대표적 제도는 매칭형태의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 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하는 형태이다(홍근석, 2020: 37). 지 방에 이전되는 국고보조금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자연스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 지재정에서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홍근석, 2020: 37).

나.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제도

1)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유아교육재정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어 전액 지원되고 있다. 이와 달리 보육사업 예산은 국가재정 사회복지분야 아동·돌봄 부문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분담비율 만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중 아동·보육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영유아보육 법에서도 무상보육 조항 등에 관련 내용이나 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서 "중 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1항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2)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

사회복지부문에 포함되는 양육지원정책 사업과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 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국고보조율은 보조 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기준보조율 이라고 한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와 동법 시행령 4조25)에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은 보조금 지급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관련 내용이며, 제2항은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고기준보조율을 정의하고 있다.26)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제도는 대부분 매칭구조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대되거나 증가할수록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절대 부담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자주 세입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나 증가율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경우 지방재정은 더욱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다.

양육지원정책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표 IV-1-1〉과 같다. 기준보조율은 크게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보조율과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기준보조율, 자차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차등보조율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국이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고, 각각 기준보조 율은 50%, 50%, 40%였다. 다음으로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기준보조율을 적용 하고 있고, 서울보다 지방의 기준보조율을 20%p~30%p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사정과 해당 분야의 지출 비중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 정률을 가감하는 제도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항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

²⁵⁾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section=& 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3%B4%EC%A 1%B0%E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 5%EB%A5%A0#undefined 에서 2021. 5. 6. 인출.

²⁶⁾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3%B4% EC%A1%B0%E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 B%B2%95%EB%A5%A0+%EC%8B%9C%ED%96%89%EB%A0%B9#I4:0 에서 2021. 5. 6. 인출.

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표 IV-1-1〉에서 육아지원 관련 차등보조 대상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다. 차등보조율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를 인상하고,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를 인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표 IV-1-1〉 육아지원분야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육아지원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운영	서울: 50, 지방: 8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자료: 보조금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중 육아지원 관련사업을 발췌한 것임.

위와 같이 비용분담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세부 법에서도 부담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34조의2 및 제36조 등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체와 중앙과 지방 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홍근석, 2020: 42).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홍근석, 2020: 42).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수당법 제3조 등에서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수당은 국비는 서울 50%, 지방 70%를 국고보조금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경우 서울 60%, 지방 80%의 비율로 보조하고,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인 경우 서울 40%, 지방 60%의 비율로 보조한다(보건복지부, 2019a).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6조의2, 제36조 등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0조 및 제79조 등에서는 장애아동수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21조 및 제79조 등에서는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홍근석, 2020: 44-48).

지방자치단체의 차등보조율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예산 기준으로 기본 보조율 인상대상 자치단체는 139개였으며, 이 중 구가 69개, 시가 57개, 군이 13 개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가 모두가 기본보조율 인상 대상이었고, 시 는 75개 중 57개(76.0%)가, 군은 82개 중 13개(15.9%)만이 인상 대상이었다. 이 와 반대로 기본보조율 인하 대상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부담 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 1항에는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기준부담률)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7)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111개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중 사회복지 분야 관련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준부담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총 111개 사업 중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모자보건 관리,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영유아보육사업,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다.

〈표 IV-1-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중 육아지원정책 관련 분야 관련 항목

단위: %

번호	사업명	특별시	·광역시	5	Ē
건오	시합경	시	구	도	시·군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71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 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 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주: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자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²⁷⁾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6 91852&chrClsCd=010202&ancYnChk=0 에서 2021. 5. 12. 인출.

²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 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B%B2% 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21. 5. 12. 인출.

다.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 현황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현황

앞에서 기술했듯이 대부분의 양육지원정책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 아동·돌봄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2017년 28조 1,118억원에서 2021년 48조 3,94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 국고보조금 중 64.7%로 그 비중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고보조금 비중이 큰 분야는 농림수산이 9.7%, 환경이 8.8%, 교통 및 물류가 3.3%로 나타났다.

〈표 IV-1-3〉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78	2017	2018	2019	2020(4)	2021(B)		증감률	
구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비중	(B-A)/A	연평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합계	464,318	501,763	588,444	655,956	748,016	100.0	14.0	12.7
일반·지방행정	6,287	6,128	6,497	7,189	17,943	2.4	149.6	30.0
공공질서 및 안전	8,098	8,242	8,871	6,628	15,668	2.1	136.4	17.9
통일·외교	114	120	134	162	209	0.0	29.3	16.4
국방	57	106	233	0	0	0.0	-	-
교육	42	11	221	236	1,307	0.2	453.6	136.2
문화 및 관광	21,542	17,955	22,076	21,979	21,779	2.9	△0.9	0.3
환경	44,435	44,373	46,300	59,870	65,727	8.8	9.8	10.3
사회복지	281,118	318,585	391,117	438,487	483,949	64.7	10.4	14.5
보건	10,462	10,670	11,437	12,182	14,953	2.0	22.7	9.3
농림수산	56,455	57,410	61,508	67,887	72,593	9.7	6.9	6.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975	6,270	7,916	7,047	10,333	1.4	46.6	10.3
교통 및 물류	20,675	24,279	13,453	19,530	24,424	3.3	25.1	4.3
국토 및 지역개발	7,757	7,158	18,498	14,530	18,903	2.5	30.1	24.9
과학기술	301	454	182	229	229	0.0	△0.2	△6.7

주: 본 예산 기준이며,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추출한 것임.

자료: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p.29 재인용.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2012년 34.2조원에서 2021년 74.8조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9.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분

야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또한 2012년 16.11조원 규모에서 2021년 43.85 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연평균 13.0% 증가율을 보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연도별 변화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12년 47.1%이던 것이 2021년 64.7%까지 증가하였고 그 비율도 상당하였다.

〈표 Ⅳ-1-4〉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A)	34.20	36.76	40.01	45.10	46.04	46.43	50.18	58.84	65.60	74.80	9.1
사회복지(B)	16.11	18.52	22.24	25.77	27.14	28.11	31.86	39.11	43.85	48.39	13.0
B/A	47.1	50.4	55.6	57.1	59.0	60.5	63.5	66.5	66.8	64.7	-

주: 본 예산 기준이며,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추출한 것임.

자료: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p.30 재인용.

2) 아동·보육부문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2021년 아동·보육부문 예산은 8조 4,8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17.54%를 차지하여, 노인(35.03%), 기초생활보장(31.47%)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컸다(김우림, 2021). 또한 2021년 아동·보육 부문은 중앙정부 예산 중 거의 전부가(99.2%)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아동·보육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2021년)

단위: 억원, 개, %

구분	본예산 (A)	(사업수)	국고보조금	비중	(사업수)	자치단체 경상보조 (C)		(B/A)
사회복지 분야 전체	1,850,459	805	483,949	100.00	142	464,067	19,882	26.2
아동·보육 부문	85,582	36	84,874	17.54	23	83,922	952	99.2

자료: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에서 아동·보육분야만 발췌하였음.

2020년 아동·보육 부문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8조 4,428억원이었으며, 세부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가장 큰 규모였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순이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위탁 지원·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사업은 예산전액이국고보조금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아동·보육부문 국고보조금의 40.5%에 해당하였다.

김우림(2021: 37)의 연구에 의하면 2021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은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4.5%,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7.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아동수당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비중은 각각 3.0%, 4.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비중은 각각 2.2%, 3.3% 규모로 상당한 규모이다.

〈표 IV-1-6〉 아동·보육 부문 세부사업 예산 현황(2020년)

단위: 백만원, %

			국고보조금		아동·보육
세부사업명	국회 확정금액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	부문 국고보조금 대비 비중
아동·보육 부문 합계	8,512,651	8,315,215	127,562	8,442,777	100.0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	3,250				
모자보건사업	33,311	29,643		29,643	0.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8,626	7,921		7,921	0.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15,717	815,717		815,717	9.7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165				
	3,999				
	17,02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282	1,229		1,229	0.0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474	1,707		1,707	0.0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1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6,459	5,377	9,168	14,545	0.2
	62,955	62,049		62,049	0.7
	1,424,169	1,424,169		1,424,169	16.9
어린이집 기능보강	19,777		19,777	19,777	0.2
어린이집 확충	74,832		74,276	74,276	0.9
시간제보육 지원	16,600	16,200	100	16,300	0.2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21	3,416,221		3,416,221	40.5

			국고보조금		아동·보육
세부사업명	국회 확정금액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Й	부문 국고보조금 대비 비중
가정위탁 지원·운영	1,044	1,044		1,044	0.0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2,083				
지역아동센터 지원	183,019	176,218	6,621	182,839	2.2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543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2,654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24,744	24,744		24,744	0.3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19,00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1,823	21,423		21,423	0.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3,028	2,828		2,828	0.0
	2,283,374	2,282,774		2,282,774	27.0
다함께 돌봄 사업	26,234	8,005	17,620	25,625	0.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2,050	470		470	0.0
	4,9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1,312	115		115	0.0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385				
 인구교육추진지원	1,04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7,424	17,361		17,361	0.2

자료: 1) 열린재정, 재정통계, 상세재정통계DB,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https://www.openfiscaldata. 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jsessionid=b9G2Wo1VVUMKPkKprTkCau2gBbEXJA9n6WomyBULBd6e1sWyJb07VjQcYWByHVJY.IFPBWAS2_servlet_engine1?mld=B002 에서 2021. 3. 16. 인출.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규모는 2020년 아동·보육 부문 전체 국고보조금의 94%에 해당한다.4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비중은 감소추세이며 2020년에 7.2%까지 하락하였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은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양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규모 자체도 다소 크게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비중은 2016년 4.5%에서 2020년 1.7%로 다소 크게 감소하였다.

²⁾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 U_ID=13&MENU_ID=1304080205&page=1&CONT_SEQ=356566&PAR_CONT_SEQ=355602 에서 2021. 6. 15. 인출.

〈표 IV-1-7〉아동·보육 부문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161,074	185,244	222,404	257,655	271,439	281,118	318,585	391,117	475,536
아동·보육 부문(4개 세부사업)	29,801	40,753	51,640	48,252	51,440	52,567	53,357	76,479	79,404
	18.5	22.0	23.2	18.7	19.0	18.7	16.7	19.6	16.7
 영유아보육료 지원	23,913	25,982	33,292	30,474	31,066	31,292	32,575	34,053	34,162
OTT 기고 지전	14.8	14.0	15.0	11.8	11.4	11.1	10.2	8.7	7.2
UEYE II	-	-		_	_	_	_	21,617	22,828
아동수당 지급	-	-		-	-	-	-	5.5	4.8
	4,844	5,944	6,176	6,746	8,168	9,019	9,877	11,868	14,24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자원	3.0	3.2	2.8	2.6	3.0	3.2	3.1	3.0	3.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26	8,810	12,153	11,018	12,192	12,242	10,891	8,923	8,157
	0.6	4.8	5.5	4.3	4.5	4.4	3.4	2.3	1.7

자료: 1)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라. 보육재정 분담 구조 관련 문제점

1)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 원칙 부재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보조율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표준화된 재원분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배준식 외, 2015, 홍근석, 2020: 21 재인용).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로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며, 기준보조율이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홍근석, 2020: 21).

그러나 기준보조율에 관하여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은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의 수치를 열거하고 있을 뿐 보조율을 산출하게 된 근거와 원칙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심지헌, 2014: 22). 특별한 쟁점이 제기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할 때 설정한 기준보조율이 관례적으로 반복 적용된다 (이재원, 2019: 홍근석, 2020: 21 재인용).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국비와 대응지방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홍근석, 2020).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보조율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해당 보

²⁾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 U_ID=13&MENU_ID=1304080205&page=1&CONT_SEQ=356566&PAR_CONT_SEQ=355602. 202 1. 6. 15. 인출.

조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에 가까울수록 보조율을 높이고, 지방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성격을 갖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심지헌, 2014, 홍근석, 2020: 21 재인용).

2)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의 적절성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으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평가하는 지수인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분별력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홍근석, 2020: 24). 〈표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으로 기준보조율 인하대상은 전혀 없고 인상대상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해당하는 특별·광역시에 속한 자치구가 모두 기본보조율 인상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군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별광역시나 대도시 구 지역이 인구가 많고 복지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이 더 많아 시군에 비해 오히려 절대적인 사회복지 수요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일수 있으나, 모든 구지역이 차등보조율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지역간 불균형과 이의 심화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상황에서, 군 지역의 전체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인구수가 적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 면 사회복지비 지수 기준에 대한 설정을 재검토하거나 다른 기준들을 살펴볼 필요 도 있을 것이다.

〈표 Ⅳ-1-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현황(2019년 기준)

	기본보조	율 인상대상	자치단체	기본보조	율 인하대상	치등보조율		
구분	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10% 인상 자치단체 수	사회복지비 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	10% 인하 자치단체 수	미적용	전체
시	57	75	57	2	0	0	18	75
군	13	82	13	47	0	0	69	82
구	69	69	69	0	0	0	0	69
계	139	226	139	49	0	0	87	226

자료: 1) KOSIS 국가통계포털,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ald=101&tblld=DT 1YL20911&conn path=13 에서 2021, 5, 6, 인출.

²⁾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정자주도(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 blld=DT_1YL20891&conn_path=13 에서 2021. 5. 6. 인출.

또한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중 재정자주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의 기본보조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기준은 사회복지비지수 하나이다. 그런데 사회복지비지수는 모든 구지역이 지수가 25 이상이고, 시·군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어, 차등보조율 제도가 인구밀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 곳이 구 지역이 시·군 지역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심지헌, 2014, 홍근석, 2020: 25 재인용),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홍근석, 2020: 25 재인용).

「지방자치법」제2조 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2]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도시계획,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 14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홍근석, 2020: 25). 시·군·구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시군에 비하여 낮은 반면,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홍근석, 2020: 25).

2.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구조 및 문제점

가.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누리과정지원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 교육재정을 먼저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의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되며,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 타 등으로 구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26).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교육부) 이전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 납입금과 그 외 사용료, 수수료, 자산수입 등이 포함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26).

2021년 지방교육재정 이전수입은 69조 4,749억원 규모이며,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5조 9,949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13조 2,995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1,805억원 규모였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52조 1,269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전입금이 3조 6,547억원, 국고보조금 2,133억원 순이었다. 누리과정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세입으로 포함되고, 유아교육진흥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보통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편성된다

〈표 Ⅳ-2-1〉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추이(2016-2021)

단위: 억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전수입	637,029	701,391	786,476	712,735	694,749
중앙정부 이전수입	506,774	565,633	645,716	579,949	559,9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667	524,777	605,305	535,140	521,269
국고보조금	1,698	1,928	2,258	7,966	2,133
특별회계전입금	39,409	38,927	38,153	36,843	36,547
지자체 이전수입	129,162	134,439	139,248	131,255	132,995
기타 이전수입	1,093	1,319	1,512	1,531	1,805
자체수입	17,001	17,004	16,043	7,610	3,953
지방교육채 및 기타	70,405	69,970	71,354	18,401	12,529
내부거래	_	_	_	268	7,374
합 계	724,435	788,365	873,873	739,014	718,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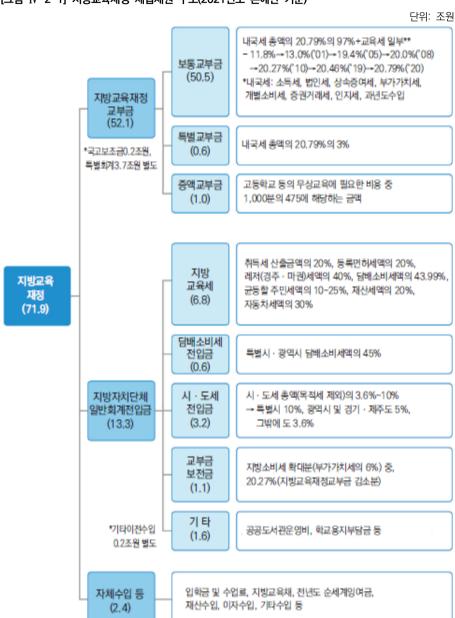
주: 1)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간의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예산 과목 신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재정. p.26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20.1.1.시행)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비율이 당초 20.46%에서 20.79%로 인상되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감소되는 내국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였다(국회예산정책서, 2021:28). 2021년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IV-2-1-]과 같다.

^{2) 2017~2019}년은 결산액 기준이며, 2020년 및 2021년은 본예산액 기준

[그림 Ⅳ-2-1]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2021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재정.

나. 유아교육재정 구조

본 절에서는 유아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비 사업 지방 이양, 누리과정 도입과 확대, 누리과정 이후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편성 갈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유아교육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성장하였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종합 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한 이래 유치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 서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이원화하고 정부의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을 체계화하였다(김병만, 2014).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만 3 ~5세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에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김동훈, 2018: 64). 이들 기관은 3~5세라는 동일 연령대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다른 법적 근거와 다른 교사양성체계 및 자격기준, 시설기준,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보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김동훈, 2018: 64).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 유치원 관련 내용들이 별도 법률조항으로 마련되었다. 유아교육재정은 국고 부담분인 교육부 예산과 지자체 부담재원으로 시·도교육청특별회계 중 유아교육 관련 예산,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 등으로 구성되었다(김동훈, 2018: 65).

2008년 유아교육재정 재원구조가 국고와 지방비 지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유아교육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학비지원,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지원, 종일제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보·배분하던 재정지원 체계가, 2008년부터 국립유치원을 제외한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양하였다(김동훈, 2017).

또한 2008년부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

율을 20%로 인상(기존 19.4%)하여²⁹⁾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추진하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조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³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유아교육비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유아학비지원,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교육력 지원비, 유치원환경 개선비로 구분하였고, 이후 만 5세 유아에 대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도입과31) 기존 유치원 환경 개선비 항목 삭제 등32)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일부용어를 개정하여 현재 유아교육비 측정항목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교육역량 지원비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33)

2) 3-5세 누리과정 도입

2008년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후 2012년 어린이집 유아까지를 포함한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과 만 3-5세로의 전면 확대로 유아교육재정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11년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의 관계부처합동 발표('11. 5. 2)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만5세 유아의

²⁹⁾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6. 12. 30., 일부개정][시행 2007. 1. 1.]. https://www.la w.go.kr/lsInfoP.do?lsiSeq=76486&ancYd=20061230&ancNo=08148&efYd=2007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에서 2021. 5. 20. 인출.

³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8. 2.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 o?lsiSeq=83158&ancYd=20080222&ancNo=20632&efYd=20080222&nwJoYnInfo=N&efGubu 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에서 2021. 5. 20. 인출.

³¹⁾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1. 9.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 o?lsiSeq=117429&ancYd=20110930&ancNo=23186&efYd=20120101&nwJoYnInfo=N&efGub 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에서 2021. 5. 20. 인출.

³²⁾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5.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 o?lsiSeq=175593&ancYd=20151020&ancNo=26592&efYd=20160101&nwJoYnInfo=N&efGub 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에서 2021. 5. 20. 인출.

³³⁾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0.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 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 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EA%B4%80%E D%95%9C+%EB%B2%95%EB%A5%A0#AJAX 에서 2021. 5. 20. 인출.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만 5세 학비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 또한 순차적으로 늘려 현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표준화된 공통과정(누리과정)도입과 만5세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등의방안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듬해 만 5세 지원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전면 시행되었다. 또한 2011년 17.7만원인 지원단가를 향후 5년간 인상하여 2016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1, 김동훈, 2018: 66 재인용).

이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포함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만 5세 전계층 지원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를 포함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원의 일원화를 가져왔다(김동훈, 2018: 66).

2012년 5세 공통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3~4세 누리과정」도입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지원대상을 기존 만 5세에서 만 3~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2. 1. 18., 김동훈, 2018: 66 재인용). 이에 2013년 3월부터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로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재원부담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되 2013년 만 3~4세, 2014년 만 3세에 대한 기존 보육료 국고 및 지방비부담분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2. 1. 18., 김동훈, 2018: 66 재인용).

이후 무상교육 범위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영유아보육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정기준에 유아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 유아까지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김동훈, 2018: 66-67).

3)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008년부터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양되고,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갈등상황이 도 래하였다. 핵심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인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었다.

참예한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평행성을 달리면서 갈등상황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화에서 2016년 말 임시방편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그간의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국회 여야 3당이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제정(2016. 12. 20.)되어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김동훈, 2018: 67). 이후 새로운 대안의 제시 없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확대 하에서 3년 한시로 2022년까지 한번 더 연장된 상태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지출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유치원) 및 지자체(어린이집)에 유아교육비보육료를 보조(국고보조율 100%)방식으로 집행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이를 통해 그간 중앙과 시도교육청간 누리과정지원비 편성과 관련된 갈등도 잠정 봉합되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2021년 총 3조 7,076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169억원, 교육세지원 전입금은 1조 6,907억원으로 교육세 이외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54.4%를 차지하였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교육세지원 전입금은 유치원을 100% 지원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원단가 등이 인상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정부분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비가 약 2조원 규모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년 연장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어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Ⅳ-2-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현황(2017-2021)

단위: 억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9,409	38,927	38,153	39,435	37,076
일반회계(A)	8,600	20,586	19,812	20,978	20,169
일반회계(B) (교육세 지원분)	30,809	18,341	18,341	18,457	16,907
비중(A)	21.8	52.9	51.9	53.2	54.4

자료: 교육부(2018, 2021).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기초하여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 비 중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표 IV-2-3〉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	7년	201	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율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공립	1,156	6.2	1,236	6.7	1,199	6.8	1,224	6.6	1,621	9.1
	유아학비	사립	13,752	74.2	13,510	73.7	12,965	73.5	13,525	72.5	12,686	70.8
		소계	14,909	80.4	14,747	80.4	14,165	80.4	14,749	79.1	14,307	79.9
유치원 방과후과 정비	W31-31	공립	803	4.3	816	4.4	791	4.5	812	4.4	829	4.6
		사립	2,822	15.2	2,779	15.1	2,672	15.2	3,084	16.5	2,773	15.5
	0-1	소계	3,625	19.6	3,595	19.6	3,463	19.6	3,896	20.9	3,602	20.1
계			18,533	100.0	18,341	100.0	17,628	100.0	18,645	100.0	17,909	100.0
	보유	混	15,836	75.9	15,617	75.9	15,030	73.2	16,114	74.4	16,114	75.8
어린이 누리	누리과정운	영지원비	5,039	24.1	4,969	24.1	4,782	23.3	4,700	21.7	4,339	20.4
			-	-	1	-	713	3.5	856	4.0	806	3.8
	소	계	20,875	100.0	20,586	100.0	20,525	100.0	21,671	100.0	21,259	100.0
합계		39,409	100.0	38,927	100.0	38,153	100.0	40,316	100.0	39,168	100.0	

자료: 교육부(2018, 2019, 2020, 2021).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다. 누리과정 지원 재정 분담 구조 관련 문제점

1) 교육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형식적 운영·관리 책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조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상당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상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부에서 명목상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 7조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 ·집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형식적인 운영·관리주체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특성 상 교육부장관은 실제 어린이집으로 누리과정 집행이 아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역할에 그치고, 실제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 간 분담비율의 문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내국세와 국고 분담 비중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매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는 교육세 일부금액과 일반회계 예산 일부를 특별회계에 전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재원 간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누리과정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부의 방침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시작된 2017년 세입을 보면, 교육세 지원분은 3조 80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투입된 국고보

조금 비중은 21.8%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내건 현정부들어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전입금규모는 2018년 2조 586억원, 2021년 2조 169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8%에서 2021년 54.4%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Ⅳ-2-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현황(2017-2021)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9,409	38,927	38,153	39,435	37,076
일반회계(A)	8,600	20,586	19,812	20,978	20,169
일반회계(B) (교육세 지원분)	30,809	18,341	18,341	18,457	16,907
비중(A)	21.8	52.9	51.9	53.2	54.4

자료: 교육부(2018, 2021). 교육부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3) 누리과정 재원의 한시적 해결로 안정성 부족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재원부담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 지자체, 교육청사이에 다양한 쟁점이 표출되었으나, 단기적인 재원충당이라는 단순하고 제한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서둘러 무마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가 단지 봉합된 상태이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여전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서비스 단가와함께 여전한 유아교육과 보육 간 격차 문제, 그리고 누리과정 재원 마련이 한시적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2년 12월 말까지 한번 더 연장되었지만,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간 만료가 되고 나면, 법 시행 이전의 갈등과 논란 등이 동일하게 발 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교육부 등 관리주 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유아교육의 보육의 통합이 추진되던 것이 현 정부 들어 공식적인 유 보통합은 없어졌지만 유보간 격차완화라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유보간 통 합이든 격차완화이든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위해서는 재정확보의 안정 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 갈등 봉합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가 단기간에 논의되어 제정되고, 특별한 대안없이 추가로 3년 연장되었다. 이는 여전히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정지원이나 유보격차 완화와 출발선 평등 등 주요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4)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의 한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의 한계는 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3당 합의와 국회 예결 위 부대의결을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부대의견에는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이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고 동시에 교육청이 보육료 단가에 적극적이어야만 보육료 단가의 적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다행히 2013년 누리과정 시행이후부터 2019년까지 22만원이던 누리과정 지원비가 2020년부터 2만원씩 인상되어 2021년 26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3. 소결

첫째, 양육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이전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가 기준보조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지원정책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의 지방비 절대 부담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자주 세입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나 증가율이 커지는 경우 지방재정은 취약해 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아동·보육부문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17.54% 수준이며, 아동·보육 부문 세부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아동·보육 부문 국고보조금의 40.5%를 차지하였 고,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4.5%,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대비 7.0%로 그 비중이 상당하였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도 각각 3.0%, 4.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은 각각 2.2%, 3.3% 규모를 보였다.

셋째, 보육재정 분담과 관련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산정의 적절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에 가까울수록 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성격을 갖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심지헌, 2014, 홍근석, 2020: 21 재인용). 또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른 지자체간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재정여력의 대표성과 시의성, 실효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는 자치구와시군 지역의 재정지출 구조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교육 재원은 2008년을 기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누리과정 도입과 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는 이후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을 통합한 만 5세아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유아교육재정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이후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재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한시법으로 설치하여 당분간 누리과정 재정분담 갈등이 봉합된 상황이다.

다섯 째,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간 누리과 정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한시적으로 해결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특별회계의 교육세 지원분과 국고지원분의 분담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질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종료이후 법 시행 이전의 동일한 성격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V

정책제언

- 01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주요 논의
- 02 보육재정 분담 개선
- 03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개선
- 04 유·보간 협력체제 강화 및 적정규모 산출
- 05 유보통합 및 학제개편 논의

V. 정책제언

1. 양육지원정책 재정추계 주요 논의

육아지원은 크게 이용자 지원사업과 공급자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 아보육료, 양육수당(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은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이용자 지원사 업이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은 서비스 공급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서는 육아지원 분야 관련 예산 중 비 중이 큰 이용자 지원에 초점을 두어 양육지원정책 재정을 추계하였다.

재정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우선 추정한 뒤, 다양한 시나리오 따라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수혜대상자나 서비스 이용자수는 통계청의 장래인 구 추계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육통계, 교육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추계대상은 0-5세를 기본으로 하며, 추계기간은 2021-2026년으로 하였다.

현 수준 유지 하에서 영유아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정을 추계한 결과,. 0-2세 보육료는 2022~2026년까지 총 23조 2,368억원, 3-5세 누리과정비의 경우는 동기간 16조, 370억원, 양육수당은 5조 7,456억원, 아동수당은 13조 1,94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향후 5년간 누적 58조 2,137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재정소요액의 증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단가의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재정을 추계한 결과,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적게는 향후 5년간 5조 9,587억원, 많게는 18조 6,540억원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 대응과 복지 강화측면에서 다양한 현금과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육지원 관련 재정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0-1세 영아수당이 도입되어 2022년부터 가정에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3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히 누리과정을 재외한 제외한 양육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방비 매칭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 용될 여지가 있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 보육재정 분담 개선

가. 보육관련 양육지원정책 사업 기준보조율 조정 검토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수당 등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을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와 지자체 자율성 등을 살펴보면 모두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한다(홍근석, 2020). 특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이용자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 강,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급자 지원 사업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거나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이나 양육지원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량권 행사가 어렵다. 이렇게 재량권 이 없는 경우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라 하더라도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많은 분담률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부문 국고보조사업들은 대부분 기준보조율이 서울 50, 지방은 70~80으로 되어있으나,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서울 35, 지방 65,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50, 아동수당은 서울 50%, 지방 70%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준보조율을 보육재정에만 한정하여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저출산 심화 속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과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나. 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개선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에 일관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육 등 양육지원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차등보조율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차등보조율 기준의 적절성이나 시군구간 재정구조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특성 맞는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의 조정 여지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은 시군구별 영유아수 등 대상 아수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국고보조사업 성격에 따른 일부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영유아보육 등 보육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 영역으로 비용매칭 형태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전환노력이필요해 보인다.

내년부터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의 확대가 추진되면서 현행 대비 중앙과 지방의 분담규모가 더 커지면서 지방의 재정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사무라 하더라도 독일의 부모교부금과 같이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반대로 어린이집 지원이나 각종 돌봄지원과 같은 서비스 지원 사업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원·운영하도록 지방이양할 필요가 있다.

3. 누리과정 지원 재정분담 개선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재원분담 관련 갈등이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한시적으로 해결되었으나, 한시법으로 한계가 있으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번 더 연장된 상황이다. 2022년 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법이 종료되면 다시 법 제정 이후의 갈등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법 종료에 따라 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우해 다양한 노력 끝에 나온 한시법이긴 하나, 최근 몇 년간 재원분담에 있어 일정 수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다시 법적 논쟁에 들어갈 수 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유보간격차 완화와 누리과정 국가책임이 다소 불분명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종료가 되기 전에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시적 형태의 재원마련이 아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지

당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부 종료에서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특별회계의 재연장은 부처간, 시도간의 갈등을 없애고 현 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다만 특별회계를 연장하더라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1) 안정적 세입을 위한 누리과정 재원 부담 비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세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 지원분)으로 구성된다. 세출은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교부금으로, 교육부가 매년 해당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면,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로 전출하여 집행한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하나의 회계에 이관하여 시도교육청과 시도로 전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방식은 유치원은 교육세 전출분에서, 어린이집은 국고 지원분에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관련하여 교육계에서는 유치원지원은 교육세 지원분에서, 어린이집 지원은 국고보조금에서 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은 국고보조금 투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실정이다(김근진 외, 2018). 이와 달리 특별법에 전체 세입 중 교육세와 국고지원분의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재원분담이나 운영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분리하여 법에 명시 하고,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될 경우 국고부담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교육세와 국고 비중을 법에 명시할 경우 재원조달의 규모와 예측이 더 명확해지고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도교육감이 당초 교부금에 포함되어

V

있던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으로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과거의 갈등이 재발될 우려도 있다. 또한 2008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부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원을 지원할 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재원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2호에 교부금 재원에 "해당 연도「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세입을 교육세와 국고 전입금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법 제4조(세출)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 재원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내국세의 증가와 함께, 학생수, 교원수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세입으로 추가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국세 규모 등에 따라 매년 세입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정부의 방침 역시 정책적인 선택에 의존하기에 누리과정 지원 재원부담 파동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명시하는 등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책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65). 즉,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위한 별도의 독립세입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재원이 조달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을 추계하고,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등으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명문화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 2018).

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

3년 연장 방식의 한시적인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명확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수행하는 일반적인 재정사업과는 다르고 일시적인 수요를 충당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른 복지사업과도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특별회계보다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생 심화, 출발선 평등 등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의미를 살리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부처간, 지자체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등에 요구도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적, 제도적 변화에따라 특별회계의 향후 존치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나. 누리과정 관리·운영 이원화

현재 수준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재원확보에 대한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가 2022년을 끝으로 폐지된다면 누리과정의 관리·운영을 이원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회계 종료 후에 기존의 누리과정 재원을 유지하여 유치원은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을 재원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는 국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면, 누리과정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관리, 예산·회계,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로 이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가 표준보육비용 산출결과에 비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표준보육비용에서 제시된 만큼 지원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그간의 0-2세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0-5세의 보육서비스로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V

이렇게 될 경우,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고 지방비 매칭 형태로 이루어져, 향후 지자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 구조로 인해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재정압박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보건복지부가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보통합의 부정과 함께 3-5세 동일 연령, 동일교육과정의 중복성과 관리부처의 이원화 구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유·보간 협력체제 강화 및 적정규모 산출

현 정부는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아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50% 확대까지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

그러나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유아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자칫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17개 시·도 중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비수도권 A교육청의 경우 공립단설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간 확대하여 왔으나, 영유아수가 당시에 비해 줄고 있고, 집값 상승 등으로 영유아 가구의 타지역으로 이동이 많아지면서 정원미달인 경우가 많아지는 등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공·사립간 공급경쟁, 공급과잉 등 행·재정적 측면에서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조사나 계획을 실시·수립하고 있어 수요-공급이나 재정지출 중복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립단설

유치원의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할 경우 초기 설립비용이 백억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립교원의 충원 확대와 함께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시설비 부담의 증가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져, 국공립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측면에서 일정수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의 확충과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는 어린이집 수급계획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유치 원·어린이집 공급 수급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재정지출의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지 역여건에 따른 적정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5. 유보통합 및 학제개편 논의

현재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다닐 수 있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관할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준과 교사자격 기준도 다르다. 이러한 이원화체계로 인한 행정 중복, 비효율성도 발생한다. 이에 그동안 3-5세 동일 연령의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어느 기관을 다니더라도 동질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현 정부들어 유보격차 완화로 외형상 유보통합 추진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나,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나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지속적으로 유아가 동일, 동질,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특히 내년 대선정국 속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관련 학제개편이나 의무교육, 완전한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박창현 외, 2021). 박창현 외(2021)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교육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체계화된 제도,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무상유아교육·보육, 학제개편으로서 유아의무교육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무상유아교육·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에게 정규교육과정(누리과정)

V

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표준보육비보다 높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완전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의미한다. 학제개편은 유아교육을 '기간학제화'화여 현행 6-3-3-4제에 유아단계를 포함하여, 의무교육 대상아(예를 들면 3-5세)에게 완전취학을 기본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는 유아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상교육의 형태를 의미한다(박창현 외, 2021).

그러나 아직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40%가 되지 않고, 사립유 치원의 경우 법인보다 사인유치원이 많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간 어린이집이 여전히 많아 해결해야 문제가 많다. 또한 학급(반) 편성기준, 시설기준, 교사자격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의무교육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 보인다. 다만 무상 유아교육·보육 차원에서의 논의는 동일 연령에 대한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교육부(2018).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2019). 교육부 2019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2020). 교육부 2020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2021). 교육부 2021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연보.

국중호(2021). 일본의 아동 보육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구조. 세계지방자치동향 제2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2019a).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19b),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20).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재정.

관계부처합동(2011. 5. 2.). 「만 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김근진, 문무경, 조혜주(2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서울: 육아정 책연구소.

김나영, 김근진, 김희수(2018).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도남희, 이동하, 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2017). 새 정부 유아교육재정 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7년도 한국교육재 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동훈(2018).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육재정 회고와 전망. 한국교육 재정경제학회 2018년도 공동학술대회.

- 김동훈, 양미선, 김문정(2020).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병만(2014). 유아교육정책 평가준거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서울: 국회예 산정책처.
- 김윤희(20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은설, 최윤경, 조아라(2013).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윤(2021). 일본의 아동·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세계지방자 치동향 제2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진탁(2021). 텍사스 주 보육서비스 재원부담 구조 및 방식: 아동양육 및 발달기 금. 세계지방자치동향 제2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 박창현, 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 유해미, 최효미, 김동훈, 김태우, 위세아, 김송이, 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박진아, 최효미, 최윤경(202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 김근진, 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06).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9a). 2019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9b).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보건복지부(2021c).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한국재정학회(2018). 보육사업 재정기전 확보 방안 연구.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사이타마현(2020). 시정촌에 대한 지원제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20). 2020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서문희, 나정, 최혜선(200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송기창(2017). 새 정부의 유보혁신 과제와 재원 확보 방안.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신윤정, 이현주, 김태완, 최성은, 권지은, 이수형, 최숙희(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손현섭, 백승진(2015).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례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지헌(2014).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엄문영, 정혜영, 이수지, 한지예(2020).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연구. 교육부.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서울: 육아 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 통계.
- 이원선, 양미선, 정선교, 이승희(2018). 2018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 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이재원(2019). 「지방재정론」. 서울: 윤성사.
- 이정원, 이정림, 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 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채정(201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일본 내각부 아동·육아 본부(2021a). 2021년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에 대하여.
- 일본 내각부 아동·육아 본부(2021b). 2021년 아동·육아 지원신제도에 관한 예산 안의 상황에 대하여.
- 장인성(202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재원분 담. 세계지방자치동향 제2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윤경, 김나영, 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Ⅱ):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박은정, 김태우, 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홍근석(2020).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아동복지 분야 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Falk, Gene & Patrick A. Landers. (2019).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Block Grant: Responses to Frequently As ked Questions. December 30. (https://fas.org/sgp/crs/misc/RL32 760.pdf).

〈참고 웹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과별자료실, 남부청사(정책기획관). https://www.go 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4&bbs MasterId=BBSMSTR_000000000114&menuInit=11,1,1,0,0&bbsId=9 86299 에서 2021. 11. 26. 인출
- 경상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재정투자심사 결과.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084&menuCd=DOM_0000001060200 07000&startPage=1&dataSid=1187031 에서 2021. 11. 26. 인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모성보호 육아 지원.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에서 2021. 6. 2.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중등통계, 설립별유치원수. https://kess.kedi.r e.kr/index 에서 2021. 3. 16.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 유초중등통계, 연령별원이수. https://kess.kedi.re.k r/index 에서 2021. 3. 16.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 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 &eventGubun=060101&query=%EB%B3%B4%EC%A1%B0%EA%B8% 8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 C%EB%B2%95%EB%A5%A0#undefined 에서 2021. 5. 6.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금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 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 Id=81&eventGubun=060101&query=%EB%B3%B4%EC%A1%B0%E A%B8%88%EA%B4%80%EB%A6%AC%EC%97%90+%EA%B4%80%E 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 B%A0%B9#J4:0 에서 2021. 5. 6.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LawLinkInfo. do?lsJoLnkSeq=900691852&chrClsCd=010202&ancYnChk=0 에서 2021. 5. 1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Sc.do?sect 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 0101&query=%EC%A7%80%EB%B0%A9%EC%9E%AC%EC%A0%95%E

- 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 021. 5. 1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 lsiSeq=76486&ancYd=20061230&ancNo=08148&efYd=2007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이 에서 2021. 5. 2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08. 2.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3158&ancYd=20080222&ancNo=20632&efYd=20080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1. 5. 2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1. 9.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7429&ancYd=20110930&ancNo=23186&efYd=201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1. 5. 2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5.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75593&ancYd=20151020&ancNo=26592&efYd=2016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에서 2021. 5. 20.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0. 10.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JAX 에서 2021. 5. 20. 인출.
-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0f4bf42ec594 59fbffdd50b872b3408 에서 2021. 3. 17. 인출.
- 네이버, 어학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c1b1b022446 482c866a0d3048599eb6 에서 2021. 3. 17. 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 =kdic&query=%EC%96%91%EC%9C%A1&ie=utf8&sm=tab_nmr 에서 2021. 3. 17. 인출.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 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205&page=1&CO NT_SEQ=356566&PAR_CONT_SEQ=355602 에서 2021. 6. 15. 인출.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에서 20 21. 5. 31. 인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 hIntClId=01&welInfSno=296 에서 2021. 5. 31. 인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veWelInfoDetail.do?sear 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292&searchGb=01&sear 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 eGb=3&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 에서 2021. 5. 31. 인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 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329&searchGb=&searchT 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 =&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 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 searchGbn=&key1=329&stsfCn= 에서 2021. 5. 31. 인출.
- 복지로,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http://www.bokjiro.go.kr/welInfoS/retrie 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searchCnDivCd=&welInfSno= 292&searchGb=01&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 de=&searchCtgId=&pageGb=3&pageUnit=10&pageIndex=1&doma inName= 에서 2021. 6. 2.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재정현황, 재정투자심사현황. http://budget.se n.go.kr/mfin/m2_s10.jsp?bcid=0210&m=view&bidx=2153&bcate= &sDate=&schFld=&schStr=&page=1에서 2021. 11. 26. 인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재정현황, 재정투자심사현황. https://www.sje.go.kr/boardCnts/view.do?boardID=1217&boardSeq=368828 &lev=0&searchType=null&searchType2=&statusYN=W&page=1&s=people&m=0105 에서 2021. 11. 26. 인출

-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서 2021. 5. 31. 인출.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소개, 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6&L_MENU_CD=020102&H_MENU_CD=0201&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에서 2021. 3. 17. 인출.
-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족,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 fam f005.do 에서 2021. 5. 31. 인출.
- 열린재정, 재정통계, 상세재정통계DB,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 jsessionid=b9G2Wo1VVUMKPkKprTkCau2gBbEXJA9n6WomyBUL Bd6e1sWyJb07VjQcYWByHVJY.IFPBWAS2_servlet_engine1?mId=B 002 에서 2021. 3. 16. 인출.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지방교육재정, 결산공시. https://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ClsgPage.do 에서 2021. 12. 1. 인출.
- 통계청, 새소식,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 dex.board?bmode=read&bSeq=&aSeq=388265&pageNo=1&rowNu 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 xt=%EC%B6%9C%EC%83%9D 에서 2021. 3. 17. 인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에서 2 021. 6. 10.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 3. 16.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B001&conn_path=I3 에서 2021. 6. 1.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 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3&conn_path=I3 에서 20 21. 6. 10.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https://kosis.kr/statHtml/st atHtml.do?orgId=101&tblId=DT_1J20041&vw_cd=MT_ZTITLE&list _id=P2_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 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1. 6. 10.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11&conn_path=I3 에서 2021. 5. 6.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시도). https://kosis.kr/stat 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5006&conn_path=I3 에서 2021. 6. 10.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정자주도(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 atHtml.do?orgId=101&tblId=DT_1YL20891&conn_path=I3 에서 20 21. 5. 6. 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13 에서 2021. 4. 28.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Chart P F3.1.A. 2021. 11. 3.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Chart P F3.1.B. 2021. 11. 3. 인출.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3. 24.).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교육부 보도자료(2012. 1. 18.).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 교육부 보도자료(2021. 3. 11.).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1. 18.).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12. 30.).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차 상위 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원.

〈법령〉

「교육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A Study on the financial projections of parenting support policy and improvement of sharing structure

Dong Hoon Kim, Hyo Mi Choi, Tae Woo Kim

As consumers' interest in quality in child rearing increases along with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demand for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is expected to expand. In addition,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the deepening of the low birth rate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ontinuous expansion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child rearing.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f an inclusive welfare state, th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for the vulnerable and marginalized is also expected to grow further.

This study estimated the mid- to long-term financial demands of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find a way to secure finance for the child-rearing support policy,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and a plan to improve the financial sharing structure.

The sum of the additional financial scal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estimation scenarios for the four childcare support policies is as follows.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fiscal scale according to the scenario, the difference from the estimated cumulative fiscal scale under the assumpti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for the next five years was from a minimum of KRW 5.958.7 billion to a maximum of KRW 18.654 billion.

(table 1) Childcare Support Policy Financial Estimation Scenario Results

Unit: 100 million won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Age 0-2	scenario1	49,227	49,440	50,806	54,018	58,291	261,782
Age 3-5 Nuri Curriculum	scenario1	39,343	37,716	36,084	35,150	34,948	183,241
child home care	scenario1	17,166	19,944	23,269	29,701	30,742	120,822
allowance	scenario2	11,484	12,009	12,804	13,729	14,732	64,758
allowalice	scenario3	13,567	13,662	14,009	14,445	14,911	70,594
	scenario1	28,245	26,685	25,807	25,538	25,668	131,943
		33,516	37,057	40,732	44,545	48,495	204,345
	scenario2a	28,245	32,022	30,969	30,646	38,501	160,383
child allowance		33,516	44,468	48,879	53,454	72,743	253,060
child allowance	scenario2b	29,375	28,819	28,904	29,624	31,058	147,780
		34,857	40,021	45,620	51,672	58,679	230,849
	scenario3	34,703	32,786	31,708	31,377	31,536	162,110
		41,179	45,529	50,045	54,730	59,583	251,066
Difference (lowest-current)		4,483	8,550	11,768	15,357	19,429	59,587
Difference (highest-current)		11,837	27,986	36,045	43,989	66,683	186,540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haring structure, it was proposed to be divided into childcare finance and Nuri Curriculum financ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childcare finance sharing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djustment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hildcare-related childcare support policy projects. Because childcare-related state subsidy programs such as childcare fees and childcare allowances are based on related laws or are operated according to government guidelines, it is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in carrying out childcare or childcare support project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bear more cost.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adjust the standard subsidy rate by limiting it to childcare finance,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standard subsidy rate and equity of other state subsidy program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infants and toddlers amid the deepening low fertility.

Th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sharing of support for the

Nuri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vision of the ratio of the Nuri Curriculum's financial resources for stable revenue generati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only states that revenues are made from education tax and transfers from the national treasury. Also, considering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domestic tax,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additionally transferring it to revenue.

Second, the sunset deadline for the special accou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hould be abolish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clear solution to the current temporary special accou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which is extended by three year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by operating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Consider abolishing the current sunset deadline in order to make use of the meaning of the Nuri Curriculum support policy, such as deepening the low birth rate and equality of the starting line, and to prevent social confusion and conflicts, such as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urrounding the Nuri Curriculum. There is a need.

Keyword: parenting support policy, financial projection, sharing structure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